

630.206  
ㅎ 155 L  
V.1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 제3집

# 농 립 법 령

## 제 I 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찬

농 립 부



담당자	직 위	담당 분야
이 정 환	수석연구위원	편찬 책임자, 편찬 업무 총괄
박 석 두	부 연구 위원	「한국농정50년사 I·II」 편찬 및 행정·진행 책임
김 태 곤	부 연구 위원	「농정반세기 증언」 편찬 책임
김 홍 상	부 연구 위원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 전4집 편찬 책임
김 진 현	연 구 위 원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 I·II·III집 편찬 실무
김 상 현	연 구 위 원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 IV집 편찬 실무

## 일 리 두 기

1.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은 제1집 「농정일지」 3권, 제2집 「농림예산」 3권, 제3집 「농림법령」 2권, 제4집 「농업통계 및 농림직제」 1권 등 전 4집 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자료집 제3집 「농림법령」의 경우 자료집 편집 및 자료구분의 편의상 제 I 권에서는 공포일자별 농림법령, 분야별 농림법령, 주요 법률 변천도, 법령의 주요내용 등을 수록하였고, 제II권에서는 폐지법률(미군정하 폐지 법령 포함)만을 정리해 놓았다. 1987년 이전까지의 내용은 「농정40년사」 자료집 제8집의 법령 자료를 복사 또는 보완·정리한 것이다.
3. 본 자료집 제 I 권(법령목록 및 주요내용)에서는 기획관리, 농업일반, 농산(원예·자재·특작), 농산물 유통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 이유는 정치·사회 변화에 따라 농림직제 및 소관별(각 국·실·청)법령의 변동이 심한 관계로 일관성 있게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농정40년사」 자료에서 소관별(각 국·실·청)로 분류되어 있던 법령도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4. 본 자료집 제II권(폐지법률)에서는 1998년말까지 폐지된 모든 농림관계 법률의 공포당시 전문을 수록하였다. 1987년 이전의 내용은 「농정40년사」의 자료를 복각한 것이며 1988년 이후의 내용에서는 폐지법률 전문 뿐만 아니라 개정사항과 내용, 폐지근거 법률도 포함시켰다.
5. 이번 자료집이 미비한 점이 많겠지만 한국농정50년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료집의 발간과정에서 자료수집에 적극 협조해 주신 농림부 담당자에게 감사 드린다.

# 목 차

## 제 I 권(법령목록 및 주요내용)

1. 법령목록 .....	1
1) 공포일자별 법령 목록 .....	1
2) 분야별 법령 목록 .....	8
3) 주요법률 변천도 .....	16
2. 분야별 법령의 주요내용 .....	23
1) 기 획 관 리 .....	23
2) 감 사 .....	29
3) 농 림 통 계 .....	30
4) 농 업 일 반 .....	34
5) 농 산(원예·자재·특작) .....	59
6) 농 촌·농지 .....	86
7) 식 량 정 책 .....	118
8) 농산물 유통 .....	137
9) 축 산 .....	148
10) 무역·검역 .....	184
11) 농 촌 진 흥 .....	187
12) 산 림 .....	195
<부록> 국민의 정부 4대개혁 법률 .....	227

## 제 II 권(폐지법률)

1. 정부수립 이후 폐지법률 목록 .....	315
1) 제정연도별 목록 .....	315
2) 가나다순별 목록 .....	318
2. 폐지법률 내용 .....	321
가. 1987년 이전 폐지된 법률 .....	321
1) 양곡매입법 .....	321

2)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	323
3) 식량임시긴급조치법 .....	323
4) 축우도살제한법 .....	324
5) 영림관서설치법 .....	326
6)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	326
7) 귀속농지특별조치법 .....	327
8)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	327
9) 산림보호임시조치법 .....	329
10) 임시토지수득세법 .....	330
11)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	338
12) 가축보호법 .....	339
13) 농사교도법 .....	343
14)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345
15)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 .....	345
16) 수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 .....	346
17) 비료단속법 .....	348
18) 축견취재규칙 폐지에 관한 법 .....	351
19) 토지개량사업법 .....	352
20) 농산종묘법 .....	381
21) 농가대여양곡법 .....	382
22) 개간촉진법 .....	384
23) 한국수산개발공사법 .....	391
24)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	395
25)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	397
26) 잠사가격안정기금법 .....	399
27) 농지세징수에 관한 임시조치법 .....	401
28) 양곡과비료의교환에 관한 법 .....	403
29) 연안어업등육성법 .....	405
30)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 .....	409
31)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	409
32) 농경지조성법 .....	410
33) 농어촌개발공사법 .....	418
34)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421
35) 국립중축장관리특별회계법 .....	423
36) 산림개발법 .....	424

37) 농수산물도매시장법 .....	436
<b>나. 1988년 이후 폐지된 법률 .....</b>	<b>442</b>
1) 농지개혁법 .....	442
2) 농업창고업법 .....	451
3) 주요농작물종자법 .....	455
4) 농업협동조합임원임명에 관한 임시조치법 .....	467
5)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	470
6) 지력증진법 .....	473
7) 미강착유장려법 .....	476
8) 농지담보법 .....	479
9)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82
10) 농촌근대화촉진법 .....	486
11) 양곡관리기금법 .....	557
12)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561
13)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1
14) 종묘관리법 .....	593
15) 농지확대개발촉진법 .....	597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	620
17)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	621
18)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 .....	625
19)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	626
20) 농지임대차관리법 .....	633
21)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	640
22)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	645
<b>3. 미군정하 농업관련 법령 .....</b>	<b>647</b>

# 1. 법령 목록

## 1) 공포일자별 법령목록

건 명	호	공포일자	비 고
양곡매입법	법 7호	1948. 10. 9	폐 지
농지개혁법	법 31호	1949. 6. 21	폐 지
식량임시긴급조치법	법 35호	1949. 7. 22	폐 지
축우도살제한법	법 37호	1949. 7. 26	폐 지
농산물검사법	법 49호	1949. 8. 13	폐 지
영립관서설치법	법 91호	1950. 2. 9	폐 지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법 93호	1950. 2. 13	폐 지
양곡관리법	법 97호	1950. 2. 16	
양곡관리특별회계법	법 140호	1950. 5. 8	폐 지
양곡증권법	법 171호	1950. 12. 7	
귀속농지특별조치법	법 185호	1951. 4. 5	폐 지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법 214호	1951. 7. 18	폐 지
산림보호임시조치법	법 218호	1951. 9. 21	폐 지
임시토지수득세법	법 220호	1951. 9. 25	폐 지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법 241호	1952. 4. 12	폐 지
가축보호법	법 306호	1954. 1. 23	폐 지
수의사법	법 412호	1956. 12. 26	
농사교도법	법 435호	1957. 2. 12	폐 지
농약관리법	법 445호	1957. 8. 28	
수복지구에 대한농지개혁시행에 대한특례에 관한건	령 1360호	1958. 4. 10	폐 지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법 620호	1960. 6. 10	폐 지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	법 613호	1961. 5. 5	폐 지
임산물단속에 관한법	법 635호	1961. 6. 27	폐 지
농산물가격유지법	법 636호	1961. 6. 27	
농업협동조합법	법 670호	1961. 7. 29	
수리조합합병에 관한특별조치법	법 701호	1961. 8. 25	폐 지
산림법	법 881호	1961. 12. 27	
비료단속법	법 882호	1961. 12. 27	폐 지
잠업법	법 883호	1961. 12. 27	
축견취체규칙 폐지에 관한법	법 909호	1961. 12. 30	폐 지
가축전염병예방법	법 907호	1961. 12. 30	

주 : 1) 령 및 법령은 법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외하고 별도로 공포된 것만 수록하였음.  
 2) 법령 중 산림관계는 내무부소관(1973.3~1986.12), 수산관계는 상공부소관(1948.8~1961. 12)의 법, 령 및 부령임. 단, 수산관련은 법령 주요내용 부분에서 제외됨.

건 명	호	공포일자	비 고
식물방역법	법 908호	1961. 12. 30	
농업창고업법	법 906호	1961. 12. 30	폐 지
토지개량사업법	법 948호	1961. 12. 31	폐 지
사방사업법	법 977호	1962. 1. 15	
주요농작물종자법	법 975호	1962. 1. 15	폐 지
농산종묘법	법 976호	1962. 1. 15	폐 지
축산물가공처리법	법 1011호	1962. 1. 20	
한국마사회법	법 1012호	1962. 1. 20	
공유수면매입법	법 986호	1962. 1. 20	건설부소관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법 1025호	1962. 2. 12	폐 지
농가대여양곡법	법 1026호	1962. 2. 19	폐 지
개간촉진법	법 1028호	1962. 2. 22	폐 지
농촌진흥법	법 1039호	1962. 3. 21	
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법 1266호	1963. 2. 9	폐 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	법 1267호	1963. 2. 9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법 1291호	1963. 3. 5	폐 지
잡사가격안정기금법	법 1342호	1963. 5. 14	폐 지
축산법	법 1363호	1963. 6. 26	
사료관리법	법 1393호	1963. 8. 14	
방조제관리법	법 1470호	1963. 12. 5	폐 지
농지세징수에대한임시조치법	법 1662호	1964. 10. 29	폐 지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	법 1704호	1965. 7. 1	폐 지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법 1718호	1965. 12. 16	폐 지
지력증진법	법 1766호	1966. 3. 15	폐 지
화전정리에관한법	법 1778호	1966. 4. 12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	법 1777호	1966. 4. 23	폐 지
미강착유장려법	법 1798호	1966. 7. 15	폐 지
농지보호법	법 1813호	1966. 8. 3	폐 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법 1815호	1966. 8. 3	폐 지
낙농진흥법	법 1873호	1967. 1. 16	
한국진도건보호육성법	법 1875호	1967. 1. 16	
농업기본법	법 1871호	1967. 1. 16	
농어업재해대책법	법 1874호	1967. 1. 16	



건 명	호	공포일자	비 고
농경지조성법	법 1872호	1967. 1. 16	폐 지
풍수해대책법	법 1894호	1967. 2. 28	폐 지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법 1891호	1967. 2. 28	폐 지
조류보호및수렵에관한법	법 1931호	1967. 3. 30	
농어촌개발공사법	법 1960호	1967. 10. 31	폐 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 1993호	1968. 3. 13	폐 지
초지법	법 2081호	1969. 1. 17	
국립농산물검사소출장소의명칭,위치와관할구역 에관한규칙	부령 311호	1969. 3. 7	폐 지
농업공무원교육원직제	령 3864호	1969. 4. 7	폐 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법 2111호	1969. 5. 21	폐 지
농업협동조합공제규정기재사항에관한규칙	부령 342호	1969. 6. 16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규칙	부령 347호	1969. 6. 25	폐 지
국립농산물검사소검정의뢰규칙	부령 348호	1969. 6. 25	
농산물검사규격규칙	부령 354호	1969. 7. 16	
국립종축장설치법	법 2131호	1969. 8. 4	폐 지
수출식물검역규칙	부령 374호	1969. 8. 4	폐 지
수입식물검역규칙	부령 375호	1969. 8. 4	폐 지
농업기본통계조사규칙	부령 386호	1969. 8. 16	폐 지
농업센서스시행규칙	부령 387호	1969. 8. 16	폐 지
가금등의뢰검사규칙	부령 398호	1969. 8. 28	폐 지
국가검정동물약품검정규칙	부령 399호	1969. 8. 28	폐 지
수출가금및동가공품의뢰검사규칙	부령 402호	1969. 8. 28	폐 지
식물방역법제23조의3의규정에의한비용부담에관 한규정	령 4069호	1969. 9. 20	폐 지
영림서관리소의명칭, 위치및관할구 역에관한규칙	부령 409호	1969. 9. 24	폐 지
국립동물검역소직제	법 2178호	1969. 12. 18	
비축양곡관리규정	령 4484호	1969. 12. 26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법 2178호	1970. 1. 1	폐 지
농촌근대화촉진법	법 2199호	1970. 1. 12	폐 지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관한규칙	부령 418호	1970. 3. 6	폐 지
산림사업용종묘가격심의위원회규정	령 4764호	1970. 3. 19	
농지대가상환대납금징수규정	령 4761호	1970. 3. 19	폐 지

건 명	호	공포일자	비 고
임목육종연구소직제	령 4863호	1970. 4. 7	폐 지
영림서직제	령 5029호	1970. 6. 11	폐 지
국립농업자재검사소직제	령 5062호	1970. 6. 17	폐 지
국립농산물검사소직제	령 5061호	1970. 6. 17	폐 지
농지위원회규정	법 5133호	1970. 6. 25	폐 지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규정	령 5132호	1970. 6. 25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령 5168호	1970. 7. 9	
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 기준	령 13709호	1970. 7. 9	
축산사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령 5179호	1970. 7. 9	폐 지
농촌진흥사업보조금교부규정	령 5177호	1970. 7. 9	폐 지
농업정책심의위원회규정	령 5161호	1970. 7. 9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령 5178호	1970. 7. 9	
양곡관리기금법	법 2237호	1970. 8. 12	폐 지
농촌근대화사업보조금교부규정	법 5321호	1970. 8. 31	폐 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법 2277호	1971. 1. 13	폐 지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법 2289호	1971. 1. 19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법 2299호	1971. 1. 22	폐 지
농수산물수출진흥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품목 지정령	부령 459호	1971. 8. 16	폐 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령 5889호	1971. 12. 28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령 5889호	1971. 12. 28	폐 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법 2373호	1972. 12. 18	폐 지
산림개발법	법 2432호	1972. 12. 30	폐 지
입목에관한법	법 2484호	1973. 2. 6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법 2483호	1973. 2. 6	폐 지
종묘관리법	법 2555호	1973. 2. 26	폐 지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법 2621호	1973. 6. 15	
국립잠종장직제	령 6753호	1973. 7. 9	폐 지
지방농촌진흥기구설치에관한규정	령 6808호	1973. 8. 16	폐 지
산림자원조사연구소직제	령 6936호	1973. 11. 20	폐 지
농수산물통계사무소출장소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 관한규칙	부령 561호	1974. 2. 1	폐 지

건 명	호	공포일자	비 고
국립생사검사소조직제	령 7208호	1974. 7. 20	폐 지
영농기술훈련규정	령 7266호	1974. 9. 28	폐 지
국립종자검사소조직제	령 7341호	1974. 11. 6	폐 지
국립종축원직제	령 5784호	1975. 4. 1	폐 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법 2767호	1975. 4. 11	폐 지
국유림산물매각규칙	내무부령 207호	1975. 5. 7	
임업시험장지장및임산물검사주재원사무실의위치 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내무부령 176호	1975. 8. 21	
농업종합개발사업조정위원회규정	령 7776호	1975. 8. 30	
농업기계화심의위원회규정	령 11304호	1975. 12. 30	폐 지
농산물검사공무원자격전형규칙	부령 617호	1976. 1. 14	폐 지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부령 656호	1976. 12. 16	폐 지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직제	령 8390호	1976. 12. 31	폐 지
농촌진흥청소속연구소직제	령 8391호	1976. 12. 31	폐 지
농수산부직제	령 8384호	1976. 12. 31	폐 지
비료관리법	법 2985호	1976. 12. 31	폐 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법 2962호	1976. 12. 31	
가축통계조사규칙	부령 666호	1977. 1. 20	
농가경제및농산물생산비조사규칙	부령 668호	1977. 1. 21	
농산물검사료규칙	부령 675호	1977. 2. 18	폐 지
국립농업자재검사소검사의뢰규정	부령 676호	1977. 3. 9	
잠업진흥심의위원회규정	령 8572호	1977. 5. 19	폐 지
임업연수원직제	령 8695호	1977. 9. 20	폐 지
생사류검사규칙	부령 714호	1978. 3. 31	
국립식물검역소직제	령 8930호	1978. 4. 12	폐 지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령 8964호	1978. 4. 24	
농촌진흥청시험장의출장소설치에관한규칙	부령 720호	1978. 5. 10	폐 지
국립종축장종축배부규칙	령 743호	1978. 11. 16	폐 지
농업기계화촉진법	법 3120호	1978. 12.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법 3122호	1978. 12. 6	폐 지
농촌영양개선연수원직제	령 9256호	1978. 12. 30	폐 지
농촌진흥청명예직연구관규정	령 9349호	1979. 2. 24	폐 지

건 명	호	공포일자	비 고
농업산학협동기금운영관리규정	령 9349호	1979. 2. 24	폐 지
작물통계조사규칙	부령 760호	1979. 4. 25	
임업협동조합법	법 3231호	1980. 1. 4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법 3262호	1980. 11. 5	폐 지
축산업협동조합법	법 3276호	1980. 12. 15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법 3277호	1980. 12. 15	폐 지
임업시험위탁등에관한규칙	내무부령 342호	1981. 2. 14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부령 820호	1981. 3. 7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	령 10464호	1981. 9. 15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령 10506호	1981. 11. 2	
임업시험장직제	령 10507호	1981. 11. 2	
누에고치기계검사규칙	부령 864호	1982. 5. 25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법 3689호	1983. 12. 31	폐 지
동물검역및식품검역공무원복제	부령 905호	1984. 1. 11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부령 909호	1984. 4. 25	
축산경영기술에관한교육훈련규칙	부령 945호	1985. 11. 29	폐 지
산림보호직원복제규정	내무부령 445호	1986. 6. 11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법 3884호	1986. 12. 31	폐 지
농지임대차관리법	법 3888호	1986. 12. 31	폐 지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법 3887호	1986. 12. 31	
임업시험장수목원관람규칙	부령 969호	1987. 4. 10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	부령 974호	1987. 6. 1	
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규칙	부령 905호	1987. 6. 9	
농림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부령 977호	1987. 6. 13	
농림부행정감사규칙	부령 984호	1987. 7. 10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부령 985호	1987. 8. 20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법 3985호	1987. 12. 4	폐 지
인삼협동조합법	법 4066호	1988. 12. 30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법 4172호	1989. 12. 3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법 4228호	1990. 4. 7	

건 명	호	공포일자	비 고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법 4229호	1990. 4. 7	
동물보호법	법 4379호	1991. 5. 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법 4399호	1991. 11. 22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법 4553호	1993. 6. 11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법 4771호	1994. 8. 1	
농어촌정비법	법 4823호	1994. 12. 22	
협동조합발전기확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령 14678호	1995. 6. 22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령 14742호	1995. 7. 27	
종자산업법	법 5024호	1995. 12. 6	
농약관리법	법 5023호	1995. 12. 6	
인삼산업법	법 5022호	1995. 12. 8	
농지법	법 4817호	1995. 12. 22	
농지개량조합법	법 5077호	1995. 12. 29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령 15265호	1997. 2. 1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부령 1254호	1997. 3. 18	
임업진흥촉진법	법 5325호	1997. 4. 10	
환경농업육성법	법 5442호	1997. 12. 13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규칙	부령 1275호	1998. 2. 11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령 15725호	1998. 2. 28	
도축업시설기준에대한특례규칙	부령 1292호	1998. 8. 19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부령 1296호	1998. 10. 15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	법 5239호	1998. 12. 30	

## 2) 분야별법령목록

### ① 기 획 관 리

건 명	호	공포일자	비 고
농업공무원교육원직제	령 3864호	1969. 4. 7	폐 지
농업정책심의위원회규정	령 5161호	1970. 7. 9	
농수산부직제	령 8384호	1976. 12. 31	폐 지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부령 974호	1987. 6. 1	
농림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부령 977호	1987. 6. 13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부령 985호	1987. 8. 2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법 4399호	1991. 11. 22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법 4771호	1994. 8. 1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령 15725호	1998. 2. 28	

### ② 감 사

농림부행정감사규칙	부령 984	1987. 7. 10	
-----------	--------	-------------	--

### ③ 농 림 통 계

농업기본통계조사규칙	부령 386호	1969. 8. 16	폐 지
농업센서스시행규칙	부령 387호	1969. 8. 16	폐 지
농수산통계사무소출장소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부령 561호	1974. 2. 1	폐 지
가축통계조사규칙	부령 666호	1977. 1. 20	
농가경제및농산물생산비조사규칙	부령 668호	1977. 1. 21	폐 지
작물통계조사규칙	부령 760호	1979. 4. 25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	령 10464호	1981. 9. 15	

④ 농업일반(정책, 금융)

건 명	호	공포일자	비 고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법 620호	1960. 6. 10	폐 지
농업협동조합법	법 670호	1961. 7. 29	
농업협동조합임원임명에관한임시조치법	법 1025호	1962. 2. 12	폐 지
농업기본법	법 1871호	1967. 1. 16	
농업협동조합공제규정기재사항에관한규칙	부령 342호	1969. 6. 1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법 2277호	1971. 1. 13	폐 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령 5889호	1971. 12. 28	폐 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법 3122호	1978. 12. 6	폐 지
농업산학협동기금운영관리규정	령 9349호	1979. 2. 24	폐 지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법 3262호	1980. 11. 5	폐 지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법 4172호	1989. 12. 3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법 4228호	1990. 4. 7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법 4229호	1990. 4. 7	
협동조합발전기확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령 14678호	1995. 6. 22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령 15265호	1997. 2. 1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	법 5239호	1998. 12. 30	

⑤ 농산(원예·자재·특작)

농약관리법	법 445호	1957. 8. 28	
비료단속법	법 882호	1961. 12. 27	폐 지
잠업법	법 883호	1961. 12. 27	
식물방역법	법 908호	1961. 12. 30	
주요농작물종자법	법 975호	1962. 1. 15	폐 지
농산종묘법	법 976호	1962. 1. 15	폐 지
잠사가격안정기금법	법 1342호	1963. 5. 14	폐 지
지력증진법	법 1766호	1966. 3. 15	폐 지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	법 1777호	1966. 4. 23	폐 지
농어업재해대책법	법 1874호	1967. 1. 16	
풍수해대책법	법 1894호	1967. 2. 28	폐 지
식물방역법제23조의3의규정에의한비용부담에관한규정	령 4069호	1969. 9. 20	폐 지

건 명	호	공포일자	비 고
국립농업자재검사소직제	령 5062호	1970. 6. 17	폐 지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령 5178호	1970. 7. 9	
종묘관리법	법 2555호	1973. 2. 26	폐 지
국립잠종장직제	령 6753호	1973. 7. 9	폐 지
국립생사검사소직제	령 7208호	1974. 7. 20	폐 지
국립종자검사소직제	령 7341호	1974. 11. 6	폐 지
농업기계화심의위원회규정	령 11304호	1975. 12. 30	폐 지
비료관리법	법 2985호	1976. 12. 31	
국립농업자재검사소검사의뢰규정	부령 676호	1977. 3. 9	폐 지
잠업진흥심의위원회규정	령 8572호	1977. 5. 19	폐 지
생사류검사규칙	부령 714호	1978. 3. 31	
국립식물검역소직제	령 8930호	1978. 4. 12	
농업기계화촉진법	법 3120호	1978. 12. 5	
누에고치기계검사규칙	부령 864호	1982. 5. 25	
인삼협동조합법	법 4066호	1988. 12. 30	
종자산업법	법 5024호	1995. 12. 6	
인삼산업법	법 5022호	1995. 12. 8	
농약관리법	법 5023호	1995. 12. 6	
환경농업육성법	법 5442호	1997. 12. 13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 규칙	부령 1275호	1998. 2. 11	
종자산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 등록에관한규칙	부령 1296호	1998. 10. 15	

#### ⑥ 농촌·농지

농지개혁법	법 31호	1949. 6. 21	폐 지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법 93호	1950. 2. 13	폐 지
귀속농지특별조치법	법 185호	1951. 4. 5	폐 지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법 214호	1951. 7. 18	폐 지
임시토지수득세법	법 220호	1951. 9. 25	폐 지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법 241호	1952. 4. 12	폐 지



건 명	호	공포일자	비 고
수복지구에 대한농지개혁법시행에 대한특례에 관한건	령 1360호	1958. 4. 10	폐 지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	법 613호	1961. 5. 5	폐 지
수리조합합병에 관한특별조치법	법 701호	1961. 8. 25	폐 지
토지개량사업법	법 948호	1961. 12. 31	폐 지
공유수면매입법	법 986호	1962. 1. 20	건설부소관
개간촉진법	법 1028호	1962. 2. 22	폐 지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법 1291호	1963. 3. 5	폐 지
방조제관리법	법 1470호	1963. 12. 5	폐 지
농지세징수에 대한임시조치법	법 1662호	1964. 10. 29	폐 지
농지보호법	법 1813호	1966. 8. 3	폐 지
농경지조성법	법 1872호	1967. 1. 16	폐 지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법 1891호	1967. 2. 28	폐 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법 1993호	1968. 3. 13	폐 지
농촌근대화촉진법	법 2199호	1970. 1. 12	폐 지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 관한규칙	부령 418호	1970. 3. 6	폐 지
농지대가상환대납금징수규정	령 4761호	1970. 3. 19	폐 지
농지위원회규정	법 5133호	1970. 6. 25	폐 지
농촌근대화사업보조금교부규정	법 5321호	1970. 8. 31	폐 지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법 2299호	1971. 1. 22	폐 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 관한법	법 2373호	1972. 12. 18	폐 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법 2767호	1975. 4. 11	폐 지
농업종합개발사업조정위원회규정	령 7776호	1975. 8. 30	폐 지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부령 656호	1976. 12. 16	폐 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법 3689호	1983. 12. 31	폐 지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법 3884호	1986. 12. 31	폐 지
농지임대차관리법	법 3888호	1986. 12. 31	폐 지
농어촌정비법	법 4823호	1994. 12. 22	
농지법	법 4817호	1995. 12. 22	
농지개량조합법	법 5077호	1995. 12. 29	

⑦ 식량정책

건명	호	공포일자	비고
양곡매입법	법 7호	1948. 10. 9	폐지
식량임시긴급조치법	법 35호	1949. 7. 22	폐지
농산물검사법	법 49호	1949. 8. 13	폐지
양곡관리법	법 97호	1950. 2. 16	
양곡관리특별회계법	법 140호	1950. 5. 8	폐지
양곡증권법	법 171호	1950. 12. 7	
농업창고업법	법 906호	1961. 12. 30	폐지
농가대여양곡법	법 1026호	1962. 2. 19	폐지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	법 1704호	1965. 7. 1	폐지
미강착유장려법	법 1798호	1966. 7. 15	폐지
국립농산물검사소출장소의명칭,위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부령 311호	1969. 3. 7	폐지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규칙	부령 347호	1969. 6. 25	폐지
국립농산물검사소검정의뢰규칙	부령 348호	1969. 6. 25	
농산물검사규격규칙	부령 354호	1969. 7. 16	
비축양곡관리규정	령 4484호	1969. 12. 26	
국립농산물검사소조직제	령 5061호	1970. 6. 17	폐지
양곡관리기금법	법 2237호	1970. 8. 12	폐지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법 2621호	1973. 6. 15	
농산물검사공무원자격전형규칙	부령 617호	1976. 1. 14	폐지
농산물검사료규칙	부령 675호	1977. 2. 18	
농촌영양개선연수원직제	령 9256호	1978. 12. 30	폐지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규칙	부령 905호	1987. 6. 9	

⑧ 농산물유통

농산물가격유지법	법 636호	1961. 6. 27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법 1815호	1966. 8. 3	폐지
농어촌개발공사법	법 1960호	1967. 10. 31	폐지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규정	령 5132호	1970. 6. 25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법 2483호	1973. 2. 6	폐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법 2962호	1976. 12. 31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법 3887호	1986. 12. 31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법 3985호	1987. 12. 4	폐지

건 명	호	공포일자	비 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	법 4553호	1993. 6. 11	
농산물가격유지법	법 636호	1961. 6. 27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법 1815호	1966. 8. 3	폐 지
농어촌개발공사법	법 1960호	1967. 10. 31	폐 지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규정	령 5132호	1970. 6. 25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법 2483호	1973. 2. 6	폐 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법 2962호	1976. 12. 31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법 3887호	1986. 12. 31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법 3985호	1987. 12. 4	폐 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	법 4553호	1993. 6. 11	

⑨ 축 산

축우도살제한법	법 37호	1949. 7. 26	폐 지
가축보호법	법 306호	1954. 1. 23	폐 지
수의사법	법 412호	1956. 12. 26	
축전취체규칙폐지에 관한법	법 909호	1961. 12. 30	폐 지
가축전염병예방법	법 907호	1961. 12. 30	
축산물위생처리법(1984. 12. 31에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제명 개정)	법 1011호	1962. 1. 20	
한국마사회법	법 1012호	1962. 1. 20	
축산법	법 1363호	1963. 6. 26	
사료관리법	법 1393호	1963. 8. 14	
낙농진흥법	법 1873호	1967. 1. 16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법 1875호	1967. 1. 16	
초지법	법 2081호	1969. 1. 17	
국립종축장설치법	법 2131호	1969. 8. 4	폐 지
가금등의뢰검사규칙	부령 398호	1969. 8. 28	폐 지
국가검정동물약품검정규칙	부령 399호	1969. 8. 28	폐 지
수출가금및동가공품의뢰검사규칙	부령 402호	1969. 8. 28	폐 지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법	법 2178호	1970. 1. 1	폐 지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령 5168호	1970. 7. 9	
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시설기준	령 13709호	1970. 7. 9	

건 명	호	공포일자	비 고
축산사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령 5179호	1970. 7. 9	폐 지
국립종축원직제	령 5784호	1975. 4. 1	폐 지
국립종축장종축배부규칙	령 743호	1978. 11. 16	폐 지
축산업협동조합법	법 3276호	1980. 12. 15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법 3277호	1980. 12. 15	폐 지
동물용의약품등록규칙	부령 820호	1981. 3. 7	
축산경영기술에관한교육훈련규칙	부령 945호	1985. 11. 29	폐 지
동물보호법	법 4379호	1991. 5. 31	
도축업시설기준에대한특례규칙	부령 1292호	1998. 8. 19	

#### ⑩ 무역·검역

수출식물검역규칙	부령 374호	1969. 8. 4	폐 지
수입식물검역규칙	부령 375호	1969. 8. 4	폐 지
국립동물검역소직제	령 4461호	1969. 12. 18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법 2289호	1971. 1. 19	
농수산물수출진흥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 품목지정령	부령 459호	1971. 8. 16	폐 지
국립식물검역소직제	령 8930호	1978. 4. 12	폐 지
동물검역및식물검역공무원복제	부령 905호	1984. 1. 11	

#### ⑪ 농촌진흥

농사교도법	법 435호	1957. 2. 12	폐 지
농촌진흥법	법 1039호	1962. 3. 21	
농촌진흥사업보조금교부규정	령 5177호	1970. 7. 9	폐 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령 5889호	1971. 12. 28	
지방농촌진흥기구설치에관한규정	령 6808호	1973. 8. 16	폐 지
영농기술훈련규정	령 7266호	1974. 9. 28	폐 지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직제	령 8390호	1976. 12. 31	폐 지
농촌진흥청소속연구소직제	령 8391호	1976. 12. 31	폐 지
농촌진흥청과그속기관직제	령 8964호	1978. 4. 24	
농촌진흥청시험장의출장소설치에관한규칙	부령 720호	1978. 5. 10	폐 지
농촌진흥청명예직연구관규정	령 9349호	1979. 2. 24	폐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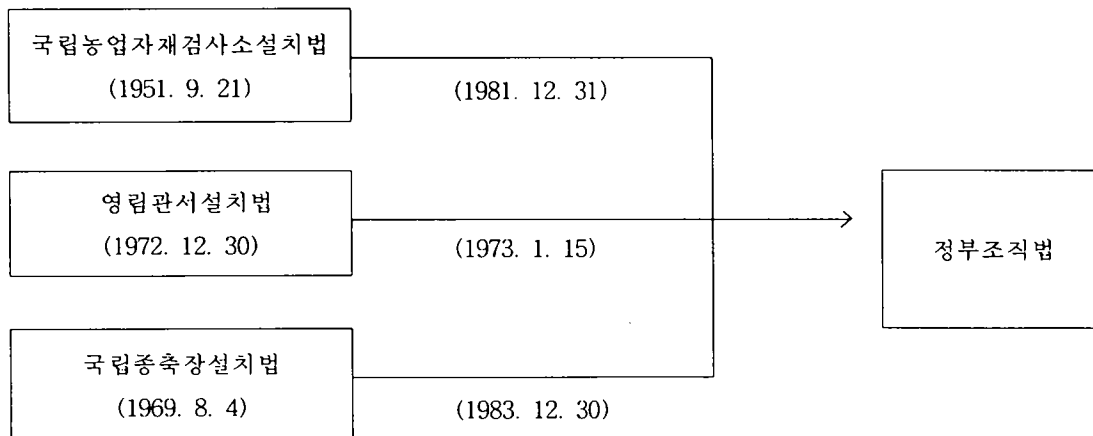
진 명	호	공포일자	비 고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부령 909호 령 14742호	1984. 4. 25 1995. 7. 27	

⑫ 산림

영림관서설치법	법 91호	1950. 2. 9	폐 지
산림보호임시조치법	법 218호	1951. 9. 21	폐 지
임산물단속에관한법	법 635호	1961. 6. 27	폐 지
산림법	법 881호	1961. 12. 27	
사방사업법	법 977호	1962. 1. 15	
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법 1266호	1963. 2. 9	폐 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	법 1267호	1963. 2. 9	
영림서소관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법 1718호	1965. 12. 16	폐 지
화전정리에관한법	법 1778호	1966. 4. 12	
조류보호및수렵에관한법	법 1931호	1967. 3. 30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법 2111호	1969. 5. 21	폐 지
영림서관리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 규칙	부령 409호	1969. 9. 24	폐 지
산림사업용종묘가격심의위원회규정	령 4764호	1970. 3. 19	
임목육종연구소직제	령 4863호	1970. 4. 7	폐 지
영림서직제	령 5029호	1970. 6. 11	폐 지
산림개발법	법 2432호	1972. 12. 30	폐 지
입목에관한법	법 2484호	1973. 2. 6	
산림자원조사연구소직제	령 6936호	1973. 11. 20	폐 지
국유림산물매각규칙	내무부령 207호	1975. 5. 7	
임업시험장지장및임산물검사주재원사무실의 위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내무부령 176호	1975. 8. 21	
임업연수원직제	령 8695호	1977. 9. 20	
임업협동조합법	법 3231호	1980. 1. 4	
임업시험위탁등에관한규칙	내무부령 342호	1981. 2. 14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령 10506호	1981. 11. 2	
임업시험장직제	령 10507호	1981. 11. 2	
산림보호직원복제규정	내무부령 445호	1986. 6. 11	
임업시험장수목원관람규칙	부령 969호	1987. 4. 10	
임업진흥촉진법	법 5325호	1997. 4. 10	

### 3) 주요 법률 변천도

#### < 기획 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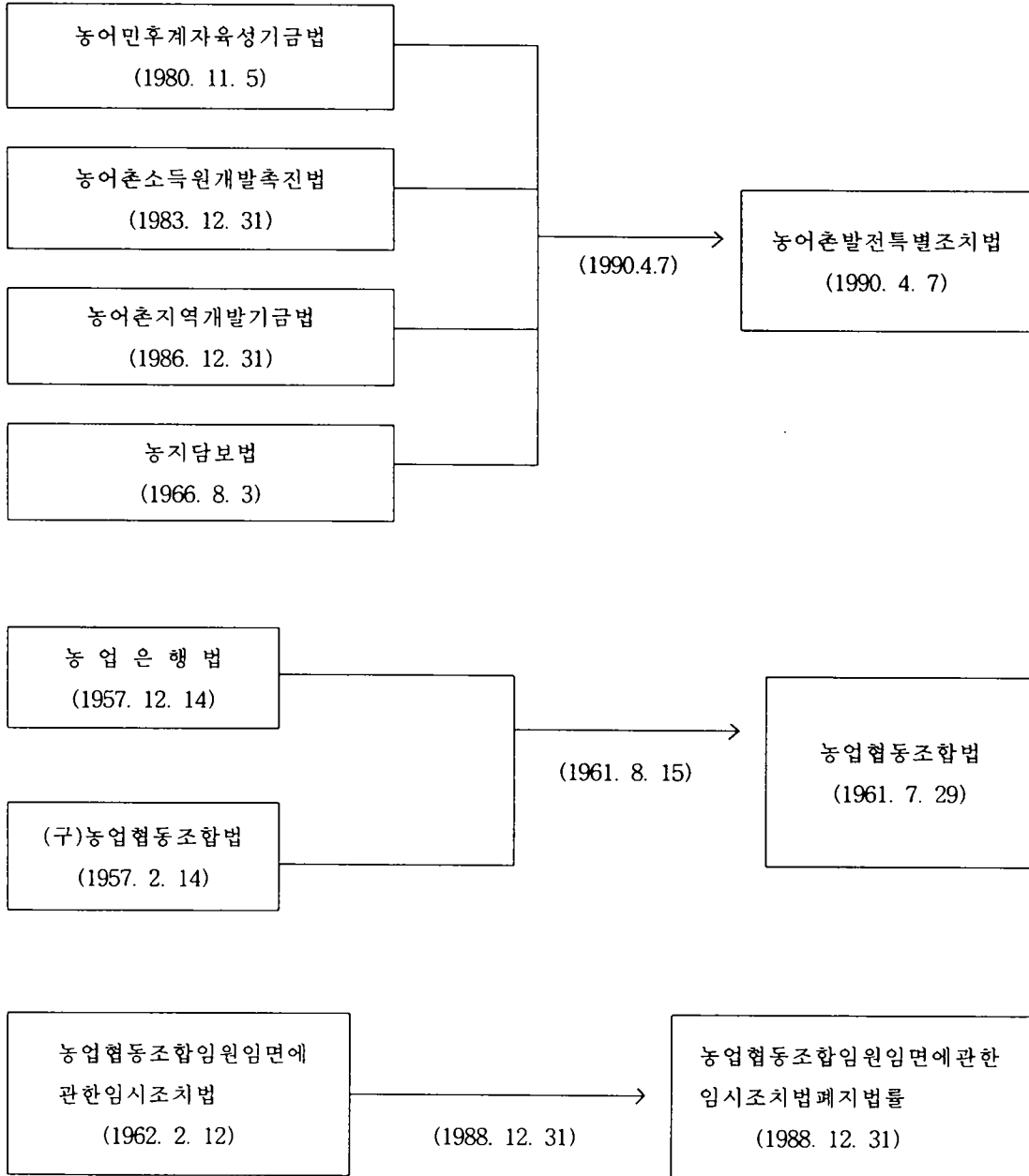


**※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부령 1288호, 1998. 8. 1)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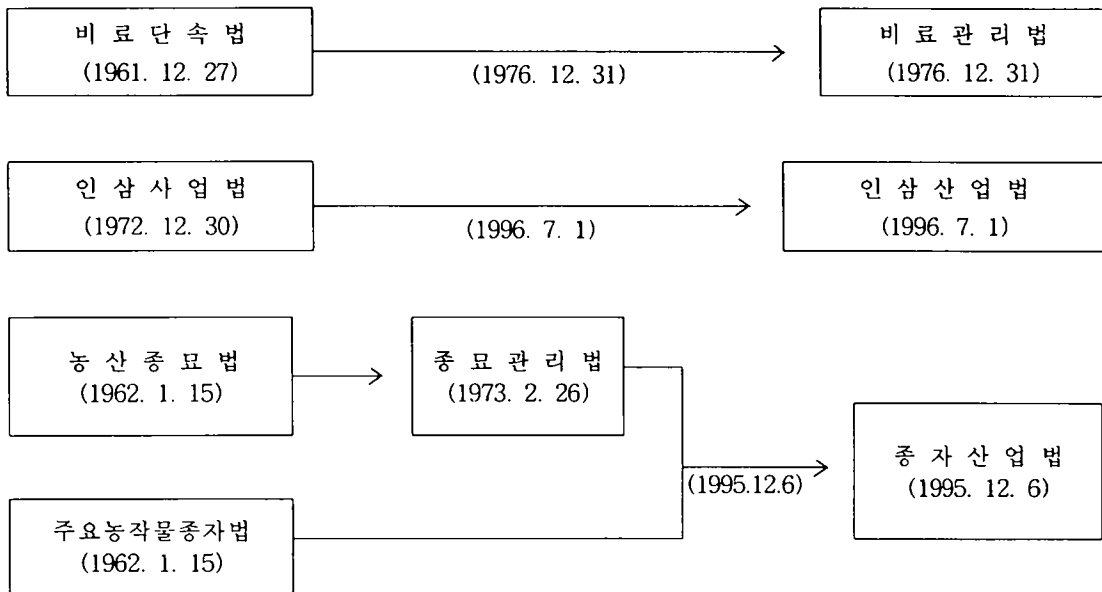
- 농업통계사무소·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 국립농산물검사소지소·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 국립동물검역소지소·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 국립식물검역소지소·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 국립식물검역소 격리재배관리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칙
- 농업기본통계조사규칙
- 농업센서스시행규칙
-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규칙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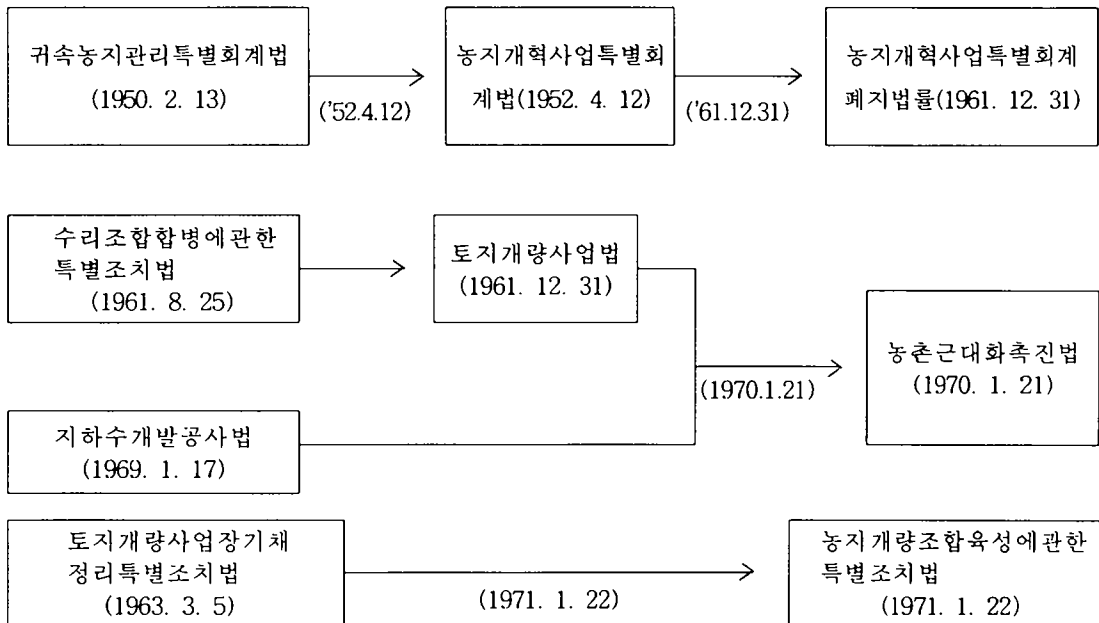
< 농업 일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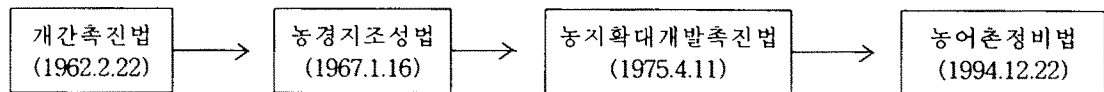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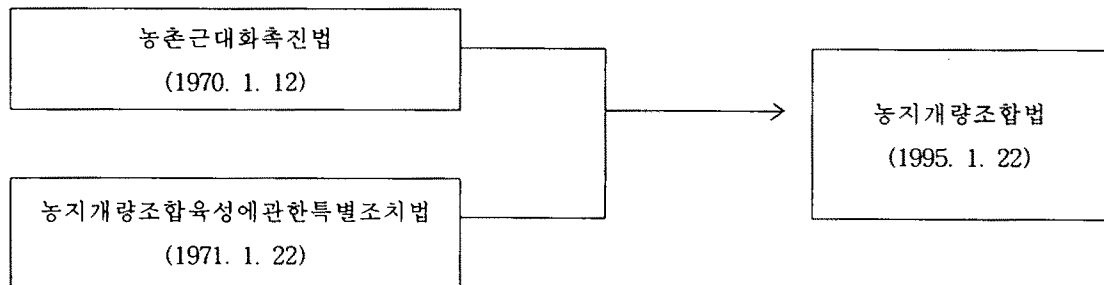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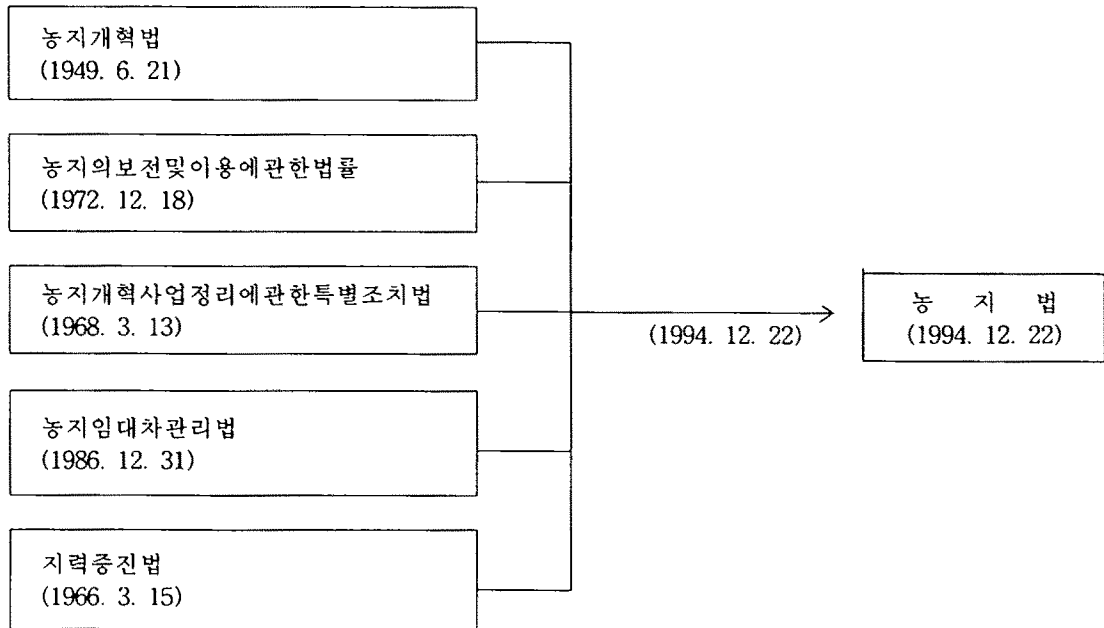
<농 산(원예, 자재, 특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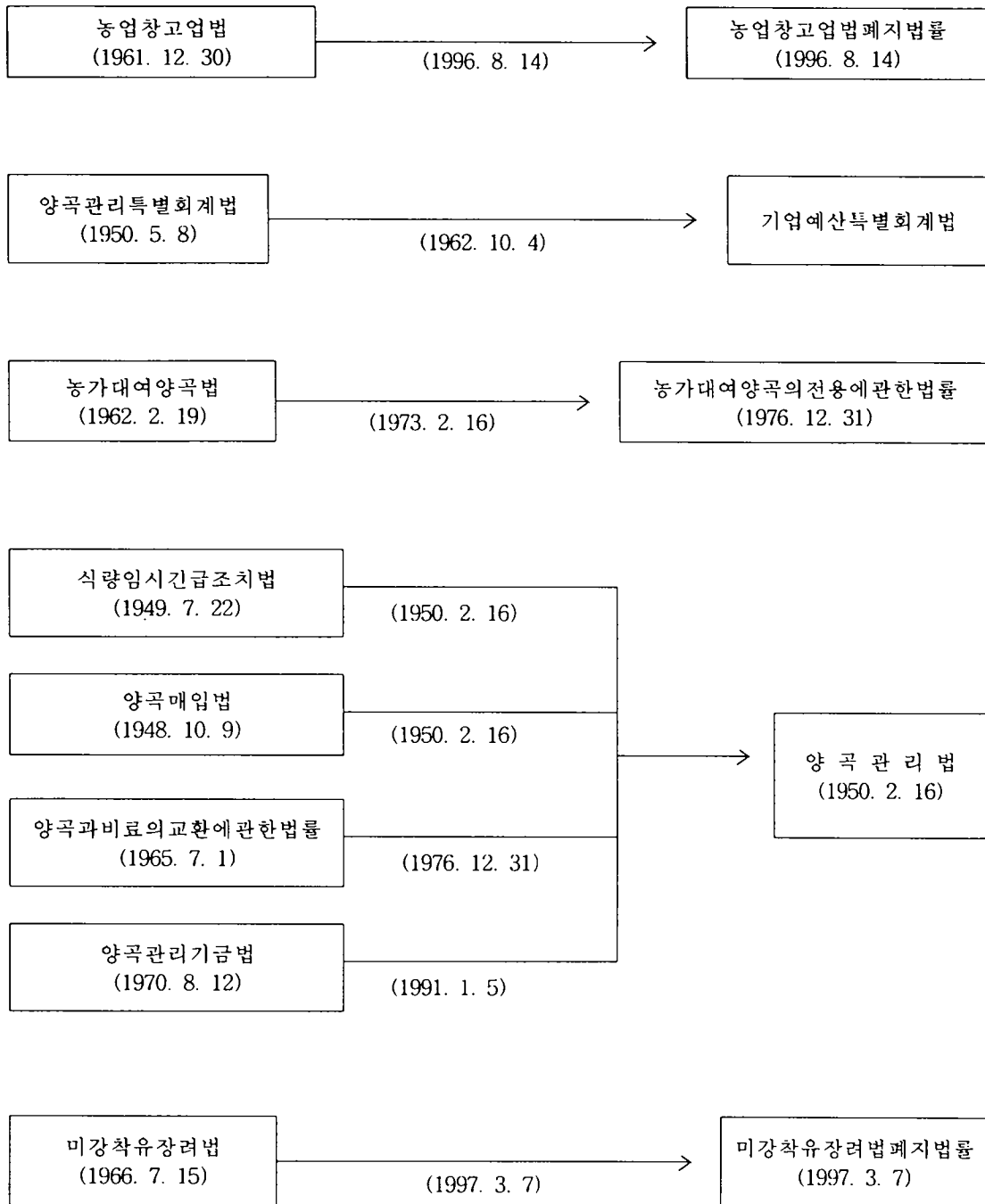
< 농촌·농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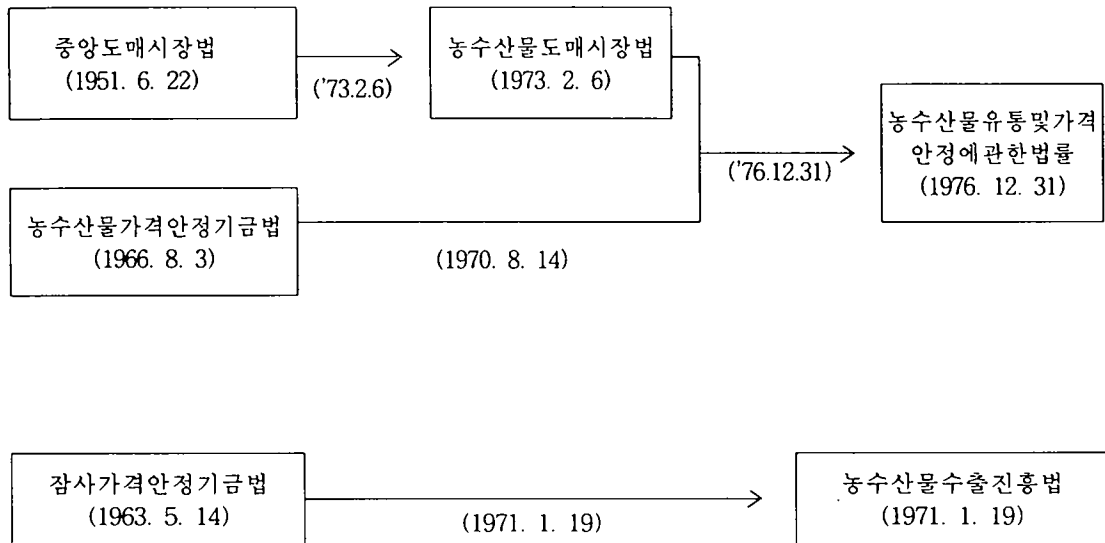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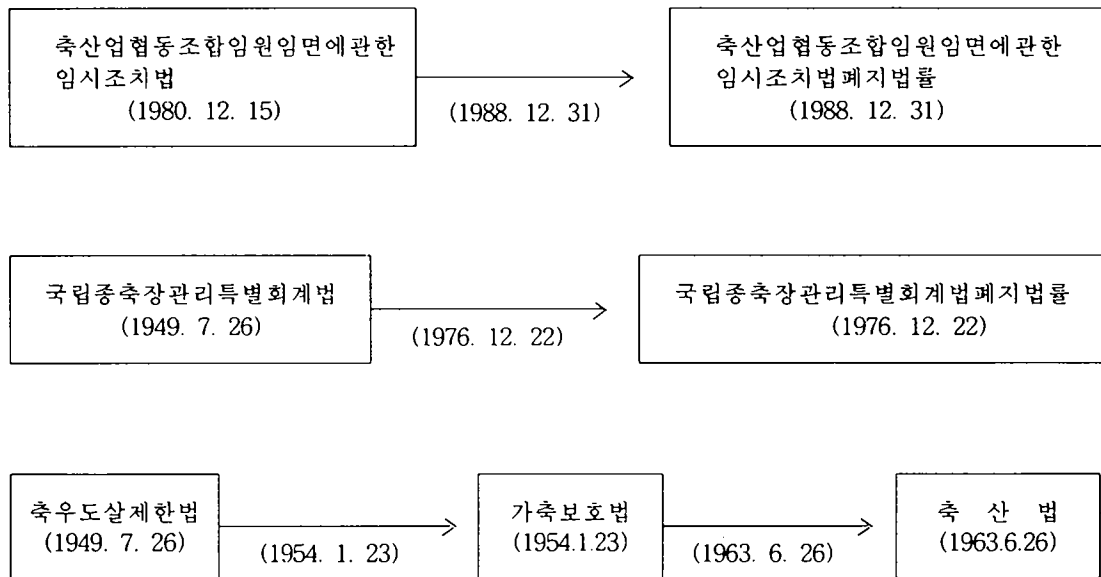
< 식 량 정 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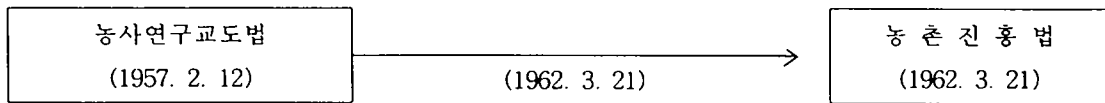
< 농산물 유통 >



< 축 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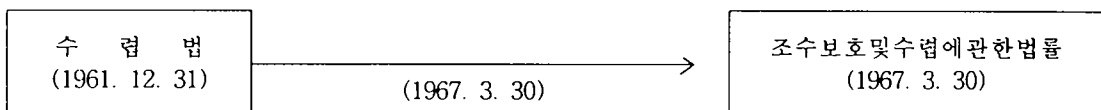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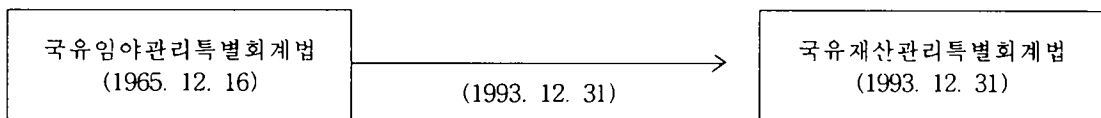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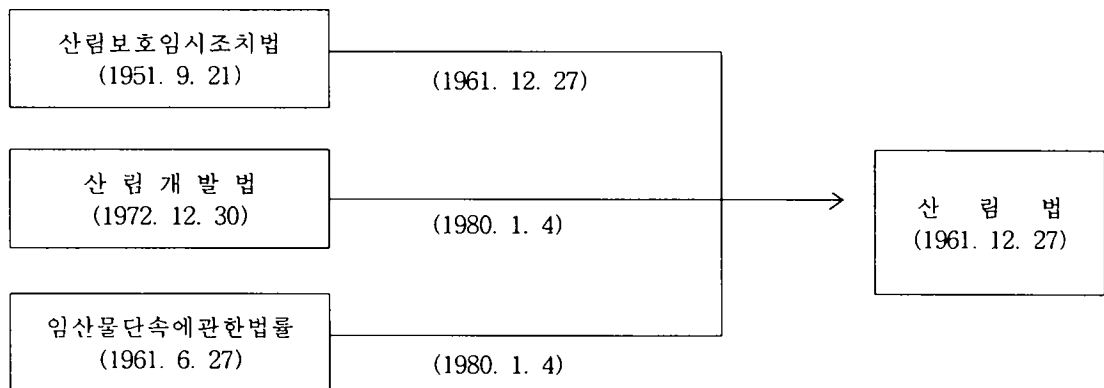


<농 촌 진 흥>



※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부령 1290호, 1998. 8. 1)에 의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소 및 시험장의 출장소 설치에 관한 규칙  
 폐지

<산 립 >



## 2. 농림 법령 주요내용

### 1) 기 획 관 리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업공무원 교육원직제 령 3864호 (1969. 4. 7)</p>	<p>개정 '72. 2. 15 령 6033호 '72. 6. 9 령 6244호 '73. 8. 23 령 6820호 '74. 11. 6 령 7347호 '76. 6. 23 령 8169호 '79. 2. 23 령 9345호 (농수산부직제등 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 항 정비) '80. 2. 1 령 9748호 (체신부직제등 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조항 정비) '80. 11. 26 령 10089호 '81. 2. 26 령 10205호 (내무부직제등 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1. 11. 2 령 10541호</p>	<p>폐 지</p>
<p>농업정책심의 위원회규정 령 5161호 (1970. 7. 9)</p>	<p>이 령은 농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정 책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함.</p> <p>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함.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경제기획원장관, 농수 산부장관, 제1무임소장관, 경제·과학심의회위원, 농업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 령이 위촉하는 자 9인 이내로 구성됨. ③ 전항의 위원은 농수산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 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함.</p> <p>개정 '78. 11. 27 령 9209호</p>	

건 명	내 용	비 고
농수산부직제 령 8384호 (1976. 12. 31)	개정 '94. 12. 23 령 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개정 '77. 8. 22 령 8661호 '77. 9. 20 령 8689호 (경제기획원직제등 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78. 4. 12 령 8927호 '78. 8. 3 령 9120호 '78. 9. 23 령 9166호 (법무부직제등 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조항 정비) '78. 12. 30 령 9271호 (내무부직제등 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조항 정비) '79. 2. 23 령 9345호 '79. 9. 10 령 9612호 '80. 2. 1 령 9748호 (체신부직제등 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조항 정비) '80. 11. 26 령 10085호 '81. 2. 26 령 10205호 (내무부직제등 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조항 정비) '81. 7. 23 령 10422호 '81. 11. 2 령 10536호 '83. 10. 7 령 11238호 (경제기획원직제등 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3. 10. 8 령 11242호 '86. 5. 31 령 11908호 '86. 10. 27 령 11986호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 규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6. 12. 27 령 12021호	폐 지

건 명	내 용	비 고
<p>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부령 974호 (1987. 6. 1)</p>	<p>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전문개정 '96. 4. 19 부령 1231호</p> <p>개정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해 관련 조항 정비함.</p> <p>전문개정 '98. 8. 14 부령 1291호</p> <p>① 주무관청은 규정에 의한 임원선임승인의 취소,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p>	
<p>농림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부령 977호 (1987. 6. 13)</p>	<p>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90. 8. 13 부령 1048호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부령 985호 (1987. 8. 20)</p>	<p>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농림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 중 농림부장관, 산림청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를 양</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법 4399호 (1991. 11. 22)</p>	<p>곡, 채소, 조미료, 수육류, 동물사료, 농약, 목재, 합판, 어개류, 어선 등으로, 관리대상업체를 제1호에서 정한 물자의 생산·가공·보관·판매·제재 또는 수출입을 행하는 업체로 정함.</p> <p>② 령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업체 중 정부투자기관 기타 특별법인을 제외한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농림부장관·산림청장의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함.</p> <p>개정 '95. 12. 29 부령 1216호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개정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조항 정비)</p> <p>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입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전문개정 '94. 8. 1 법 4772호</p> <p>개정 '95. 12. 6 법 5022호 인삼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p> <p>① 농림수산부장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용자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p>	<p>• 관련법령 : 예산회계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어촌특별조치법, 산림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법 4771호 (1994. 8. 1)</p>	<p>② 위탁받은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용자를 받은 자가 그 용자금을 용자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음.</p> <p>③ 농림수산부장관은 용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임업협동조합중앙회·인삼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림수산관련 법인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용자사무 또는 용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음.</p> <p>1. 이 법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확보된 농어촌특별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p> <p>2.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며, 이 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승계함.</p> <p>개정 '96. 12. 12 법 5183호</p> <p>① 회계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등 예수금은 당해 연도의 세입이 1조5천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회계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예수금의 원리금은 당해 연도의 세입이 1조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함.</p> <p>개정 '97. 12. 13 법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 관계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세법, 예산회계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령 15725호 (1998. 2. 28)</p>	<p>이 령은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98. 8. 1 령 15853호</p> <p>① 농림부장관소속하에 국립농산물검사소·농업공무원 교육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소를 둠.</p> <p>②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축산물검사부 및 질병연구부를 두고, 검역원에 소속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농림부령으로 정함.</p> <p>③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수의부이사관 또는 가축위생연구소로 보하고, 축산물검사 부장은 축산물 검사관련 국제협력,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분장하며, 동물용 의약품의 검사 및 수의기구의 검사를 신설함.</p> <p>④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에 부장 1인을 두며, 수의부이사관 또는 가축위생연구소로 보하고, 수출입동물·축산물 및 사료의 검역 동물질병의 예찰·진단 및 방역사항을 분장하며, 동물질병에 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사항을 신설함.</p> <p>동법시행규칙 제정 '98. 2. 28 부령 1280호 개정 '98. 6. 30 부령 1286호 '98. 8. 1 부령 1288호</p>	<p>•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p>

## 2) 감 사

건 명	내 용	비 고
<p>농림부행정감사 규칙 부령 984호 (1987. 7. 10)</p>	<p>이 규칙은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감독하는 농림부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① 감사는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함.</p> <p>② 종합감사는 감사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함.</p> <p>③ 부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함.</p> <p>④ 기강감사는 사고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관련사실에 대하여 실시함.</p> <p>개정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규정 정비)</p>	

### 3) 농 립 통 계

건 명	내 용	비 고
농업기본통계조사 규칙 부령 386호 (1969. 8. 16)	이 규칙은 통계법 <sup>1)</sup>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본통계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개정 '71. 11. 13 부령 469호 '76. 10. 30 부령 646호 '79. 4. 20 부령 757호	폐 지  1) 법 980호 (1962. 1. 15)
농업센서스시행 규칙 부령 387호 (1969. 8. 16)	이 규칙은 통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센서스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개정 '71. 11. 13 부령 467호 '76. 10. 30 부령 644호	폐 지
농수산통계사무소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부령 561호 (1974. 2. 1)	개정 '78. 4. 6 부령 715호 '78. 6. 24 부령 726호 '79. 3. 27 부령 755호 '80. 5. 28 부령 786호 '81. 4. 24 부령 826호 '81. 9. 23 부령 843호 '86. 2. 14 부령 953호	폐 지
가축통계조사규칙 부령 666호 (1977. 1. 20)	이 규칙은 통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통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① “행정조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조사·보고되는 통계조사를 말하고, “표본조사”라 함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의 일부를 임의로 추출한	

건 명	내 용	비 고
<p>농가경제및농산물 생산비조사규칙 부령 668 (1977. 1. 21)</p> <p>작물통계조사규칙 부령 760호 (1979. 4. 25)</p>	<p>표본만을 대상으로 농업통계조사기구를 통하여 조사·보고되는 통계조사를 말함.</p> <p>② 행정조사업무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 지사가 관장하고, 표본조사업무는 농업통계사무소장이 관장함.</p> <p>개정 '79. 4. 20 부령 758호 '79. 10. 16 부령 774호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규정 정비)</p> <p>이 규칙은 통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79. 4. 20 부령 759호 '83. 1. 31 부령 882호</p> <p>이 규칙은 통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물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95. 8. 18 부령 1209호</p> <p>① 조사대상등과 관련하여 재배면적에 관한 조사는 표본조사에 의하되, 조사시기에 생육되고 있는 전 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수량에 관한 조사는 표본조사 또는 행정조사에 의하되,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을 대상으로 함.</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업정보통계심의 위원회규정 령 1046호 (1981. 9. 15)</p>	<p>전문개정 '95. 8. 18 부령 1209호</p> <p>① 조사시기와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은 재배면적에 관한 조사시기를 작물의 심는 시기 및 생육시기를 고려하여 정하며, 수량에 관한 조사시기는 작물의 생육시기 및 수확시기를 고려하여 정함.</p> <p>② 시험조사 등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은 첫째 행정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수량에 관한 조사가 행하여지는 작물로서 통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계의 개선이 요구되는 작물에 대하여는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작물에 대하여는 조사인력·예산 등을 감안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둘째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수량에 관한 조사가 행하여지는 작물로서 생산량, 전체 농업에서의 해당작물의 중요도 및 표본조사의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행정조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작물에 대하여는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셋째 수량에 관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작물 중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당작물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수량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물에 대하여는 조사방법 및 조사시기를 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함.</p> <p>개정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1.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 조직과 원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81년 농수산조사 통계심의위원회규정에서 1993년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으로 변경됨.</p>	

건 명	내 용	비 고
	<p>① 농업정보통계제도의 개선과 농업정보통계조사결과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를 둠.</p> <p>전문개정 '93. 2. 19 령 13839호</p> <p>개정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6. 8. 8 령 15135호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 4) 농 업 일 반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어촌고리채 정리법 법 620호 (1961. 6. 10)</p>	<p>본법은 농어촌 고리채를 정리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성장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61. 6. 29 법 637호</p> <p>① 어민 및 고리채의 정의를 개정함. ② 고리채의 원본 및 한도초과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③ 농업금융채권의 이율을 년1할2분에서 년2할로 인상함.</p> <p>개정 '61. 8. 24 법 697호</p> <p>① 농업금융채권의 원리금상환조건을 개정함. ② 융자금상환조건을 개정함. ③ 변제청구권이 소멸된 채권에 관하여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p> <p>개정 '62. 9. 17 법 1145호</p> <p>① 농업금융채권의 원리금상환조건을 개정함. ② 농업금융채권의 액면이 1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상환에 관하여 규정함. ③ 융자금의 변제조건을 개정함. ④ 차용증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리채 정리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함.</p> <p>개정 '63. 12. 5 법 1468호</p> <p>① 무신고고리채로 처리된 것을 채무변제하도록 중용·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함.</p> <p>개정 '64. 12. 31 법 1676호</p> <p>① 농업금융 채권을 지불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업협동조합법 법 670호 (1961. 7. 29)</p>	<p>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58. 3. 7 법 474호</p> <p>① 이동(里洞)조합은 그 업무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농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과 동시에 농업은행에 대하여 조합능력에 상응하는 출자를 하도록 하며, 조합원이 대부금과 기타 조합부채를 가지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p> <p>개정 '61. 7. 29 법 670호</p> <p>(폐지제정)</p> <p>폐지 제정으로 기존의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업은행법에 의한 제도는 여러 가지 단점과 폐단이 많아 폐지하고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고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통합정비 하는 등 현실정에 부합되게 새로이 입법조치하려는 것임.</p> <p>개정 '63. 12. 16 법 1584호</p> <p>① 헌법개정에 따른 권력구조 변경에 수반하여 개정함.</p> <p>개정 '67. 1. 16 법 1879호</p> <p>① 무역법이 무역거래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계조항을 조정함.</p>	<p>• 관계법령 : 민법, 상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비송사건절차법, 보험업법, 화물유통촉진법 양곡관리법, 잠업법, 철도운송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석유사업법, 소방법, 농산물검사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67. 3. 30 법 1932호</p> <p>① 군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지불준비금의 최저율은 한국은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할 수 있게 함.</p> <p>개정 '73. 3. 5 법 2577호</p> <p>① 이동(里洞)조합은 이미 읍·면단위조합으로 통합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대규모로 통합되어야 할 형편이므로 그 명칭을 현실화하여 단위조합으로 바꾸고 조합금융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용기능을 보장하며 군조합의 회원조합수의 감소에 따라 그 이사의 정수를 재조정하는 한편, 중앙회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임원 및 직원의 임명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p> <p>개정 '76. 12. 31 법 2963호</p> <p>① 농업협동조합의 기구·조직 및 업무를 정비하고 사업범위를 확충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임.</p> <p>개정 '78. 12. 5 법 3121호</p> <p>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직·기능 및 이사정수의 조정으로 업무추진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중앙회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의 범위 안에서 현업기능을 축소시킴으로써 기획·지도·조사·교육기능을 보장하여 단위조합의 자립촉진과 건전한 농업협동조합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80. 12. 31 법 3300호</p> <p>① 농업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합인 군농업협동조합을 폐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사무소로 개편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원을 조정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계통조합에 대한 지도기능과 단위농협의 사업기능을 보장하여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p> <p>개정 '88. 12. 31 법 4080호</p> <p>① 조합과 중앙회가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경영하는 일반판매소에서는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된 주유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기계용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p> <p>②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기간 동안 조합원을 호별방문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하여 선거운동을 제한함.</p> <p>③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함.</p> <p>④ 선거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p> <p>전문개정 '88. 12. 31 법 4080호</p> <p>①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음.</p> <p>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이상의 형</p>	

건 명	내 용	비 고
	<p>의 선고집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또는 징형면직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당선무효로 취소된 후 확정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당해 조합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채한 자 등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음.</p> <p>개정 '89. 3. 29 법 4096호</p> <p>개정 '91. 12. 14 법 4419호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1. 12. 14 법 4423호 비송사건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1. 12. 14 법 4433호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3. 3. 6 법 4541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4. 1. 5 법 4707호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전문개정 '94. 12. 22 법 4819호</p> <p>① 조합과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조합간 또는 다른 농림수산부문 협동조합간의 상호협력·이해증진·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② 총회의결의 특례와 관련하여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합원의 투표로써 총회의결에 갈음하거나 조합장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p> <p>③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하여 선전벽보의 첨부, 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의 개최외의 임원선거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함.</p> <p>④ 합병지원과 관련하여 조합의 합병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p> <p>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함.</p> <p>⑥ 전문농업협동조합연합회 신설과 관련하여 권역별 또는 지역간 공동사업개발과 그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농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사항 및 이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신설함.</p> <p>⑦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체자금 조성·운용 및 사업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p> <p>⑧ 전문조합연합회 중앙회의 집행간부 명칭,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p> <p>전문개정 '94. 12. 22 법 4819호</p> <p>① 조합의 임원에 관한 자격조건, 정수 및 선출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p> <p>②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 민법, 상법의 규정을 준용함.</p> <p>③ 조합의 업무상의 여유자금 운용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④ 상임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직업종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6. 12. 30 법 5211호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7. 8. 30 법 5408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주무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 조합의 해산명령 처분에 관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p> <p>개정 '97. 12. 13 법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8. 1. 13 법 5505호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비용 충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동법 시행령</p> <p>제정 '70. 7. 9 령 5184호</p> <p>개정 '73. 9. 14 령 6856호</p> <p>'77. 4. 20 령 8538호</p> <p>'81. 2. 28 령 10211호</p> <p>'89. 4. 1 령 12125호</p> <p>'92. 3. 30 령 13626호</p> <p>'94. 12. 23 령 14438호</p> <p>(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5. 6. 22 령 14674호</p> <p>'96. 8. 8 령 15135호</p> <p>(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7. 11. 29 령 15516호</p> <p>(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폐지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7. 12. 31 령 15598호</p> <p>(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 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8. 4. 1 령 15761호</p> <p>(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 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의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p> <p>제정 '69. 6. 16 부령 340호</p> <p>개정 '73. 9. 21 부령 546호</p> <p>'77. 4. 29 부령 682호</p> <p>'81. 3. 31 부령 823호</p> <p>'89. 6. 27 부령 1031호</p> <p>'93. 5. 24 부령 1122호</p> <p>'95. 6. 23 부령 1190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업협동조합임원 임명에관한임시조 치법 법 1025 (1962. 2. 12)</p>	<p>'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1.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 하여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임명에 대한 특례를 규정 하려는 것임.</p> <p>2. 1988. 12. 31에 법률 제4079호 농업협동조합임원임 명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음.</p> <p>① 농업협동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함.</p> <p>② 이 법 시행 당시에 재임중인 군농업협동조합의 조합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p> <p>전문개정 '72. 12. 30 법 2430호</p> <p>① 이·동조합장의 임명권을 군조합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하조합에 대한 지도조정기능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조합장의 3년 임기제를 부활시키는 한편, 임기만료전의 해임권을 총회로부 터 임명권자에게 이관하여 이의 악용으로 조성되기 쉬운 폐단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장이 일정한 기간 그 소임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며 또한 과거 정치단 체에 참여한 인사일지라도 일단 탈퇴한 이상 능력 여하에 따라 이를 기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 는 등 조합장 임명제의 운영에 있어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 는 것임.</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업기본법 법 1871호 (1967. 1. 16)</p>	<p>개정 '80. 12. 31 법 3301호</p> <p>① 조합장 임명의 자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장의 조합장 임명에 대한 농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는 등 농협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임.</p> <p>이 법은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임에 감하여 그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제약을 보정하여 농업경영을 근대화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식량 및 기타 농산물의 증산을 기하고 농산물의 생산·가격·유통구조의 개선·농가소득의 증진, 타산업종사자와의 소득의 균형을 실현하여 농촌의 생활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정부의 기본시책의 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① 정부는 농업생산성의 향상, 농가소득의 증대, 농업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함.</p> <p>② 제반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함.</p>	<p>• 관계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축산법 등 62개 법률과 농업정책심의회규정 등 100여 개의 대통령령, 농림부령</p>
<p>농업협동조합공제규정기재사항에 관한규칙 부령 342호 (1969. 6. 16)</p>	<p>개정 '70. 1. 1 법 2176호</p> <p>① 주요농산물의 적정가격 유지에 필요할 때에는 “가격예시” 등의 시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하였음.</p> <p>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에 기재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p> <p>①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기타 준비금에 관한 사항, 공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법 2277호 (1971. 1. 13)</p>	<p>개정 '80. 2. 1 농수산부령 783호 '82. 6. 9 농수산부령 866호</p> <p>(신규제정)</p> <p>경영규모의 영세 및 담보가치의 부적격으로 물적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민들을 위한 채무보증제도를 확립하고 물적담보로부터 생산력담보로 전환하여 농수산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기함으로써 농수산금융의 개선과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p> <p>① 채무보증을 위한 기금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 단체의 보조금 또는 출자금으로 조성토록 함.</p> <p>② 기금은 독립기구가 설립될 때 까지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되 동기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재무부장관·농림부장관·한은총재·농협 및 수협회장과 업계 대표 2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도록 함.</p> <p>③ 기금에 의한 보증은 농민 및 어민을 농수산단체에 우선하여 취급하도록 함.</p> <p>④ 농어민의 생활유를 고려하여 보증료는 중소기업자 신용보증시의 1.5%보다 낮은 1%를 최고한도로 함.</p> <p>개정 '76. 12. 31 법 2953호</p> <p>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하고 보증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함으로써 미약한 담보능력을 보완하여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기하려는 것임.</p> <p>①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율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납하도록 하되 그 출납기간을 1980년말까지로 하여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함.</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② 기금관리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관계약을 회계연도별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약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하도록 하여 보증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함.</p> <p>③ 보증의 한도를 기금의 10배에서 15배로 확대하여 미약한 담보능력을 보완하여 농림수산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기하려는 것임.</p> <p>④ 재무부장관의 기금관리기관의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은행감독원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p> <p>개정 '80. 12. 31 법 3298호</p> <p>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기금의 여유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그 운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p> <p>①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손기간을 5년간으로 연장함.</p> <p>②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국채 지방채와 정부가 지금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을 추가함.</p> <p>동법시행령  제정 '71. 5. 15 령 5638호  개정 '73. 9. 8 령 6848호  '77. 3. 8 령 8477호  '81. 6. 5 령 10330호</p> <p>동법시행규칙  제정 '71. 10. 22 재무부령 853호  개정 '77. 4. 6 재무부령 1250호  '79. 12. 31 재무부령 1411호  '81. 5. 20 재무부령 1480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령 5889호 (1971. 12. 28)</p>	<p>이 령은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 농업단체 및 영농자간에 농업산학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기술의 개발과 농촌근대화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72. 12. 28 대통령령 6421호 '74. 9. 18 대통령령 7202호 '78. 11. 27 대통령령 9209호 (농업산학협동기금운영관리규정의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79. 2. 24 대통령령 9349호 '79. 8. 27 대통령령 9546호 '82. 12. 31 대통령령 11000호</p>	<p>폐 지</p>
<p>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법 3122호 (1978. 12. 6)</p>	<p>이 법은 농림·수산경제 및 농·어촌사회개발에 관한 정책수단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농림·수산시책의 수립과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95. 12. 6 법 4980호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령 제정 '79. 2. 2 령 9305호 개정 '96. 6. 10 령 15022호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폐 지</p> <p>•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민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업산학협동기금 운영관리규정 령 9349호 (1979. 2. 24)</p>	<p>이 령은 농촌진흥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농업산학협동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폐 지</p>
<p>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 법 3262 (1980. 11. 5)</p>	<p>1. 매년 격증하고 있는 농어촌청소년층의 이농(어)을 방지하고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하는 동시에 새마을운동과 사회정화운동의 발전을 주도할 기간요원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기부재산을 재원으로 농·어업을 영위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어촌 청소년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p> <p>2. 1990. 4. 7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과 함께 그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p> <p>① 기금은 특정인이 임의로 그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한 재산과 정부, 정부투자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출손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함.</p> <p>② 기금은 농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토록 하되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토록 함.</p> <p>③ 기금의 수익금 범위내에서 영농영어정착 지원사업과 기타 농어민 후계자육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목적외 사용규제 등 사후관리의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함.</p> <p>④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코자 함.</p> <p>⑤ 농수산부장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 4172호 (1989. 12. 30)</p>	<p>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동시에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독과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p> <p>⑥ 1980년 6월 17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국가에 부가 또는 증여된 재산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재산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금에 귀속된 것으로 규정함.</p> <p>개정 '82. 12. 31 법 3597호</p> <p>① 농어민후계자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을 확대조성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p> <p>개정 '83. 12. 29 법 3671호</p> <p>①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확대하여 복지농어촌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농어민후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기금의 수익금에서만 정착사업유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기금의 원금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을 농어민후계자의 교육훈련비로도 쓸 수 있도록 함.</p> <p>동법시행령  제정 '81. 2. 28 령 10209호  개정 '83. 12. 9 대통령령 11273호  '87. 6. 23 대통령령 12182호</p> <p>1. 이 법은 농어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어가의 부채상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함.  2. 1961. 6. 10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이 제정되고, 1969. 8. 4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p>	<p>• 관계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4228호 (1990. 4. 7)</p>	<p>법이 제정됨(1966. 5. 25자로 일정한 농어의 변제 의무를 면제gks 것으로 함).</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p> <p>① “농어민”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농민, 어민, 양축가를 말함.</p> <p>② “농어가부채”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의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으로부터 차입한 일체의 금전채무를 말함.</p> <p>③ “금융기관”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의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함.</p> <p>개정 '93. 6. 11 법 4556호 (임업협동조합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1. 이 법은 농림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90. 4. 7 구조개선을 통한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은 폐지되고 1993. 6. 11 개정으로 농지담보법이 폐지됨.</p>	<p>임업협동조합법</p> <p>• 관계법령 도로법, 상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91. 5. 31 법 4377호</p> <p>개정 '91. 11. 22 법 4400호</p> <p>개정 '91. 12. 14 법 4419호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1. 12. 14 법 4429호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3. 6. 11 법 4552호, 법 4556호 임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하고, 농림어업의 기술향상을 촉진하고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인 등을 농업사·임업사 또는 어업사로 선정하고 농업사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이의 종류, 자격기준, 선정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p>② 농림어업전문경영자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해정부는 농림어업 교육기관이 농업인 등에 대한 농림어업전문경영자 과정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과정의 기준을 정함.</p> <p>③ 농림어업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과학기술에 관한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농림수산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함.</p>	<p>지개량조합법,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 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93. 8. 5 법 4572호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3. 12. 30 법 4675호 국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3. 12. 31 법 4690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정비함.</p> <p>개정 '94. 3. 24 법 4748호 사방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4. 8. 3 법 4781호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4. 12. 22 법 4796호 도농복합형태의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4. 12. 22 법 4817호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4. 12. 22 법 4818호</p> <p>개정 '94. 12. 22 법 4823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후계자, 어업인후계자, 임업인후계자를 선정 하고 이들에 대한 육성·지원에 적극 협조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② 영농회사법인의 육성에 관련하여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내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농업회사법인을 출자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함.</p> <p>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농업인 등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정보이용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과 농림수산물의 생산자 단체 및 농림어업의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는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p> <p>④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p> <p>⑤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 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p> <p>⑥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이 법에 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95. 12. 29 법 5108호 토지공사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7. 1. 13 법 5279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7. 12. 13 법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인가, 승인,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p> <p>동법 시행령 제정 '90. 8. 8 령 13063호 개정 '91. 2. 1 령 1328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91. 7. 3 령 13430호 '91. 9. 26 령 13480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92. 2. 22 령 13596호 '92. 5. 30 령 13655호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p>'92. 12. 24 령 13785호</p> <p>'93. 3. 6 령 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3. 12. 14 령 14025호</p> <p>'94. 7. 23 령 1433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4. 12. 23 령 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4. 12. 23 령 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4. 12. 23 령 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4. 12. 23 령 14450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4. 12. 31 령 14486호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 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5. 6. 23 령 14681호</p> <p>'95. 12. 22 령 14835호 (농지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6. 6. 29 령 15093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법 4229호 (1990. 4. 7)</p>	<p>'96. 6. 29 령 15098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 련 조항 정비)</p> <p>'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 련 조항 정비)</p> <p>'96. 12. 31 령 15227호</p> <p>동법 시행규칙 제정 '90. 12. 31 부령 1060호 개정 '92. 2. 22 부령 1095호 '94. 5. 13 부령 1135호 '95. 7. 8 부령 1200호 '95. 12. 29 부령 1217호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1. 이 법은 농어촌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 을 설치하여 농가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하고 농 업생산기반의 조성·정비와 농어가의 소득향상기 반의 확충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농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p> <p>2. 이 법 제정전까지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촌근대화촉진 법에 의한 "농업진흥공사"로 농업생산기반조성업무 를 고유업무 기능으로 수행했음.</p> <p>개정 '93. 12. 31 법 4675호</p> <p>국채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을 정비함.</p>	<p>• 관계법령 :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농지법, 초지법, 농어촌 정비법, 농업협 동조합법, 부동 산등기법, 정부 투자기관관리기 본법, 조세감면 규제법, 지방세 법, 기금관리기 본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94. 11. 11 법 4787호</p> <p>①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자가 당해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농지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농지임을 명시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함.</p> <p>②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p> <p>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규정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거나 임차료를 지급 받은 자에 대한 벌금 조항과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p> <p>전문개정 '94. 11. 11 법 4787호</p> <p>①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어가의 지원과 관련하여 공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가가 농지·어선 등을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조치와 전업장려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p> <p>개정 '94. 12. 22 법 4817호 (농지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p>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령 14678호 (1995. 6. 22)</p> <p>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 제도 시행 규정 령 15265호 (1997. 2. 1)</p>	<p>개정 '96. 12. 12 법 5170호 (정부유자특별회계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개정 '97. 12. 13 법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령 제정 '90. 6. 26 령 13030호 개정 '95. 2. 18 령 14529호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 제정 '91. 1. 4 부령 1061호 개정 '94. 11. 3 부령 1159호 '95. 2. 18 부령 1172호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 시행규칙 등 중 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이 령은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9조,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8조, 축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 및 임업협동조합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에 설치하는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이 령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재정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업협동조합합병 촉진에관한법률 법 5239호 (1998 12. 30)</p> <p>(1997. 1. 1 부터 2001. 12. 31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 시법)</p>	<p>① 직접지불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은 고령인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고 전업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의 규모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이의 시행을 위해 해당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춘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소득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이를 대행하게 함.</p> <p>개정 '97. 12. 8 령 15534호</p> <p>동법 시행규칙 제정 '97. 2. 25 부령 1252호 개정 '97. 12. 10 부령 1267호</p> <p>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효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합의 경쟁력강화와 건전한 발전을 통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개정 '96. 12. 12 법 5170호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개정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 관계법령 : 민법, 상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비송사건절차법, 보험업법, 화물유통촉진법, 양곡관리법, 잠업법, 철도운송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대외무역법, 부동산중개업법, 석유사업법, 소방법, 농산물검사법</p>



5) 농 산(원예·자재·특작)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약관리법 법 445호 (1957. 8. 28)</p>	<p>이 법은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안전 사용을 도모하고 농약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p> <p>① 농림부장관은 농약의 종류별 유효성분의 명칭과 함 유량, 유해성분의 명칭과 허용한 최대 함유량 등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한 공정규격을 정할 수 있음.</p> <p>② 농약의 제조·수출입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p> <p>③ 제조업자 또는 수출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출입한 농 약은 각 용기 또는 포장에 약명·성분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함.</p> <p>④ 유독성농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사교도소장에 게 통보하도록 하고 농사교도소장은 반드시 교도원 으로 하여금 농약의 취급방법을 주지시키도록 함.</p> <p>⑤ 농림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 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 자의 사무소등을 점검하여 약품과 장부 기타의 서류 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p> <p>⑥ 해당 명령, 처분에 위반되거나 농약이 농작물 등에 유해할 때 농약의 제조, 수출입 또는 판매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p> <p>⑦ 농림부장관이 공정규격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하고 자 할 때와 농약의 검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농약심의회 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정하 도록 함.</p> <p>개정 '69. 5. 22 법 2115호</p>	<p>• 관계법령 : 수질환경보전법, 식물방역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식량증산의 필수자재인 농약의 합리적인 보관관리를 기하고자 누락된 유해한 동식물의 방제약제를 현행 규정에 추가하는 등 농약의 정의를 확대하고 부정농약의 단속 및 벌칙규정을 강화하며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대한 적용 제외등 미비사항을 보강하려는 것임.</p> <p>개정 '77. 12. 31 법 3064호</p> <p>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의 원활 및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 <p>① 농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약에 대하여 종류별로 유효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분의 명칭과 허용최대함유량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격을 정하여 시행일 30일전까지 고시하게 함.</p> <p>② 농약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약효·약해·독성 및 잔유성 등에 관한 시험을 거쳐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함.</p> <p>③ 농약의 약효의 지속적 보장을 위하여 농약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p> <p>④ 농수산부장관은 농약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농약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취급방법 등을 정하게 함.</p> <p>⑤ 병충해로 인한 재해방지와 농약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농약을 비축·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p> <p>개정 '79. 12. 28 법 3213호</p> <p>농수산부장관이 농약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하고자 할 경우 환경청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전문개정 '80. 12. 31 법 3322호</p> <p>농약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방지하고, 농약의 유통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우수농약개발시험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농약관리를 기하려는 것임.</p> <p>① 농수산부장관은 농약의 수급원활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 원제업자에 대하여 농약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유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p> <p>② 농수산부장관은 농약의 품목을 고시하며,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의 농약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함.</p> <p>③ 제조업등의 허가취소와 판매업등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불량농약의 제조와 판매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에 대하여 출하전에 자체검사를 하도록 함.</p> <p>⑤ 농약사용자로 하여금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게 하여 농약으로 인한 공해를 사전에 방지하게 함.</p> <p>전문개정 '95. 12. 6 법 5023호</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전문개정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관련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함.</p> <p>②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영업의 등록취소, 품목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비료단속법 법 882호 (1961. 12. 27)</p> <p>잠업법 법 883호 (1961. 12. 27)</p>	<p>동법 시행령 전문개정 '81. 2. 12 령 10195호 전문개정 '96. 10. 7 령 15156호 개정 '84. 2. 29 령 11372호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97. 12. 31 령 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 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81. 3. 26 부령 822호 개정 '81. 5. 8 부령 827호 전문개정 '96. 12. 7 부령 1242호</p> <p>1. 본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그 공정한 거래를 확보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함. 2. 1976. 12. 31 법 2985호와 동시에 부칙에 의하여 폐지 됨.</p> <p>① 부칙에 의하여 1962년 제령 제14호 조선비료취체령 은 이를 폐지함.</p> <p>이 법은 잠사류의 생산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잠 사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① 원잠종의 제조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통 잠종의 제조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교배형식에 의 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함. ② 잠종제조업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③ 잠종의 제조 또는 양도등의 제한을 정함. ④ 잠종의 수출입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p>	<p>폐 지</p> <p>• 관계법령 : 기금관리기본 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⑤ 상전의 주변 80미터이내의 지역에서는 잠아에 대하여 유독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함.</p> <p>⑥ 잠사업·견방업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p> <p>개정 '71. 1. 22 법 2301호</p> <p>우량잠품종의 개발육성 및 잠품종 제조에 필요한 사항을 보장함으로써 우량잠종의 생산·보급과 생사의 증산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잠종제조업자 및 제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p> <p>① 원원잠종과 원잠종은 국립잠종장과 잠종제조업자로서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를 제조하도록 함.</p> <p>② 원원잠종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원원잠종을 사용하여 제조하도록 함.</p> <p>③ 잠종제조업자 및 제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정을 강화함.</p> <p>전문개정 '76. 12. 31 법 2964호</p> <p>중전에 농수산물수출진흥법에 의하여 적립·운영되어 오던 잠업진흥을 위한 기금의 적립·보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전의 규정중 현실에 맞지 아니한 규정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 <p>① 농림수산부장관은 매년 잠종의 기본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립잠종장·도잠종장 및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잠종을 생산하도록 함.</p> <p>② 양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상묘는 도잠업검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원원잠종 및 원잠종에 대하여는 그 생산자가 자체검사를 하며, 보통잠종은 도잠업검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함.</p> <p>③ 잠견은 국립농산물검사소와 도잠업검사소에서, 생사류는 국립생사검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함.</p> <p>④ 잠종생산업의 허가, 상묘, 잠종의 수출입허가, 잠견의 판매추산업의 허가, 제사업의 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⑤ 농수산부장관은 상묘·잠종·잠견 및 생사류의 기준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p> <p>⑥ 잠업진흥과 생사류의 수출 및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잠업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제사업의 생사수출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일정액을 기금에 적립하게 함.</p> <p>개정 '81. 4. 13 법 3441호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원원잠종·원잠종 및 보통잠종의 생산업과 생사·옥사 및 견방사류의 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 시설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예정일 7일전까지 농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임대할 수 있게 함.</p> <p>개정 '94. 12. 30 법 4844호</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7. 8. 22 법 5346호</p> <p>① 국립잠사기관·도 잠사기관·뽕나무묘목 생산업자는 검사결과에 합격한 뽕나무묘목 또는 누에씨에 대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p> <p>개정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동법 시행령 전문개정 '77. 5. 12 령 8556호</p>	

건 명	내 용	비 고
식물방역법 법 908호 (1961. 12. 30)	<p>             전문개정 '95. 6. 17 령 14673호              개정 '76. 9. 21 령 9624호              '81. 3. 20 령 10256호              '81. 9. 3 령 10455호              '83. 7. 9 령 11167호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외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97. 11. 29 령 15520호              '97. 12. 31 령 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 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98. 8. 1 령 15854호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동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77. 8. 20 부령 696호              전문개정 '95. 8. 16 부령 1208호              개정 '79. 9. 27 부령 773호              '82. 1. 20 부령 853호              '83. 8. 30 부령 896호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97. 12. 22 부령 1270호              '98. 8. 1 부령 1290호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개정              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p> <p>             이 법은 수출입식물과 국내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의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임업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p>	<p>• 관계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약관</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66. 3. 29 법 1772호</p> <p>① 지방에도 식물방역공무원을 둘 수 있게 함.  ② 방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고, 공동방제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p> <p>개정 '69. 8. 4 법 2135호</p> <p>① 지정유해 동식물로 인한 손해발생시 도지사로 하여금 공동방제를 실시하게 하고, 공동방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는 수익자부담을 하게 함.</p> <p>전문개정 '95. 12. 8 법 5021호</p> <p>① 수입식물 등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②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수출식물 등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시행규칙</p> <p>제정 '69. 8. 4 부령 373호  개정 '72. 2. 22 부령 476호  '72. 9. 27 부령 502호  '73. 10. 20 부령 549호  '74. 3. 21 부령 565호  '76. 12. 20 부령 658호  '79. 3. 29 부령 754호  '81. 12. 28 부령 848호  '83. 6. 27 부령 891호  '83. 11. 11 부령 899호  '86. 6. 13 부령 958호</p>	<p>리법,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법률</p>



건 명	내 용	비 고
<p>주요농작물종자법 법 975호 (1962. 1. 15)</p>	<p>동법시행령 제정 '96. 12. 5 령 15176호 전문개정 '96. 12. 7 부령 1243호</p> <p>이 법은 주요농작물 우량종자의 생산정선처리, 판매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p> <p>전문개정 '75. 4. 4 법 2751호</p> <p>동법시행령 개정 '75. 8. 30 령 7774호 '81. 9. 18 령 10470호 (위원회정비를위한기계공업정책조정위원회규정 등의폐지및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설치령등 일부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1. 12. 21 령 10648호</p> <p>동법시행규칙 전문개정 '77. 1. 8 부령 665호 개정 '82. 4. 16 부령 862호</p>	<p>폐 지</p>
<p>농산종묘법 법 976호 (1962. 1. 15)</p>	<p>1. 1973. 2. 26 법 2555호 종묘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부칙에 의하여 폐지됨.</p> <p>농산물의 우량한 종묘생산과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p> <p>① 종묘업자는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종묘업자가 아니면 보증종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종묘의 보증을 받고자 할 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함.</p> <p>②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70. 1. 1 법 2177호</p> <p>현행법에 의해 보증종묘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자도 신고만으로써 보증종묘업자로 되는 예가 허다하며 종묘에 대한 보증은 정부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부검사에는 막대한 인원과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보증종묘의 숨은 결함에서 발생하는 각종 책임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됨으로 보증종묘업을 등록제로 하는 한편 신용을 전제로 한 업자의 자체보증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p> <p>① 보증종묘업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등록을 받도록 함.</p> <p>② 농림부장관의 자문과 보증종묘의 등록 기타 종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묘심의회를 둠.</p> <p>③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경우 보증종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p>	
<p>잠사가격안정기금 법 법 1342호 (1963. 5. 14)</p>	<p>1. 이 법은 잠사가격의 안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잠사농가의 경제향상과 생사수출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잠사"라 함은 상묘, 잠종, 잠건과 생사를 말함.</p> <p>2. 1971. 1. 19 법 2289호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부칙에 의해 폐지 됨.</p>	<p>폐 지</p>
<p>지력증진법 법 1766호 (1966. 3. 15)</p>	<p>1. 이 법은 농작물의 생산근원이 되는 농경지의 지력을 배양 증진함으로써 저위에 침체되어 있는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고 아울러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94. 12. 22 법 4817호와 동시에 부칙에 의해 폐지됨.</p> <p>동법시행령 '70. 7. 9 령 5171호</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국립농업자재검사 소설치법 법 1777호 (1966. 4. 23)</p>	<p>1. 현행 비료와 농약 및 농기구등 농업자재의 검사업무를 그 종별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식물환경연구소와 농공이용연구소에서 담당하게 하고 있으나 이 업무를 독립의 단일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서 그 품질의 향상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국립농업자재검사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임.</p> <p>2.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1981. 12. 31 법률 제3518호) 부칙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함.</p> <p>① 국립농업자재검사소는 비료,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농업용기계기구를 검사하도록 함.</p> <p>② 소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p> <p>③ 국립농업자재검사소의 직제 및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p>	<p>폐 지</p>
<p>농어업재해대책법 법 1874호 (1967. 1. 16)</p>	<p>1. 이 법은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67. 1. 16 농업재해대책법으로 제정되어, 1990. 8. 1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제명 변경</p> <p>개정 '90. 8. 1 법 4250호</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한 장비·기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시 농업용시설·농경지·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재해 피해 농가 및 어가의 지원에 대한 사항 및 기타 재해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해대책을 실시함.</p> <p>개정 '93. 6. 11 법 4555호 '95. 12. 6 법 4993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축산법, 토지수용법, 자동차운수사업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풍수해대책법 1894호 (1967. 2. 28)</p>	<p>동법시행령 개정 '70. 6. 25 령 5130호 '93. 3. 6 령 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93. 8. 28 령 13966호 '94. 12. 23 령 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94. 12. 23 령 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94. 12. 23 령 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94. 12. 23 령 14450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97. 5. 24 령 15379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계획의 수립과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p> <p>① 국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과의 조정에 재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식물방역법제23조의 3의규정에의한비용 부담에관한규정 령 4069호 (1969. 9. 20)	<p>② 재해발생시 재해응급대책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재해대책본부를 두도록 함.</p> <p>③ 재해예방으로서 방재조직의 정비, 방재에 관한 교육 및 훈련,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등을 규정함.</p> <p>④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경보의 발령·피난·시설 또는 설비의 응급복구등 재해응급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p> <p>개정 '81. 12. 17 법 3461호</p> <p>방재에 관한 계획과 방재조직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체제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기본계획지침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기본계획요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p> <p>② 건설부장관은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방재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도록 함.</p> <p>③ 재해응급대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도·시·군·구에 지방재해대책본부를 두도록 함.</p> <p>개정 '70. 7. 21 령 5215호            '72. 10. 7 령 6360호            '79. 11. 15 령 9660호</p>	폐 지

건 명	내 용	비 고
<p>국립농업자재검사 소직제 령 5062호 (1970. 6. 17)</p>	<p>개정 '71. 6. 4 령 5662호 '72. 2. 15 령 6029호 '72. 6. 9 령 6220호 '74. 6. 6 령 7345호 '75. 6. 14 령 7657호 '78. 5. 3 령 9005호 '78. 12. 30 령 9271호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79. 12. 5 령 9685호 '80. 2. 1 령 9748호 (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0. 11. 26 령 10088호 '81. 2. 26 령 10205호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1. 11. 2 령 10540호 '83. 10. 7 령 11238호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 비)</p>	<p>폐 지</p>
<p>농산장려보조금 교부규칙 령 5178호 (1970. 7. 9)</p>	<p>농림부장관은 농업생산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함.</p>	
<p>종묘관리법 법 2555호 (1973. 2. 26)</p>	<p>이 법은 종묘의 생산 및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p> <p>(폐지제정)</p> <p>기존 농산종묘법은 보증종묘의 생산·판매를 원하는 종묘 업자에 한한 규정으로서 우량종묘의 보급장려에 그쳐실효 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다수의 군소약덕종묘업자들이 제 도상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불량종묘의 생산·수집을 하여</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민에게 위장판매함으로써 실농하는 예가 있어 대량수요되는 주요품목의 종묘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전면관리·규제함으로써 농민이 안심하고 우량종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산종묘법을 폐지하고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p> <p>① 종묘업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종묘상은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등록을 받도록 함.</p> <p>② 종묘업자 또는 종묘상에게 일정한 시설의무와 기술자보유의무를 지움.</p> <p>③ 종묘업자는 생산하고자 하는 종묘의 종류와 품종에 대해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도록 함.</p> <p>④ 농림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종묘심의회를 두며 농림부장관은 재해·지변 기타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 종묘의 비축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며 종묘가격안정을 위해 종묘의 생산비·이윤 등을 참작하여 가격을 산정함.</p> <p>개정 '81. 3. 20 법 3394</p> <p>우량종묘의 생산과 보급을 기하기 위하여 종래 종묘생산포장제도를 지양하여 종묘생산지역의 지정·고시제도를 채택하고, 종묘중 종자의 포장에는 그 발아율보증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판매용종자는 판매전에 순도검정 및 차대검정을 받아 우량종묘로 판정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종묘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수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p> <p>① 종묘업자는 판매용 종묘의 생산을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안에서 하도록 함.</p> <p>② 농수산부장관은 생산된 종묘에 대하여 순도검정 또는 차대검정을 받은 후 판매하도록 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국립잠종장직제 령 6753호 (1973. 7. 9)</p> <p>국립생사검사소직제 령 7208호 (1974. 7. 20)</p>	<p>③ 농수산부장관은 유통되고 있는 종묘에 대하여 종묘 검사원으로 하여금 포장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종묘업자가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종자에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지를 첨부하도록 함.</p> <p>④ 종묘업자는 그 판매전에 생산된 종자의 순도검정 또는 차대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p> <p>동법시행령 제정 '73. 9. 6 령 6842호 개정 '75. 6. 14 령 7653호 '81. 7. 23 령 10414호 '85. 6. 17 령 11708호</p> <p>동법시행규칙 제정 '73. 12. 17 령 554호 개정 '75. 7. 25 부령 560호 '81. 9. 15 부령 841호 '85. 6. 21 부령 936호</p> <p>개정 '74. 11. 6 령 7342호 '76. 6. 23 령 8171호 '80. 2. 1 령 9748호 (채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0. 11. 26 령 10090호 '81. 2. 26 령 10205호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1. 11. 2 령 10543호</p> <p>개정 '74. 11. 6 령 7343호 '76. 6. 23 령 8172호 '79. 9. 10 령 9615호</p>	<p>폐 지</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국립종자공급소 직제 령 7341호 (1974. 11. 6)</p>	<p>'80. 2. 1 령 9748호 (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1. 2. 26 령 10205호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1. 7. 23 령 10422호 (농수산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1. 11. 2 령 10537호</p> <p>개정 '76. 6. 23 령 8170호 '77. 6. 3 령 8591호 '78. 12. 30 령 9271호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79. 2. 23 령 9345호 (농수산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79. 9. 10 령 9616호 '80. 2. 1 령 9748호 (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1. 2. 26 령 10205호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1. 7. 23 령 10422호 (농수산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1. 11. 2 령 10544호 '86. 12. 26 령 12013호</p>	
<p>농업기계화심의 위원회규정 령 11304호 (1975. 12. 30)</p>	<p>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농업기계화심의위원회를 둔.</p> <p>개정 '83. 12. 30 대통령령 11364호</p>	<p>폐 지</p>
<p>비료관리법 법 2985호 (1976. 12. 31)</p>	<p>1.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p>	<p>• 관계법령 : 예산회계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p>

건 명	내 용	비 고
	<p>2. 1976. 12. 30 법률 제정 시에 비료단속법(1961. 12. 27 법 882호 신규 제정)을 부칙으로 폐지</p> <p>① 농림부장관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공정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p> <p>②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비료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p> <p>③ 생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보증표를 붙이도록 하고 보증표가 붙여진 비료가 아니면 양도하지 못하도록 함.</p> <p>④ 생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비료의 주성분의 함유량 또는 그 효과에 관하여 허위의 선전을 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p> <p>⑤ 농림부장관·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비료의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등의 사업장 등에 들어가서 비료 및 그 원료와 서류의 검사등을 할 수 있도록 함.</p> <p>⑥ 비료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와 영업의 정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p> <p>⑦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에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수입·양도수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p> <p>(폐지제정)</p> <p>비료의 품질향상과 수급의 원활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의 비료단속법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p> <p>① 농수산부장관은 비료(퇴비·쌀겨등의 특수비료를 제외함)의 종류별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공정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공정규격이 정해진 비료 즉 보통비료와 특수비료 이외의 비</p>	<p>법체납처분규정</p>

건 명	내 용	비 고
	<p>료는 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특수비료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함.</p> <p>② 농수산부 장관은 매년 비료의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그 생산자·수입업자등에 대하여 비료의 매도명령을 할 수 있으며, 비료의 수입·수출 또는 판매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함.</p> <p>③ 농수산부 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p> <p>④ 폭리를 목적으로 비료를 매점매석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p> <p>⑤ 비료의 생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마다 농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비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마다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p> <p>⑥ 비료단속법을 폐지함.</p> <p>개정 '81. 4. 13 법 3441호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에의한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비료중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료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서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당해 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비료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p> <p>개정 '82. 12. 31 법 3598호</p> <p>① 비료판매업의 등록제를 간소화하고 벌칙규정을 조정하며 행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비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려는 것임.</p>	

건 명	내 용	비 고
	<p>전문개정 '95. 12. 6 법 5019호</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전문개정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의 등록취소 및 비료판매업자의 판매영업소에 대한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함.</p> <p>동법 시행령</p> <p>제정 '77. 5. 14 령 8569호</p> <p>개정 '81. 6. 29 령 10388호 '83. 9. 13 령 11231호</p> <p>전문개정 '96. 12. 5 령 15177호 '97. 12. 31 령 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 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8. 8. 1 령 15853호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p> <p>제정 '77. 6. 23 부령 689호</p> <p>개정 '78. 1. 17 부령 706호 '78. 8. 21 부령 736호 '81. 2. 28 부령 817호 '81. 8. 20 부령 836호 '83. 12. 21 부령 902호 '85. 7. 5 부령 904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국립농업자재검사 소검사의뢰규칙 부령 676호 (1977. 3. 9)</p>	<p>'86. 10. 23 부령 962호 전문개정 '96. 12. 27 부령 1245호 개정 '98. 8. 1 부령 1288호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p> <p>이 규칙은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서 위탁 받은 농업자재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81. 11. 21 부령 845호 '84. 11. 22 부령 920호</p>	<p>폐 지</p>
<p>잠업진흥심의회규정 령 8572호 (1977. 5. 19)</p>	<p>개정 '78. 11. 27 령 9209호</p>	<p>폐 지</p>
<p>생사류검사규칙 부령 714호 (1978. 3. 31)</p>	<p>이 규칙은 잠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의 생사 및 옥사와 농수산부장관이 필요하 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견직용의 생사, 옥사 및 견연사 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국립생사검사소가 의뢰를 받아 행하는 검사분석 및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80. 8. 4 부령 796호 '82. 6. 26 부령 868호 '84. 6. 21 부령 911호 '95. 9. 19 부령 1215호 '98. 2. 24 부령 1278호</p>	
<p>국립식물검역소 직제 령 8930호 (1978. 4. 12)</p>	<p>개정 '78. 12. 30 령 9271호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79. 2. 23 령 9345호 (농수산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79. 9. 10 령 9614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업기계화촉진법 법 3120호 (1978. 12. 5)</p>	<p>이 법은 농민에게 우량농업기계를 조속히 확대공급하고 개발하여 그 이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영농기계화체제를 확립하여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p> <p>전문개정 '94. 11. 11 법 4788호</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7. 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 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농림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p> <p>개정 '97. 12. 13 법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동법 시행령</p> <p>제정 '79. 11. 17 령 9662호</p> <p>개정 '84. 2. 29 령 11372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전문개정 '95. 5. 12 령 14645호</p> <p>개정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7. 12. 31 령 15598호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 관계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농지개량조합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비송사건절차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p>

건 명	내 용	비 고
<p>누에고치기계검사 규칙 부령 864호 (1982. 5. 25)</p>	<p>동법 시행규칙 제정 '80. 2. 7 부령 784호 개정 '80. 6. 26 부령 792호 '84. 11. 28 부령 921호 전문개정 '95. 5. 12 부령 1187호 개정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이 규칙은 잠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누에고치의 기계검사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에고치의 공정한 거래와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85. 5. 11 부령 932호 전문개정 '96. 1. 25 부령 1221호 개정 '98. 8. 1 부령 1290호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인삼협동조합법 법 4066호 (1988. 12. 30)</p>	<p>인삼경작자의 자주적인 조직을 통하여 경작기술을 지도·보급함으로써 인삼의 증산과 인삼산업의 발전을 기하며, 인삼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p> <p>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를 위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음.</p> <p>②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p> <p>개정 '95. 12. 6 법 5022호 (인삼산업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 관계법령 : 인삼산업법, 민법, 한국담배인삼공사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종자산업법 법 5024호 (1995.12. 6)</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개정 '97. 12. 13 법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령</p> <p>제정 '88. 12. 31 령 12602호</p> <p>개정 '94. 12. 23 령 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 련 조항 정비)</p> <p>'96. 6. 29 령 15087호 (인삼산업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 련 조항 정비)</p> <p>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 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공포당시 주요농작물종자법, 종묘관리법을 부칙으로 폐지함.</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6. 12. 12 법 5170호 정부용자특별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전문개정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 관계법령 : 특허법, 민사소 송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인삼산업법 법 5022호 (1995. 12. 8)</p>	<p>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관리사의 자격취소, 종자업자 또는 종자매매업자 의 종자업 등록취소 및 영업소폐쇄명령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p> <p>동법 시행령 제정 '97. 12. 31 령 15576호 개정 '98. 4. 1 령 15750호 (한국은행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98. 8. 11 령 15864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 제정 '98. 1. 24 부령 1272호</p> <p>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 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994. 12. 31 재정경제원 소관 법률인 인삼사업법 폐지함.</p> <p>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인삼”이라 함은 오가피과 인삼속 식물을, “수삼”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홍삼”이라 함은 수삼을 연기 또는 기타방법으로 찌서 익혀 말린 것을, “태극삼”이라 함은 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을, “백삼”이라 함은 수 삼을 햇볕·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인삼류”라 함은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 된 것 모두를, “인삼제조”라 함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함.</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농 수산물가공산 업육성및품질 관리에 관한 법 률, 형법, 비송 사건절차법, 국 세징수법, 농어 촌구조개선특 별회계법, 인삼 협동조합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환경농업육성법 법 5442호 (1997. 12. 13)</p>	<p>동법 시행령 제정 '96. 6. 29 령 15087호 개정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 련 조항 정비) '97. 12. 31 령 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 제정 '96. 7. 1 부령 1238호 개정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 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 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함.</p> <p>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 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 생산하는 농업을 말하며 “환경농 산물”이라 함은 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하며, “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환경농업 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함.</p> <p>②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농업을 발 전시키기 위하여 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농업기술</p>	

건 명	내 용	비 고
<p>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 료징수규칙 부령 1275호 (1998. 2. 11)</p>	<p>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p> <p>③ 정부는 국제여건, 국내자원, 환경 및 경제여건 등을 고 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환경농업기준 및 목표를 수립하 여야 함.</p> <p>①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에 관한 수수료, 종자보증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함.</p> <p>②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의 납부방식을 규정함.</p> <p>③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품종보호료, 종자검사 수수료, 기타 수수료의 납부기간을 규정함.</p> <p>④ 수수료 또는 품종보호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p> <p>⑤ 농림부장관이 정한 대체절차에 따라 반환금은 납부 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 한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게 하 고 이 경우 다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는 대체신청 이 수리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봄.</p>	
<p>종자산업법 제53조 의규정에 의한 품종 보호등록에 관한규 칙 부령 1296호 (1998. 10. 15)</p>	<p>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원 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6) 농촌·농지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지개혁법 법 31호 (1949. 6. 21)</p>	<p>1. 본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96. 1. 1 시행된 농지법 부칙에 의하여 폐지됨.</p> <p>개정 '50. 3. 10 법 108호</p> <p>① 매수할 부속시설의 평가방법을 시가에 의하여 별도로 사정하도록 규정함.</p> <p>② 빈농가 또는 소지주에게 정상에 의하여 농지가격의 3할 이내의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외함.</p> <p>③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의 금액·방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p> <p>④ 분배농지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상환금의 체납에 한정하고, 당해 농지반환자에 대하여 보상하게 함.</p> <p>⑤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이농하거나 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게 함</p> <p>⑥ 미완성된 개간지·간척지와 동 공포일 후에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는 농지개혁의 대상에서 제외함.</p> <p>개정 '60. 10. 13 법 561호</p> <p>①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의 종류와 그 평가방법을 조정함.</p> <p>②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은 물납 또는 금납제이던 것을 금납제로 함.</p> <p>③ 분배농지상환미완시의 매매등 행위의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함.</p> <p>④ 농지소유권 이전동기의 절차규정을 신설함.</p> <p>⑤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분배</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지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던 것을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함.</p> <p>동법 시행령 제정 '50. 3. 25 령 194호</p> <p>동법 시행규칙 제정 '69. 8. 14 부령 381호 개정 '78. 12. 16 부령 745호 '80. 7. 1 부령 793호</p>	
<p>귀속농지관리특별 회계법 법 93호 (1950. 2. 13)</p>	<p>1952. 4. 12 법률 241호로 제정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부칙 규정에 의해 폐지됨.</p> <p>① 귀속농지와 그 부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 계를 설치하고, 본회계와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일 반회계의 세입에 전입함.</p> <p>② 전 신한공사와 중앙토지행정처의 채무와 채권은 본 회계에서 승계함.</p>	<p>폐 지</p>
<p>귀속농지특별 조치법 법 185호 (1951. 4. 5)</p>	<p>본법은 법률 제31호 농지개혁법을 실시함에 있어서 귀속 농지에 대한 상환방법의 통일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p>	<p>폐 지</p>
<p>문교재단소유농지 특별보상법 법 214호 (1951. 7. 18)</p>	<p>문교재단의 소유농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 제7조제1항의 15할을 30할로 하여 그 보상을 정함.</p> <p>개정 '63. 12. 16 법 1531호</p>	<p>폐 지</p>
<p>임시토지수득세법 법 220호 (1951. 9. 25)</p>	<p>개정 '53. 12. 18 법 301호 '54. 3. 25 법 315호 '54. 4. 14 법 334호 '54. 10. 6 법 348호</p>	<p>폐 지 재무부소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법 241호 (1952. 4. 12)</p>	<p>'55. 10. 31 법 375호 '56. 12. 31 법 416호 '58. 12. 29 법 509호 '59. 12. 29 법 524호 '60. 12. 3 법 564호</p> <p>1961. 12. 31 법 930호 동법 폐지법률에 의해 폐지됨.</p> <p>개정 '58. 1. 2 법 466호 '61. 12. 30 법 930호</p>	<p>폐 지</p>
<p>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령 1360호 (1958. 4. 10)</p>		<p>폐 지</p>
<p>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613호 (1961. 5. 5)</p>	<p>본법은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간략 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63. 5. 2 법 1340호 '64. 12. 31 법 1611호</p>	<p>폐 지</p>
<p>수리조합 합병에 대한 특별조치법 법 701호 (1961. 8. 25)</p>	<p>1. 본법은 수리조합을 적정 규모로 합병하여 조합의 경비 절감과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국가경제재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61. 12. 31 법 948호 토지개량사업법의 제정과 함께 부칙에 의해 폐지됨.</p>	<p>폐 지</p>
<p>토지개량사업법 법 948호 (1961. 12. 30)</p>	<p>1. 본법은 농업경제의 합리화와 사업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 농지를 개량 개발보전하여 식량 기타 농산물생산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공유수면매립법 법 986호 (1962. 1. 20)</p>	<p>2. 1970. 1. 12. 법률 제948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제정과 함께 부칙에 의해 폐지됨.</p> <p>① 토지개량사업은 국토자원의 종합적개발과 보전에 이바지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토지이용, 산림 기타 자원의 보전개발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준에 의거 시행되어야 함.</p> <p>개정 '63. 12. 5 법 1467호 '63. 12. 16 법 1586호 '64. 6. 12 법 1646호</p> <p>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p> <p>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건설청장의 면허를 얻어야 함.</p> <p>②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착수와 준공을 주무부·청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하여야 함.</p> <p>개정 '64. 5. 2 법 1633호</p> <p>헌법개정에 따른 권력구조변경에 수반하여 개정함.</p> <p>개정 '66. 8. 3 법 1821호</p> <p>① 농림부장관도 분장하고 있던 공유수면매립의 면허권을 건설부장관에게로 통합함.</p> <p>② 토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한 공사대행규정을 신설함.</p> <p>③ 조성된 매립지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p>	<p>건설부소관</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간촉진법 법 1028호 (1962. 2. 22)</p>	<p>개정 '72. 12. 30 법 2411호</p> <p>① 농경지조성을 위한 매립공사에 있어 건설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행할 공사부분을 명확하게 정함.</p> <p>개정 '86. 12. 31 법 3901호</p> <p>① 10년 단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수면의 매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토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의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영세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p> <p>1. 본법은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업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67. 1. 16 법률 1872호로 제정공포된 농경지조성법 부칙에 의해 폐지됨.</p>	<p>폐 지</p>
<p>토지개량사업장기 채정리특별조치법 법 1291호 (1963. 3. 5)</p>	<p>개정 '63. 8. 14 법 1392호 '63. 11. 16 법 1532호</p> <p>1. 이 법은 토지개량사업을 위함에 용자된 장기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오용된 정부보조금을 조속히 회수함으로써 농민부담의 적정을 기하고 토지개량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71. 1. 22 법 2299호 농지개량조합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시 부칙에 의해 폐지됨.</p> <p>개정 '63. 9. 24 법 1407호 '63. 12. 16 법 1557호</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방조제관리법 법 1470호 (1963. 12. 5)</p>	<p>이 법은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를 보존하고 농수산물 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를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기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70. 1. 1 법 2179호</p> <p>① 국가가 관리하는 방조제를 제외하고는 관리자의 신청 에 의하여 동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리방조제로 결정하거나 해체한 때에는 고 시하게 하였음.</p> <p>② 이용자의 부담금으로 유지·관리가 곤란한 때에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족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음.</p> <p>전문개정 '89. 12. 30 법 4189호</p> <p>①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방조제의 목적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 익자가 있을 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익자로 하여금 당해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게 함.</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령 제정 '70. 7. 28 령 5228호 개정 '85. 8. 12 령 11736호</p>	<p>•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농어촌정비법</p> <p>• 제정의의 : - 간척지보전 - 방조제국가 관리</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지세징수에대한 임시조치법 법 1662호 (1964. 10. 29)</p> <p>농지담보법 법 1813호 (1966. 8. 3)</p>	<p>개정 '86. 4. 16 령 11890호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전문개정 '90. 7. 6 령 13043호</p> <p>개정 '94. 12. 23 령 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8. 8. 1 령 15835호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p> <p>제정 '69. 8. 14 부령 384호</p> <p>전문개정 '90. 12. 27 부령 1058호</p> <p>개정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이 법은 양곡수확기에 있어서 양곡의 과잉출하로 인한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고 정부관리 양곡의 적기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류 농지세를 현곡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임시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1. 이 법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하여 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1993. 6. 1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5차 개정 법률 제 4552호 중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p>	<p>폐 지</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경지조성법 법 1872호 (1967. 1. 16)</p>	<p>개정 '75. 12. 31 법 2839호</p> <p>① 농지저당권자가 인수한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에 녹고 자로부터 환매요청이 있거나 2차공매에서 낙찰자가 없 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함.</p> <p>동법시행령 제정 '69. 12. 5 령 4413호 개정 '76. 3. 19 령 8029호 '82. 9. 15 령 10909호</p> <p>1. 이 법은 농업생산력을 증강하여 식량의 증산을 기함과 아울러 안정농가를 육성하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간지를 농경지로 조성함을 목적 으로 함.</p> <p>2. 1975. 4. 11 법률 2767호로 제정 공포된 농지확대개발촉 진법 부칙에 의하여 폐지됨.</p> <p>(폐지법령) 개간촉진법은 부칙에 의해 이를 폐지한다.</p>	<p>폐 지</p>
<p>농어촌지붕개량 촉진법 법 1891호 (1967. 2. 28)</p>	<p>이 법은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의 초개 지붕을 기와, 스투트 또는 함석 등으로 개량하여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72. 12. 26 법 2385호</p>	<p>폐 지</p>
<p>농지개혁사업정리 에관한특별조치법 법 1993호 (1968. 3. 13)</p>	<p>1. 이 법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 사무를 조속히 종 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96. 1. 1 시행한 농지법 부칙에 의하여 폐지됨.</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촌근대화촉진법 법 2199호 (1970. 1. 12)</p>	<p>개정 '94. 12. 22 법 4896호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 법 률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개정 '94. 12. 22 법 4817호 (농지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시행령 제정 '70. 7. 9 령 5172호</p> <p>1. 농지의 개량, 개발, 보전 및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 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95. 12. 29. 법 5099호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과 동시 에 부칙에 의해 1996. 6. 30 폐지됨.</p> <p>개정 '71. 1. 22 법 2298호</p> <p>① 농지개량사업시행 전에도 조합구역에 편입하게 됨. ② 조합사업으로 관개·배수시설을 할 수 있게 함. ③ 공사에 농지개량사업용기계기구도 현물출자할 수 있게 함. ④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관한 절차를 조정함. ⑤ 조합은 공사의 토지매수등의 사업에 협조하게 하였음. ⑥ 물리자 총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p> <p>개정 '73. 2. 6 법 2486호</p> <p>① 임원의 임명절차를 변경함. ② 임원의 임기를 단축함.</p> <p>개정 '75. 4. 4 법 2753호</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① 부과금의 독촉채납처분과 과오납의 처리를 하는 조합 임직원의 행위는 지방세무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도 록 함.</p> <p>② 농지개량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둠.</p> <p>③ 농지확대개발기술단에 관한 규정을 둠.</p> <p>④ 매립지로서 국가가 따로 관리·처분하여야 할 것은 분배 계획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함.</p> <p>⑤ 환지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함.</p> <p>⑥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환지사업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환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p> <p>⑦ 종전의 토지및환지의평정가격등급결정에관한규정을 둠.</p> <p>⑧ 농지개량시설의 동기·관리·목적외관리에관한규정을 둠.</p> <p>개정 '77. 12. 31 법 3062호</p> <p>①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관장업무를 규정함.</p> <p>② 농지개량사업시행의 간소화를 위한 유사 또는 중복조 항을 통폐합 함.</p> <p>③ 타법에 의한 인·허가는 인·허가관청과 농수산부장관 · 간의 사전협의로써 같음하도록 하되 착공전에 신고하 도록 함.</p> <p>④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물건의 관리·처 분에 관하여 규정함.</p> <p>개정 '78. 12. 5 법 3120호</p> <p>이 법 부칙 제2항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함.</p> <p>동법시행령 제정 '70. 1. 31 령 4558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지개량조합임원 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418호 (1970. 3. 6)</p>	<p>개정 '71. 8. 5 령 5739호 '73. 4. 13 령 6632호 '75. 12. 10 령 7885호 '78. 4. 12 령 8937호</p> <p>동법시행규칙 제정 '72. 3. 14 령 479호 개정 '75. 12. 18 부령 614호 '77. 12. 6 부령 702호 '78. 6. 1 부령 722호 '81. 3. 2 부령 818호 '83. 1. 21 부령 879호 '83. 2. 15 부령 883호 '86. 6. 23 부령 959호</p> <p>“참고” 법부칙 제2조[폐지법률] 토지개량사업법과 지하수개발공사법<sup>1)</sup>은 부칙 제11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공사의 설립동기를 완료한 날에 폐지함.</p> <p>이 규칙은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임원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 여 임원임용에 적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71. 1. 6 부령 441호 '72. 3. 30 부령 483호 '72. 6. 30 부령 486호 '72. 7. 26 부령 489호 '72. 11. 27 부령 513호 '73. 4. 13 부령 528호 '75. 4. 28 부령 590호 '77. 4. 18 부령 681호</p>	<p>1) 법2080호 (1969. 1. 17)</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농지대가상환 체납금징수규정 령 4761호 (1970. 3. 19)	'78. 4. 21 부령 718호 '80. 11. 10 부령 802호 '81. 6. 2 부령 829호 '83. 1. 27 부령 881호 '85. 12. 30 부령 948호 '87. 4. 2 부령 968호	폐 지
농지위원회규정 령 5133호 (1970. 6. 25)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서울특별시, 도, 시군읍면 및 동리에 설치되는 농지위원회는 법 제5조제2호,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직무이외에 농지개혁사무의 신속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함.	폐 지
농촌근대화사업 보조금교부규정 령 5321호 (1970. 8. 31)	이 령은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개정 '73. 9. 5 령 6841호 '76. 1. 21 령 7958호 '76. 6. 11 령 8155호 '78. 12. 30 령 9253호  동법시행령 규칙 제정 '70. 11. 13 부령 434호 개정 '81. 2. 25 부령 816호 '83. 11. 30 부령 901호	폐 지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299호 (1971. 1. 22)</p>	<p>1. 조합비의 불균형 내지 불합리한 부과를 시정하고 부당한 과중부담을 조속히 해소시켜 줌으로써 조합운영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조합원의 올바른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소득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p> <p>2. 1995. 12. 29 법 5099호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과 함께 부칙에 의해 1996. 6. 30 폐지되도록 함.</p> <p>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된 장기채의 범위는 정리 대상자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지구중 1970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었거나 9할이상의 공정에 달한 지구로서 1970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채로 함.</p> <p>② 농림부장관은 유지비의 확보가 곤란하고 영속적으로 세입결함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해산을 명할 수 있음.</p> <p>③ 장기채의 정리는 정리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사정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함.</p> <p>개정 '82. 12. 31 법 3649호</p> <p>이 법은 1971년 1월 1일 이후 신규사업지구 발생과 제반여건의 변동등을 감안하여 장기채의 감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p> <p>① 198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개량사업이 완료되었거나 9할이상 공정에 달한 경우 장기채를 감면하되, 감면금액은 1천㎡당 장기채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1981년도 2등급 벼 20kg의 정부미 수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함.</p> <p>② 1981년 12월 31일 현재 9할이상의 공정에 달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사업에 착수할 농지개량사업지구</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대하여는 1천㎡당 장기채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당해원리금 상환년도의 2등급 벼 20kg의 정부미 수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상환을 년차적으로 순연하도록 함.</p> <p>개정 '85. 12. 31 법 3805호</p> <p>농지개량사업시행에 있어서 농업용수사업중 저수지의 경우에는 장기채에 의한 농민부담이 30%나 되기 때문에 매년 신규로 착공된 지역은 장기채에 의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격차가 큰 조합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농지개량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하기 위해 장기채를 감면하거나 년차적으로 순연토록 하려는 것임.</p> <p>① 종전에는 농지개량사업지구중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9할이상의 공정에 달한 지구로서 1천㎡(약 300평) 당 연간 장기채의 부담액이 1981년도 정부미 2등급 벼 20kg의 수매가격(9,4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감면기준시점을 1985년 12월 31일로, 감면 기준금액을 1985년도 정부미 2등급 벼 15kg의 수매가격(8,181원)으로 조정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p> <p>② 종전에는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9할이상의 공정에 달하지 못한 농지개량 사업지구로서 1천㎡(약 300평) 당 연간 장기채의 부담액이 당해 연도의 정부미 2등급 벼 20kg의 수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상환금을 년차적으로 순연하도록 하던 것을 순연기준시점을 1985년 12월 31일로, 순연기준금액을 순연하는 당해 연도의 정부미 2등급 벼 15kg의 수매가격으로 조정하고, 정부는 순연된 장기채의 자금관리특별회계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지의보전및이용 에관한법 법 2373호 (1972. 12. 18)</p>	<p>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 적정조합비를 초과하여 부과할 경우, 그리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토록 함.</p> <p>개정 '87. 12. 4 법 3972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시행령 제정 '83. 5. 30 령 11136호 개정 '86. 6. 10 법 11918호</p> <p>동법시행규칙 제정 '83. 7. 15 신령 893호 개정 '86. 4. 10 농수산부령 956호</p> <p>1. 농촌의 도시화와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에 따르는 농지의 잠식과 도시주변동에 있는 농지의 유희지로 말미암아 농업중산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여 앞으로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기여하기 위한 것임.</p> <p>2. 1996. 1. 1 시행된 농지법 부칙에 의하여 폐지됨.</p> <p>① 도시계획구역등의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등의 허가를 받도록 함.</p> <p>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신설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등의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동의나 승인을 얻도록 함.</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③ 도시계획구역등의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p> <p>④ 농지전용의 허가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3월안에 당해 농지를 전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계표시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세우도록 함.</p> <p>⑤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p> <p>⑥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에 의하여 시행된 농지개발사업의 물리지인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투자비용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함.</p> <p>전문개정 '75. 12. 31 법 2837호</p> <p>식량의 안보적 차원과 지속적인 식량자급을 통한 국민식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인 농지의 보전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배제지역이 광범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보다 강력히 농지의 전용을 억제함과 아울러 농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p>① 절대농지의 지정·고시를 법정화함.</p> <p>② 도시계획 및 공업단지등의 결정 또는 지정시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p> <p>③ 일정면적이상의 절대농지를 전용허가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p> <p>④ 절대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상당의 농지를 조성하거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지사에게 납부하도록 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p> <p>⑥ 대리경작에 있어서 토지사용료를 당해 연도 수확량의 1할로 하고 그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작물생육기간중에 대리경작을 해지할 때에는 작물수확불능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p> <p>⑦ 농수산부장관의 협의·승인 또는 허가 없이는 답 및 경사 15%이하의 전에는 다년생식물·목초 및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대집행도 할 수 있도록 함.</p> <p>개정 '77. 12. 31 법 3015호</p> <p>①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을 폐지하여 공업단지관리법으로 흡수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p> <p>개정 '78. 12. 5 법 3117호</p> <p>① 현행법의 시행(1976. 1. 31) 이전에 이미 식재된 관상수원을 3년 이내에 농경지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칙규정과 이에 따른 등록·별칙규정을 삭제하여 관상수재배농가를 보호하고 관상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함.</p> <p>개정 '80. 1. 4 법 3238호</p> <p>① 초지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개관조문을 정비함.</p> <p>개정 '81. 3. 7 법 3381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지의 절대면적확보가 어느 때 보다도 긴요한 실정에 처하여 불요불급한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입지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여 전용되는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자가 납입하는 농지조성비용을 재원으로 농지기금을 신설하여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운용·관리하게 하고 대체농지조성사업을 담당시킴으로써 농지의 절대면적 확보와 식량의 자급도를 제고하려는 것임.</p> <p>① 농지기금제도를 신설하여 기금관리자인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이를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자체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하고, 대체농지를 조성하게 함.</p> <p>② 농지조성비용의 부담범위를 상대농지전용에까지 확대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상대농지의 전용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하도록 함.</p> <p>③ 농가주택 및 부속시설을 위한 임의전용의 상한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p> <p>개정 '82. 12. 31 법 3642호</p> <p>①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86. 12. 31 법 3910호</p> <p>① 관광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동법시행령            제정 '76. 4. 21 령 809호            개정 '82. 9. 18 령 10916호                  '82. 12. 11 령 10955호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에 의한 관련조항 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지확대개발 촉진법 법 2767호 (1975. 4. 11)</p>	<p>'83. 5. 30 경 11137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 비)</p> <p>동법시행규칙 제정 '76. 9. 2 부령 636호 개정 '83. 3. 28 부령 886호</p> <p>1. 이 법은 농지를 확대개발함으로써 농작물의 증산을 기 함과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의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간지의 개발을 촉진함으로 목적으로 함.</p> <p>2. 1994. 12. 22 법률 4823호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 부칙 에 의하여 폐지됨.</p> <p>농경지조성법으로는 미간지의 효율적인 개발이 곤란하여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미간지를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하고 개발을 의무화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농지 의 확대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증산과 농 가소득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p> <p>① 미간지중 농지로 개발가능한 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p> <p>② 미간지소유자의 개발의무를 규정하고 개발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개발하거나 국가 또는 국가 가 지정하는 자의 매수개발제도를 창설하여 유휴지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함.</p> <p>③ 농수산부에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개발위원회 를 설치하여 개발촉진지역 지정시에 관계부처의 사전협 의를 거치도록 하고, 개간허가를 받으면 타 법령에 의한 각종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함.</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④ 개발비 및 영농비의 지원과 영농지도의 강화 및 불성실한 경작에는 대리경작을 명령하고 개발농지의 타목적 전용과 용도 변경을 억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p> <p>⑤ 사유미간지의 매수개발시 지상물의 수거에 따른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되, 소유자의 임의로 지상물을 수거하는 때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p> <p>⑥ 농경지조성법을 폐지함.</p> <p>개정 '75. 12. 31 법 2838호</p> <p>① 개발대상지역의 조사결과 단지화개발이 부적당한 10헥타미만의 미간지중 개발적지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개발의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함.</p> <p>개정 '80. 1. 4 법 3243호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공원법에서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도시공원법으로,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공원법으로 규정하면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중 관련된 규정을 개정한 것임.</p> <p>개정 '81. 3. 20 법 3393호</p> <p>농지의 확대개발로 농산물의 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간지의 개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대상지역을 넓히며 개간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p> <p>① 개발대상임야의 범위를 넓혀 산림법의 규정과 일치되도록 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업종합개발사업 조정위원회규정 령 7776호 (1975. 8. 30)</p>	<p>② 일정면적이하 농지의 개발기본계획의 결정·고시와 그 변경은 직접 농수산부장관이 진행하도록 함.</p> <p>③ 국가에 무상으로 소속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함.</p> <p>④ 일정면적이하의 개발농지의 농업외의 전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직접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만으로 전용이 가능케 하고, 개발후 10년이 경과된 개발농지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함.</p> <p>개정 '81. 12. 31 법 3539호 (초지법 개정에 의해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시행령</p> <p>제정 '75. 7. 22 령 7699호</p> <p>개정 '76. 4. 21 령 8093호</p> <p>'78. 11. 27 령 9209호</p> <p>'80. 12. 26 령 10114호</p> <p>'82. 4. 14 령 10793호</p> <p>'84. 10. 19 령 11528호</p> <p>동법시행규칙</p> <p>제정 '75. 9. 13 부령 607호</p> <p>개정 '77. 5. 24 부령 684호</p> <p>'77. 12. 8 부령 703호</p> <p>'79. 5. 8 부령 761호</p> <p>'83. 3. 3 부령 885호</p> <p>개정 '78. 11. 27 령 9209호</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농지개량계관리 규칙 부령 656호 (1976. 12. 16)	이 규칙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2 및 제6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설치,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폐 지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 법 3689호 (1983. 12. 3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소득을 증대하고              농어촌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li> <li>2. 1990. 4. 7 법률 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              과 함께 동법부칙 제2조로 폐지됨.</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지역을 군지역중 농업·임업 또              는 수산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지역으로 하되, 시지역              도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li> <li>② 경제기획원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소관별 농어촌소득원개발방침을 종합 조정하여 농어              촌소득원개발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당해 기본방침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장·군수는 기본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li> <li>③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내에 공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지역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함)              를 지정할수 있게 하고, 농공지구에 입주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              록 함.</li> <li>④ 시장·군수는 농공지구에 표준임대공장을 건설하여 이              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li> <li>⑤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              는 자에게는 기술 및 경영지도·자금의 지원·조세의              감면 등을 하도록 함.</li> <li>⑥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내의 부존자원과 유희노동력              을 활용하기 위하여 부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li> </ol>	폐 지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어촌지역개발 기금법 법 3884호 (1986. 12. 31)</p>	<p>부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의 지원·조세의 감면을 하도록 함.</p> <p>⑦ 농어촌소득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도에 도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시·군에 시·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함.</p> <p>동법시행령 제정 '84. 5. 14 령 11423호</p> <p>1. 농어촌지역사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어촌의 공업육성, 농어촌의 편익시설 및 복지기반의 확충과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기금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임.</p> <p>2. 1990. 4. 7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p> <p>①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수입부과금 및 자금관리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농어촌지역개발채권의 발행등으로 조성함.</p> <p>② 수입부과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과 그 혼합조제품의 수입액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과징수대상품목 및 부과징수율등은 국내외 농산물등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p> <p>③ 기금은 농어촌의 공업육성, 농어촌의 편익시설 및 복지기반의 확충과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등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지임대차관리법 법 3888호 (1986. 12. 31)</p>	<p>④ 기금의 운용·관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행하고,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운용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함.</p> <p>개정 '87. 12. 4 법 3982호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시행령 제정 '87. 5. 30 령 12170호</p> <p>동법시행규칙 제정 '87. 6. 19 부령 978호</p> <p>1. 이 법은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임대차등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임대차계약당 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농가생활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94. 12. 22 법률 4817호로 제정공포하고, 1996. 1. 1 시행된 농지법 부칙에 의하여 폐지됨.</p> <p>임차농지가 전농지면적에 비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1950년 농지개혁 당시에는 8%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말 현재에는 30.5%로서 그간 매년 증가되어 온 추세이고, 총임차료도 5,095억원에 달하여 그것이 농촌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농지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됨으로 동 개선책의 일환으로서 농지임대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헌법에 따라 농지임대차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입법화하여 농지임대차당사자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차농가의 과도한 임차료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농업생산성을 높 이려는 것임.</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어촌정비법 법 4823호 (1994. 12. 22)</p>	<p>① 이 법의 적용대상인 농지를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 함.</p> <p>②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정임차료의 8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시·구·읍 또는 면의 장에게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함.</p> <p>③ 임대차기간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하여 3년이상으로 하되, 다년생농작물·연작기피성농작물등 특수한 농작물의 경우와 계약당사자에게 징집·질병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p> <p>④ 임차료는 농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지의 생산성, 농작물의 수익성 및 지역실정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상한을 지역별·농작물별·농지등급별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p> <p>⑤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유 시·읍·면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경우, 통작거리·영농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위탁경영과 타인을 고용한 영농을 허용함.</p> <p>⑥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읍 또는 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p> <p>1. 이 법은 농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p>	<p>• 관계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수산업법, 수질환경보전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2. 1994. 12. 22 법률제정 시행으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관개·배수시설등 논위주의 사업 외에 농업주산단지조성사업 및 영농시설확충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흡수·보강하였으며, 환지·교환·분합에 관한 사항도 흡수하여, 수산업생산기반정비, 농어촌생활환경정비, 한계농지정비 등 농어촌공간 종합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p> <p>개정 '95. 12. 29 법 5109호 한국토지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7. 1. 13 법 5279호</p> <p>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환지계획의 수립 및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변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p> <p>② 수혜자총회를 통한 대의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p> <p>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p> <p>④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준공검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함.</p> <p>전문개정 '97. 1. 13 법 5279호</p> <p>① 농어촌정비사업종합계획 및 기타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어촌발전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p>	<p>국토이용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세징수법, 오지개발촉진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지방양여금법, 산림법, 수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하천법, 도로법, 지방세법, 지적법, 환경영향평가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97. 12. 13 법 5453호</p> <p>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취소,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p> <p>개정 '97. 12. 13 법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령</p> <p>제정 '95. 6. 23 령 14679호</p> <p>개정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7. 7. 31 령 15448호</p> <p>'97. 9. 30 령 1548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7. 12. 31 령 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8. 8. 1 령 15853호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p> <p>제정 '95. 8. 12 부령 1207호</p> <p>개정 '96. 5. 23 부령 1236호</p> <p>'97. 10. 6 부령 1261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지법 법 4817호 (1995. 12. 22)</p>	<p>1.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94년, 12. 22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며,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력증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됨.</p> <p>개정 '95. 12. 29 법 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함.</p> <p>②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함.</p> <p>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함.</p> <p>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경우 당</p>	<p>• 관계법령 : 헌법, 농업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등기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해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함.</p> <p>⑤ 대리경작자의 임차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토지사용료로 지급 및 공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함.</p> <p>⑥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그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p> <p>⑦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함.</p> <p>⑧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전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함.</p> <p>⑨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규정함.</p> <p>⑩ 농림부장관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함.</p> <p>개정 '97. 1. 13 법 5279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음.</p> <p>개정 '97. 8. 22 법 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해 경락인이 없을 경우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함.</p> <p>개정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①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p> <p>개정 '97. 12. 13 법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확정·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②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p> <p>개정 '98. 9. 16 법 5555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령 제정 '95. 12. 22 령 14835호 개정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96. 12. 31 령 15229호 '97. 9. 11 령 15480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 제정 '95. 12. 29 부령 1217호 개정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지개량조합법 법 5077호 (1995. 12. 29)</p>	<p>'96. 12. 31 부령 1247호 '98. 6. 25 부령 1285호</p> <p>1. 농민의 자주적인 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이용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농민의 경제적 자립과 이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17. 7 조선수리조합령 제정으로 수리조합조례가 폐지되고 1961. 12. 31 토지개량사업법 제정으로 조선수리조합령이 폐지되었으며,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으로 토지개량사업법 폐지하고, 토지개량조합을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하여 1995. 12. 29 농지개량조합법 제정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함.</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조합의 인가신청 요건 및 조합의 설립 시 조합원의 자격요건 및 수에 관한 조항을 규정함. ② 조합의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작성에 관한 조항과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항을 규정함. ③ 조합의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함. ④ 조합의 회계,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함. ⑤ 조합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하고자 할 경우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p>	<p>•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근로기준법, 국세징수법, 예산회계법, 민법</p> <p>• 제정의의 : - 농지개량조합설립근거 -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설치</p>

건 명	내 용	비 고
	<p>⑥ 조합이 다른 조합을 흡수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의 인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함.</p> <p>⑦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함.</p> <p>⑧ 농림부장관은 조합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p> <p>개정 '96. 12. 12 법 5170호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농림부장관은 조합의 합병·분할·해산명령 및 선거 또는 당선취소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p> <p>동법 시행령 제정 '96. 6. 29 령 15089호 개정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 제정 '96. 6. 29 부령 1237호 개정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97. 9. 5 부령 1260호</p>	

## 7) 식량정책

건 명	내 용	비 고
<p>양곡매입법 법 7호 (1948. 10. 9)</p>	<p>1. 본법은 국민의 균등한 식생활의 보장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하는 주요양곡매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법에서 주요양곡이라 함은 미곡, 맥류를 말함. 양곡의 생산자와 지주는 자가용 식량 및 양곡을 제외한 양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단, 자가용 식량을 위한 소량의 운반과 매매는 차한에 부재함</p> <p>2. 1950. 2. 16. 법률 제97호로 양곡관리법 제정과 함께부칙에 의하여 폐지됨.</p> <p>동법시행령 제정 '48. 10. 15 령 12호 개정 '49. 1. 령 54호</p>	<p>폐 지</p>
<p>식량임시긴급 조치법 법 35호 (1949. 7. 22)</p>	<p>1. 본법은 단기 4282년(1949년) 미곡년도의 긴급한 식량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기 4281년 10월 9일 부법률 제7호 양곡매입법 및 동년 10월 15일부 대통령령 제12호 양곡매입법의 시행령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단기 4281년 미곡 및 단기 4282년산 맥류의 매매 및 소비에 관하여 임시긴급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곡매입법 제3조는 단기 4282년 10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양곡의 매입과 운반을 자유로 함.</p> <p>2. 1950. 2. 16. 법률 제97호로 양곡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부칙에 의하여 폐지됨.</p> <p>개정 '49. 11. 17 법 66호</p>	<p>폐 지</p>
<p>농산물검사법 법 49호 (1949. 8. 13)</p>	<p>농산물의 품종·품질·건조·조제·과균·산별·색택·용적·용량·중량 및 포장 등에 대하여 검사를 행하여 합격한 것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매·반출 또는 수출할 수 있도록 함.</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58. 3. 11 법 478호</p> <p>농산물검사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p> <p>개정 '62. 12. 24 법 1228호</p> <p>① 농산물에 대한 국가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의 향상과 개선을 촉구하여 공정한 거래와 소비의 합리화를 기하고 농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p> <p>개정 '67. 4. 14 법 1956호</p> <p>① 농산물의 정의를 유별로 규정함.  ② 주요농작물의 종자의 검사나 재검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검사료를 면제하게 함.  ③ 벌칙을 강화함.</p> <p>개정 '73. 2. 26 법 2556호</p> <p>① 검사대상인 농산물의 세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② 미검품 및 불합격품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함.  ③ 경우에 따라 검사업무를 농업단체에 위촉할 수 있게 함.  ④ 유해농산물의 이동금지·반송회수를 명할 수 있게 함.</p> <p>개정 '83. 12. 29 법 3667호</p> <p>① 이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현실적인 벌칙규정을 삭제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 <p>개정 '97. 12. 12 법 5453호</p>	<p>• 관계법령 :  주요농작물 검사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검사규칙, 농산물검사료규칙, 농산물검사공무원자격전형규칙, 국립농산물검사소검정의뢰규칙,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규칙</p>

건 명	내 용	비 고
	<p>①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산물로서 그에 대한 검사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상품견본으로서 해외에 발송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으로 검사면제신청에 갈음할 수 있음.</p> <p>② 검사소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개정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령</p> <p>제정 '73. 11. 30 령 6945호</p> <p>개정 '75. 11. 19 대통령령 7876호</p> <p>'76. 5. 31 대통령령 8141호</p> <p>'78. 8. 28 대통령령 9148호</p> <p>'81. 11. 7 대통령령 10627호</p> <p>'82. 3. 10 대통령령 10751호</p> <p>'83. 6. 30 대통령령 12190호</p> <p>'90. 6. 2 령 13014호</p> <p>'95. 6. 30 령 14687호</p> <p>'96. 6. 29 령 15087호 (인삼산업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p> <p>제정 '76. 10. 30 부령 647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양곡관리법 법 97호 (1950. 2. 16)</p>	<p>개정 '81. 2. 13 부령 813호 '84. 10. 15 부령 916호 '87. 7. 3 부령 980호 '90. 10. 11 부령 1054호</p> <p>1. 이 법은 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양곡의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50. 2. 16 제정 시 양곡매입법, 식량임시긴급조치법 이 폐지되었으며 1951. 6. 2 양곡수급계획 및 매매계획에 국회동의제를 신설하고 1963. 12. 16 양곡예매제도와 교환제도 신설하였으며 1972. 12. 18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과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국회동의제 폐지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으로 최종안을 결정케함. 1988. 8. 5 정부매입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국회동의제가 부활되어 1994. 1. 5 민간유통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추진을 위하여 농협차액지급 수매 및 수매예시제 실시 근거를 신설함.</p> <p>3. 1997. 1. 13 약정수매제 제도도입 근거 마련</p> <p>(폐지제정) '50. 2. 16 법 97호 양곡을 관리비축하고 그 수요와 가격을 조절하며 배급 및 소비를 통제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p> <p>개정 '51. 6. 2 법 206호</p> <p>① 정부는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양곡을 비축하며 비축된 양곡은 농림개발의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p>• 관계법령 : 기업예산회계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관세법, 주세법, 식품위생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52. 3. 21 법 235호</p> <p>① 종래 양곡을 수입·수출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입된 양곡은 정부에 매도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국제시장가격보다 국내가격이 훨씬 비싼 점을 감안하여 민간무역상인으로 하여금 수입을 허용·장려할 수 있도록 수입제한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수입된 양곡을 자유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p>개정 '54. 10. 16 법 349호</p> <p>양곡조절상 필요한 정부의 양곡판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p> <p>전문개정 '63. 8. 7 법 1386호</p> <p>① 현행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양곡예매제도와 교환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p> <p>개정 '63. 12. 16 법 1589호</p> <p>헌법개정에 따른 권력구조변경에 수반하여 개정함.</p> <p>개정 '70. 8. 4 법 2213호</p> <p>① 경제안정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곡가의 연중 평균화로 국민의 식생활 안정을 기하고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공금지 및 혼·분식이행을 통한 미곡소비절약을 가함으로써 양곡의 수급 원활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72. 12. 18 법 2374호</p> <p>① 정부양곡수급계획과 그 매입 및 판매가격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비능률적인 까닭에 이를 시정하는 한편, 양곡수급조절과 가격안정정책의 수행에 있어 양곡상의 영세성과 과다한 소매상이 무질서하게 곳곳에 산재하기 때문에 곡가의 형성을 자유시장에 일임하는 경우 소매상 당 취급물량이 너무도 적은 탓으로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의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양곡상을 허가제로 하여 그 규제를 강화하고 곡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처하여 가격조작, 부정거래와 매점매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미곡 자급화와 의미 도입감소를 목표로 양곡소비절약을 위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식생활 개선을 기하는 등 제반조치를 다각도로 강구하여 양곡수급조절 및 곡가안정정책의 원활을 기하며, 기타 현행법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 <p>개정 '76. 12. 31 법 2984호</p> <p>① 양곡중산과 소비절약을 통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하고 효과적인 곡가조절 및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국민의 식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p> <p>개정 '80. 1. 4 법 3237호</p> <p>① 정부관리양곡의 수급안전과 양곡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 <p>개정 '80. 12. 31 법 3321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① 양곡가공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가 공업(제분업)에 대하여는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어 민원의 간소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p> <p>전문개정 '94. 1. 5 법 4707호</p> <p>개정 '94. 12. 31 법 4842호</p> <p>① 농림부장관은 관련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천을 받 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수입이 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함.</p> <p>전문개정 '94. 12. 31 법 4842호</p> <p>① 농림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곡을 수입하 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관 련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나 수입된 당해 양곡 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명할 수 있게 함.</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7. 1. 13 법 5280호</p> <p>① 농림부장관은 생산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매입약 정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하며, 양곡매입</p>	

건 명	내 용	비 고
	<p>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곡가 안정을 위해 농림부장관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농업 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 매입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등을 할 수 있게 함.</p> <p>전문개정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시·도지사는 양곡가공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p> <p>동법 시행령</p> <p>제정 '69. 12. 26 령 4483호 개정 '70. 9. 18 대통령령 5333호 '73. 2. 14 대통령령 6500호 '74. 11. 8 대통령령 7390호 '76. 9. 16 대통령령 8244호 '77. 4. 22 대통령령 8545호 '78. 9. 5 대통령령 9155호 '80. 5. 10 대통령령 9860호 '81. 2. 28 대통령령 10210호 '82. 4. 7 대통령령 10788호</p> <p>전문개정 '94. 4. 30 대통령령 14224호 개정 '94. 12. 23 령 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94. 12. 23 령 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양곡관리특별 회계법 법 140호 (1950. 5. 8)	<p>'94. 12. 31      령 14489호</p> <p>'95. 12. 30      령 14886호</p> <p>'96. 8. 8        령 15135호</p> <p>(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7. 2. 1         령 15266호</p> <p>'97. 12. 31      령 15598호</p> <p>(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 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p> <p>제정   '77. 7. 29 부령 694호</p> <p>개정   '81. 6. 19 부령 832호</p> <p>       '81. 8. 6 부령 913호</p> <p>전문개정 '94. 4. 30   령 14224호</p> <p>개정   '94. 12. 23 부령 14438호</p> <p>(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4. 12. 23 부령 14446호</p> <p>(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4. 12. 31 부령 1165호</p> <p>'95. 12. 30 부령 1220호</p> <p>'96. 12. 28 부령 1246호</p> <p>(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7. 2. 6 부령 1251호</p> <p>1. 1962. 10. 4 법률 제1165호로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비 대의기관에 의하여 기업예산회계법 개정과 함께 부칙 에 의하여 폐지됨.</p>	폐 지

건 명	내 용	비 고
	<p>제 1 조 양곡을 관리하기 위한 일절의 세입세출은 법률 제 97호 양곡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로 한다. 전항의 차입금은 당해연도내의 양곡매입 대금총액의 5할을 초과하지 못함.</p> <p>제 2 조 본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는 본회계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음.</p> <p>제 2 조의2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의 관리를 위한 조작비는 이를 대행기관에 전도할 수 있음.</p> <p>제 3 조 본회계의 결산상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의 세출에 편입함.</p> <p>제 4 조 본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p>제 4 조의2 본회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양곡관리대행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수시 감사할 수 있다. 전항의 감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p>부칙</p> <p>제 5 조 본법은 단기 42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함.</p> <p>제 6 조 단기 4283년 4월 1일 현재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서 소유한 양곡 또는 이에 관련한 상품과 잉여금을 본회계에 이관함.</p> <p>부칙(4286. 12. 3)</p> <p>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p> <p>개정 '53. 12. 3 법 297호 '56. 12. 31 법 426호 '58. 1. 2 법 465호 '62. 10. 4 법 1165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양곡증권법 법 171호 (1950. 12. 7)</p>	<p>1. 이 법은 양곡관리기금법에 의한 양곡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양곡증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양곡증권의 발행과 양곡증권의 상환·관리에 필요한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부채”라 함은 199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양곡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양곡증권의 원리금과 차관양곡의 원리금 중 그 상환잔액을 말하며, “자산”이라 함은 부채와 1993년 10월 31일 현재 종전의 양곡관리기금이 보유한 재고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과 종전의 양곡관리기금의 이월액을 말함.</p> <p>전문개정 '72. 12. 18 법 2375호</p> <p>개정 '75. 12. 31 법 2840호</p> <p>전문개정 '93. 12. 31 법 4691호</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령</p> <p>전문개정 '75. 12. 29 령 7891호</p> <p>'93. 12. 31 령 14057호</p> <p>개정 '86. 4. 8 령 11885호</p> <p>'94. 12. 23 령 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 관계법령 : 양곡관리법, 국채법,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업창고업법 법 906호 (1961. 12. 30)</p>	<p>'98. 4. 1 령 15750호 (한국은행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94. 2. 25 부령 1132호 개정 '76. 1. 27 부령 619호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1. 본법은 농업창고를 널리 농민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며, 농업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동법 부칙 2항에 의하여 1931년 제정된 제령제14호 조선농업창고령은 폐지되었으며, 1996년 8. 14 법률 제 5160호로 폐지됨.</p> <p>동법시행령 제정 '69. 10. 14 대통령령 4131호</p>	<p>폐 지</p>
<p>농가대여양곡법 법 1026호 (1962. 2. 19)</p>	<p>1. 본법은 농가대여양곡제를 실시함으로써 절량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1973. 6. 15 법률 제2621호로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제정과 함께 부칙에 의하여 폐지됨.</p> <p>개정 '63. 3. 12 법 1303호 '63. 12. 16 법 1590호 '64. 12. 3 법 1663호</p>	<p>폐 지</p>
<p>양곡과비료의교환 에관한법 법 1704호 (1965. 7. 1)</p>	<p>1. 이 법은 비료와 양곡을 적정률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비료가격과 미곡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농산물의 증산과 국민식량수급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미강착유장려법 법 1798호 (1966. 7. 15)</p>	<p>2. 1976년 12. 31 법률 제2984호로 양곡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부칙에 의해 폐지됨.</p> <p>개정 '72. 12. 18 법 2376호</p> <p>1. 이 법은 유지자원으로서 필요한 미강을 수집착유하여 식용유 및 공업용유에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농가수익의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97. 3. 7 법률 제5298호로 폐지됨.</p> <p>개정 '79. 4. 17 법 3164호</p> <p>① 미강생산량의 대폭증가로 미강착유업자가 일정기간내에 미강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착유이외의 용도로 공급할 수 있게 함.</p> <p>동법시행령 제정 '71. 12. 15 대통령령 5875호 개정 '76. 1. 28 대통령령 7962호 '80. 11. 26 대통령령 10084호</p> <p>동법시행규칙 전문개정 '72. 5. 23 부령 484호 개정 '76. 11. 6 부령 648호 '79. 6. 16 부령 767호 '81. 4. 6 부령 824호</p>	<p>폐 지</p>
<p>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의 명칭, 위 치와관할구역에 관한규칙 부령 311호 (1969. 3. 7)</p>	<p>개정 '69. 6. 3 부령 321호 '71. 8. 18 부령 460호 '73. 1. 11 부령 518호 '73. 5. 11 부령 534호 '75. 2. 13 부령 585호 '77. 6. 16 부령 688호</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산물검사규격 심의위원회규칙 부령 347호 (1969. 6. 25)</p> <p>국립농산물검사소 검정의뢰규칙 부령 348호 (1969. 6. 25)</p>	<p>'78. 4. 6 부령 716호 '78. 7. 15 부령 730호 '80. 5. 28 부령 787호 '81. 9. 23 부령 842호 '86. 2. 14 부령 952호</p> <p>이 규칙은 농산물검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검사규격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89. 5. 10 부령 1027호</p> <p>① 위원회는 농산물검사규격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농산물검사표준품의 설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p> <p>개정 '71. 2. 1 부령 443호 '73. 5. 11 부령 533호 '77. 10. 7 부령 678호 '77. 2. 19 부령 754호 '79. 12. 31 부령 778호 '82. 10. 5 부령 875호 '84. 9. 12 부령 914호 '90. 7. 31 부령 1047호 '96. 7. 1 부령 1238호 (인삼산업법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동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이 규칙은 국립농산물검사소와 동 시험소·지소 및 출장소에서 의뢰 받아 행하는 농산물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산물검사규격 규칙 부령 354호 (1969. 7. 16)</p>	<p>① 이 규칙에서 검정이라 함은 농산물의 시험·측정 또는 확인을 말함.</p> <p>② 정증명서와 관련 하여 검사소장이 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정증명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함.</p> <p>개정 '82. 6. 15 부령 867호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농산물검사법 관련규정에 의해 농산물검사규격 기준을 정하며, 별도로 주요농작물의 종자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농작물의 종자의 경우와 농산물검사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 주요 농작물종자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정한 성능·규격기준을 준용하게 함. 또한 검사표준품은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게 함.</p> <p>개정 '69. 9. 24 부령 408호 '70. 7. 4 부령 421호 '71. 5. 24 부령 454호 '71. 10. 6 부령 463호 '71. 10. 30 부령 466호 '72. 7. 21 부령 488호 '72. 11. 10 부령 512호 '73. 4. 26 부령 532호 '73. 8. 6 부령 539호 '73. 11. 1 부령 550호 '73. 12. 3 부령 553호 '74. 12. 7 부령 582호 '75. 10. 29 부령 609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비축양곡관리규정 령 4484호 (1969. 12. 26)</p>	<p>'76. 11. 16 부령 652호 '79. 10. 31 부령 775호 '80. 9. 5 부령 798호 '83. 8. 5 부령 894호 '84. 12. 12 부령 924호 '85. 5. 23 부령 933호 '86. 7. 5 부령 960호 '87. 7. 3 부령 981호 '90. 5. 12 부령 1043호 '91. 12. 12 부령 1088호 '95. 7. 24 부령 1202호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 비) '98. 1. 24 부령 1272호 (종자산업법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이 령은 양곡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하는 양곡 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국립농산물 검사소직제 령 5061호 (1970. 6. 17)</p>	<p>개정 '71. 8. 3 대통령령 5737호 '72. 2. 15 대통령령 6028호 '72. 6. 9 대통령령 6218호 '74. 11. 6 대통령령 7344호 '76. 12. 31 대통령령 8385호 '78. 4. 12 대통령령 8929호 '79. 2. 23 대통령령 9345호 '79. 12. 5 대통령령 9684호 '80. 2. 1 대통령령 9748호 '80. 11. 26 대통령령 10086호 '81. 2. 26 대통령령 10205호</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양곡관리기금법 법 2237호 (1970. 8. 12)</p>	<p>'81. 7. 23 대통령령 10422호 '81. 11. 2 대통령령 10538호 '83. 10. 7 대통령령 11238호</p> <p>1. 기획예산회계법에 의한 현행의 양곡관리특별회계는 그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양곡관리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양곡수매자금의 방출에 따른 통화증발요인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양곡관리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p> <p>2. 1994. 1. 5 법률 제4707호로 양곡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부칙에 의하여 폐지됨.</p> <p>① 기금의 운용대상인 양곡은 미곡·맥류·옥수수·콩과 농지세 징수특별조치법 및 양곡과 비료의교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된 조 및 메밀로 하고 기본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설치함.</p> <p>②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관리하고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p> <p>③ 기금의 용도·수입·지출 등에 관하여 정함.</p> <p>④ 양곡관리특별회계로부터 양곡관리기금으로 그 자산이 전부 이관됨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양곡관리기금의 운용관리비 및 기타 양곡행정상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출하도록 함.</p> <p>개정 '81. 3. 20 법 3391호</p> <p>현행 양곡관리특별회계예산상 잉여금은 전액 양곡관리기금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잉여금(현금)은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고 재산취득등 현금 이외의 잉여금은 현금화될 때까지 기업예산회계법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적립하도록 하려는 것임.</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가대여양곡전용 에 관한법 법 2621호 (1973. 6. 15)</p>	<p>① 양곡관리특별회계결산상 잉여금중 세입 세출 결산잉여금(현금)은 세출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기금에 전입하도록 함.</p> <p>② 양곡관리기금법상의 양곡의 정의를 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의 정의와 일치시킴.</p> <p>동법시행령 제정 '70. 10. 27 령 5373호 개정 '76. 3. 22 령 8036호</p> <p>1. 이 법은 농가대여양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시장·군수에게 매도한 양곡의 판매대금중 납부되지 아니한 분에 상당하는 양곡을 경지정리사업의 재원으로 전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73. 6. 15 법률제정 시 농가대여양곡법 폐지됨.</p> <p>① 농가대여양곡의 판매대금중 이 법 시행당시 당해 시장·군수가 양곡관리기금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납부의무가 면제된 분에 상당하는 양곡은 당해 시·군의 경지정리 사업에 전용하여 이 경우에는 그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할 지구·경지면적 및 기간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p> <p>② 농림부장관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가 면제된 금액에 상당하는 양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하게 할 수 있게 함.</p> <p>개정 '76. 12. 31 법 2945호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 관계법령 : 농가대여양곡법, 지방세법</p>

건 명	내 용	비 고
농산물검사공무원 자격전형규칙 부령 617호 (1976. 1. 14)	이 규칙은 농산물검사법시행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검사공무원의 자격부여에 필요한 전형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① 전형은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 이를 실시함. ② 검사소장은 전형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자격구분별로 농산물검사공무원자격을 부여함.	폐 지
농산물검사료규칙 부령 675호 (1977. 2. 18)	이 규칙은 농산물검사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① 농산물의 검사료는 별표와 같이 정하며, 다만, 별표에 정한 중량단위 외의 검사료는 종목의 중량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 농산물검사료현금징수규칙은 폐지함.  개정 '91. 2. 5 부령 1067호	
농촌영양개선 연수원직제 령 9256호 (1978. 12. 30)	개정 '80. 6. 19 대통령령 9917호 '81. 11. 2 대통령령 10549호	폐 지
농산물검사공무원 복제규칙 부령 975호 (1987. 6. 9)	이 규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 및 점검업무에 종사하는 농산물검사공무원의 복제와 그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8) 농산물 유통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산물가격유지법 법 636호 (1961. 6. 27)</p>	<p>본 법은 농업생산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63. 12. 16 법 1591호</p> <p>헌법개정에 따른 권력구조변경에 수반하여 개정함.</p> <p>개정 '94. 1. 5 법 4707호 (양곡관리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시행령 개정 '69. 12. 26 령 4482호 '94. 12. 23 령 14438호</p>	
<p>농수산물가격안정 기금법 법 1815호 (1966. 8. 3)</p>	<p>1. 이 법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농가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76. 12. 31 법률 제2962호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정과 함께 부칙에 의해 폐지됨.</p> <p>개정 '70. 8. 4 법 2214호</p>	<p>폐 지</p>
<p>농어촌개발공사법 법 1960호 (1967. 10. 31)</p>	<p>이 법은 농어촌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업을 개발육성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케 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68. 12. 31 법 2068호 '73. 2. 6 법 2485호 '82. 11. 29 법 9565호</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산물가격심의 위원회규정 령 5132호 (1970. 6. 25)</p>	<p>이 령은 농산물가격유지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 산물가격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 이내로써 구성하고 위원장 은 농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원차관·농림부 차관·상공자원부차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농림 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함.</p> <p>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 원장의 직무를 대행함.</p> <p>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의사는 위원장 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짐.</p> <p>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며 이때 간사와 서 기는 농림부장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명함.</p> <p>개정 '93. 3. 6 령 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 련 조항 정비)</p> <p>개정 '94. 12. 23 령 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 련 조항 정비)</p>	
<p>농수산물도매시장 법 법 2483호 (1973. 2. 6)</p>	<p>1. 이 법은 도시주민에게 식료품으로 공급되는 농산물의 수급을 원활히하고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76. 12. 3 법률 제2962호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 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됨.</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법 2962호 (1976. 12. 31)</p>	<p>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p> <p>제정 당시 이 법의 부칙에 의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폐지함.</p> <p>① 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도록 함.</p> <p>② 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을 수립·고시하도록 함.</p> <p>개정 '78. 12. 5 법 3118호</p> <p>① 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재배계약, 양식계약 및 선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p> <p>②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채소류등 비저장성농산물을 구매하여 판매·수출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p> <p>③ 용자 또는 대하만 인정하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필요한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함.</p> <p>개정 '80. 1. 4 법 3248호</p> <p>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양곡류를 추가함.</p> <p>② 농협·수협 이외의 공익법인도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함.</p> <p>개정 '86. 12. 31 법 3885호</p> <p>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공영도매시장에 맞도록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제도를보완하고, 개설자의 도매시장 관리기능을 보장하여 도매시장</p>	<p>• 관계법령 : 도·소매업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민법, 상법, 형법, 약사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p> <p>개정 '90. 4. 7 법 4228호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1. 12. 31 법 4461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3. 6. 11 법 4554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정품목 생산자와 생산 및 출하계약을 준지정품목 생산자와는 생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함.</li> <li>② 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 설립 및 규정에 관한 사항 및 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li> <li>③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또는 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규격화를 촉진하는 사항을 신설함.</li> <li>④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해 당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li> </ol> <p>개정 '94. 11. 1 법 4785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입 비축용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기할 필요에 따라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함.</li> <li>② 도매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매취상장을 할 수 있게 함.</li> <li>③ 중도매인의 거래, 업무범위와 관련된 특례조항과 수집상 등록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함.</li> <li>④ 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함.</li> <li>⑤ 하역업무, 산지집하장의 공판장운영, 공판장의 거래관계자, 공판장의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li> </ol>	

건 명	내 용	비 고
	<p>⑥ 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농수산물물류센터의 설치, 유통자회사의 설립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함.</p> <p>개정 '94. 12. 31 법 4847호</p> <p>①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p> <p>② 농림부장관은 수입농산물에 대해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함.</p> <p>개정 '96. 12. 12 법 5170호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개설자의 지정 또는 승인취소,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수집상의 등록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p> <p>②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p> <p>개정 '97. 12. 13 법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시행령 개정 '79. 5. 11 령 9460호 '82. 12. 27 령 10961호 '84. 12. 31 령 11585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산물유통공사법 법 3887호 (1986. 12. 31)</p>	<p>'87. 6. 23 령 12183호 전문개정 '94. 5. 4 령 14243호 개정 '94. 12. 23 령 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95. 1. 28 령 14515호 '96. 6. 29 령 15087호 (인삼산업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97. 11. 29 령 15519호</p> <p>동법시행규칙 제정 '77. 8. 12 부령 695호 개정 '83. 4. 26 부령 888호 전문개정 '94. 5. 14 부령 1139호 개정 '94. 10. 20 부령 1158호 '95. 1. 28 부령 1170호 '95. 3. 8 부령 1182호 '95. 6. 30 부령 1197호 '97. 12. 20 부령 1268호 · 해양수산부령 37호</p> <p>1. 이 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86년 개정시 공사의 명칭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변경함.</p> <p>① 공사는 법인으로 함.</p>	<p>• 관계법령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②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p> <p>③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함.</p> <p>개정 '67. 10. 31 법 1960호 농어촌개발공사법신규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농공병진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농어촌에 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업을 개발·육성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p> <p>개정 '68. 12. 31 법 2068호</p> <p>(일부개정)</p> <p>① 자본금을 100억원으로 함. ② 사장·부사장을 총재·부총재로 함.</p> <p>개정 '73. 2. 6 법 2485호</p> <p>(일부개정)</p> <p>① 임원의 임명절차를 변경함.</p> <p>개정 '82. 11. 29 법 3565호</p> <p>① 현재 농어촌개발공사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기능을 농어촌개발공사법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체계화를 기함과 아울러 점증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개선사업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여 유통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조성기능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농어촌개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건 명	내 용	비 고
<p>한국식품개발 연구원육성법 법 3985호 (1987. 12. 4)</p>	<p>전문개정 '86. 12. 31 법 3887호</p> <p>①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1983. 12. 31 법률 제3690호)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확립을 위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농어촌개발공사법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중복되거나 그 뜻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p> <p>동법 시행령 전문개정 '87. 6. 23 령 12181호 개정 '94. 12. 23 령 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1. 이 법은 농림수산물외의 저장·가공 등 식품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기술기반을 향상시켜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95. 12. 6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2조 기금부분이 삭제됨.</p> <p>① 연구원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p>	<p>폐 지</p> <p>•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 법 4553호 (1993. 8. 11)</p>	<p>②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연구원이 다른 기관·단체 등과의 수탁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p> <p>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p> <p>개정 '95. 12. 6 법 4980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령 제정 '87. 12. 31 령 12357호 개정 '96. 6. 10 령 15023호 '98. 8. 1 령 15853호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농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상품성 제고와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94. 12. 22 법 4817호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4. 12. 22 법 481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 관계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사업법, 산림법, 도시계획법, 사도법, 농지법, 수도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95. 12. 29 법 5091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전문개정 '97. 3. 7 법 5299호</p> <p>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② 관련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p> <p>개정 '97. 3. 7 법 5299호</p> <p>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중 농수산식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② 지정한 전통식품의 품목이 전통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③ 농수산물의 표준출하규격화 및 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④ 품질인증 받은 특산물의 광고에 대해 허위 또는 과대광고의 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안정성 조사 및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p> <p>개정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p>	<p>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도로법, 하수도법, 건축법, 대외무역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p> <p>개정 '97. 12. 13 법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령</p> <p>제정 '93. 12. 14 령 14024호</p> <p>개정 '94. 12. 23 령 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97. 2. 28 령 15486호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7. 10. 2 령 15496호</p> <p>'97. 12. 31 령 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p> <p>제정 '94. 1. 19 부령 1131호</p> <p>개정 '94. 10. 13 부령 1155호</p> <p>· '95. 6. 2 부령 1189호</p> <p>'96. 5. 9 부령 1232호</p> <p>'97. 12. 20 부령 1269호 · 해양수산부령 39호</p>	

## 9) 축 산

건 명	내 용	비 고
<p>축우도살제한법 법 37호 (1949. 7. 26)</p>	<p>본법은 축우도살을 제한하여 영농에 필요한 수의 축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 임신우와 8세미만의 빈우 및 4세미만의 모우의 도살은 금지함.</p>	<p>· 가축보호법 (1954.1.23)에 의해 폐지됨.</p>
<p>가축보호법 법 306호 (1954. 1. 23)</p>	<p>본법은 종축을 확보하여 가축의 개량 증식 이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제37조에 법률 37호 축우도살제한법 폐지함.</p>	<p>· 축산법(1963. 6.26)부칙에 의해 폐지됨.</p>
<p>수의사법 법 412호 (1956. 12. 26)</p>	<p>수의사의 기능과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p> <p>① 수의사의 면허자격과 면허의 취소·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② 수의사국가시험과 수험자격에 관하여 정함. ③ 수의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④ 가축진료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함. ⑤ 공수의의 자격·임명·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⑥ 가축진료업무의 적정과 수의학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는 중앙수의사회와 서울특별시 또는 각도수의사회를 설립하도록 함.</p> <p>전문개정 '74. 12. 26 령 2739호</p> <p>종래의 수의사법은 그간 장기간의 시일경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축산업과 수의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불합리성과 모순점이 허다하므로 이를 정비·보완함으로써 수의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축산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p> <p>수의사에 대한 자격기준 및 권리와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등을 재개정 함.</p>	<p>· 관계법령: 이 법의 수의사회 규정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81. 4. 13 법 3441호</p> <p>인허가등의 정비를 위한 행정서사법등의 일부개정법</p> <p>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인허가등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처리권한을 하부기관에 대폭이양 함으로써 국민부담의 경감 및 행정간소화를 통하여 봉사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p> <p>전문개정 '94. 3. 24 법 4747호</p> <p>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p> <p>① 수의사국가시험에 대한 사항 규정  ② 수험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③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와 처벌 규정  ④ 동물병원의 관리의무에 관한 내용 신설</p> <p>수의사는 1개소의 동물병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동물병원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중에서 동물병원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음.</p> <p>전문개정 '94. 3. 24 법 4747호</p> <p>① 수의사회는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회에 위탁 할 수 있고, 동물진료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p> <p>②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에 관한 사항 규정</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94. 3. 24 법 4747호</p> <p>① 농림부장관은 수의사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음.</p> <p>②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전문개정 '94. 3. 24 법 4747호</p> <p>벌칙 및 과태료 에 대한 사항 개정</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p> <p>동법 시행령</p> <p>전문개정 '94. 12. 19 령 14432호 개정 '74. 12. 26 령 2739호 '75. 2. 28 령 7563호 '81. 9. 3 령 10455호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p>축전취체규칙 폐지에관한법 법 909호 (1961. 12. 30)</p>	<p>'97. 12. 31 령 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75. 7. 2 부령 597호 개정 '81. 9. 11 부령 840호 '84. 1. 10 부령 904호</p> <p>경기도 령 제21호 축전취체규칙은 이를 폐지</p>	
<p>가축전염병예방법 법 907호 (1961. 12. 30)</p>	<p>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 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82. 4. 1 법 3548호</p> <p>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제정시행된지 20여년이 경과되어 현 실과 맞지 아니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 정하여 가축예방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만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 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p> <p>개정 '84. 12. 31 법 3762호</p> <p>1988년 서울올림픽의 승마종목에 사용 위한 승마용말이 외국에서 일시수입될 것에 대비하여 말의 예방 철저 위 하여 구역 및 아프리카의 마역을 제2종가축전염병에 추가 하고,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첨가</p>	<p>• 관계법령 : 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검 역법, 수의사 법, 국가검정동 물용의약품검 정규칙, 동물용 의약품 등취급 규칙</p>

건 명	내 용	비 고
	<p>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하여는 화주에게 반송·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게하여 가축전염예방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p>개정 '94. 12. 22 법 4796호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 법률 개정          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전문개정 '95. 1. 5 법 4885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검사·주사·약육 또는 투약의 실시에 관한 규정</li> <li>② 동물의 사체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li> <li>③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li> <li>④ 수출입검역대상 물건 규정</li> <li>⑤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과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는 수입이 금지 됨. 다만, 시험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 등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경우 제외함.</li> <li>⑥ 수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하고, 농림부장관은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li> <li>⑦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와 처리방법등에 관한 내용 정비함.</li> <li>⑧ 지정검역물 수입에 관한 사항과 검역관의 의무 및 권한, 수입장소 제한관한 사항 정비함.</li> <li>⑨ 비용의 부담, 과태료에 관한 사항 정비</li> <li>⑩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가축전염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물의 소유자 등, 수의사, 가축전염성 질</li> </ol>	

건 명	내 용	비 고
	<p>병병원체의 소유자 등, 경마장·가축경진회장·축산물 작업장·화제장 기타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시설자 및 소유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음.</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동법 시행령</p> <p>제정 '82. 8. 13 령 10897호 개정 '85. 4. 19 령 11684호 '94. 12. 23 령 14455호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95. 7. 6 령 14714호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97. 3. 22 령 15313호 '98. 8. 1 령 15853호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p> <p>개정 '82. 12. 31 부령 878호 '85. 6. 11 부령 935호 '88. 2. 5 부령 998호 '91. 11. 4 부령 1085호 '95. 8. 1 부령 1205호 '96. 12. 28 부령 1246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축산물가공처리법 법 1011호 (1962. 1. 20)</p>	<p>(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7. 5. 10 부령 1256호 '98. 8. 1 부령 1288호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p> <p>도장규칙과 조선우유영업취체규칙(조선총독부령)을 폐지, 이를 통합 단일법으로 체계화하여 일관된 축산물검사체도를 확립하고 축산사업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p> <p>① 축산물검사원을 두되 수의사로써 임명함. ② 도축장, 유착취장, 유처리장, 축산가공장의 경영에 대하여는 허가제로 함. ③ 작업장시설의 설비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게 됨. ④ 도축장 이외에서의 수축의 도살해체를 금지함. ⑤ 도축장과 유착취장에서 생축검사에 관하여 규정함. ⑥ 유의 착취 또는 처리방법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함. ⑦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특별한 경우에는 도살해체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⑧ 축산물의 검사결과 합격한 것에 대하여는 합격표시를 하게 함. ⑨ 작업장의 위생유지와 종업원의 건강진단에 관하여 규정함.</p> <p>전문개정 '74. 12. 26 법 2738호</p> <p>① 축산업이 발전되어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 법의 적용대상인 축산물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축산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 보완하기 위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77. 12. 31 법 3060호</p> <p>① 닭·오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축에 대하여는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만 이 법을 적용하여 작업장설치허가 등을 받도록 하던 것을 유통 및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지역외에서도 농수산부장관의 작업장설치허가를 받도록 함.</p> <p>② 집유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범위에 집유장을 추가함.</p> <p>③ 도축장을 제외한 축산물 작업장에서는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함.</p> <p>④ 축산물위생기재에 대한 불량품의 제조·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 함.</p> <p>개정 '82. 12. 31 법 3599호</p> <p>밀도살 및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 <p>개정 '84. 12. 31 법 3763호</p> <p>농수산물가공식품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의 관리업무를 농수산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p> <p>① 제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개칭함.</p> <p>② 축산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수육가공품·유가공품 및 란가공품을 축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함.</p> <p>③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물의 범위에서 수육가공품·유가공품 및 란가공품이 제외됨에 따라 유통허가장 및 축산물가공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④ 축산물의 용기·기구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p> <p>⑤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작업장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청취규정을 신설함.</p> <p>⑥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그 부과절차를 정함.</p> <p>개정 '84. 12. 31 법 3763호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명칭 변경</p> <p>①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p> <p>② 축산물의 수출·검사·수거등에 관한 사항 정비함.</p> <p>전문개정 1997. 12. 13 법 5443호</p> <p>① 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정비함. -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의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p> <p>개정 '98. 2. 28 법 552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동법 시행령 전문개정 '98. 6. 20 령 15812호</p> <p>동법시행규칙 전문개정 '78. 6. 13 부령 724호 개정 '81. 9. 4 부령 839호 '84. 11. 16 부령 919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한국마사회법 법 1012호 (1962. 1. 20)</p>	<p>'85. 7. 3 부령 938호 '98. 8. 1 부령 1288호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전문개정 '98. 7. 3 부령 1287호</p> <p>(신규제정) 개정 '63. 12. 16 법 1593호 헌법개정에 따른 권력구조변경에 수반하여 개정함.</p> <p>동법시행령 제정 '70. 7. 9 령 5167호 개정 '75. 7. 26 령 7706호</p>	
<p>축산법 법 1363호 (1963. 6. 26)</p>	<p>(신규제정) '49. 7. 26 제37호 축우도살제한법 축우도살을 제한하여 영농에 필요한 수의 축우를 확보하 려는 것임.</p> <p>① 임신우와 8세미만의 빈우 및 4세미만의 빈우의 도살은 작란종의 빈우이거나 학술연구용으로 필요한 경우, 생 명이 위태하거나 완치할 가망이 없는 축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금함. ② 축우도살은 도살허가를 받아 하도록 함.</p> <p>개정 '54. 1. 23 법 306호</p> <p>(폐지제정) 축산보호법 이 법은 가축의 등록, 종축, 가축도살 및 가축시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축을 확보하여 가축의 개량증식이 용을 촉진하려는 것임.</p> <p>① 가축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서울특별시의 구, 시·읍</p>	<p>• 관계법령: 축 산업협동조합 법, 축산물위생 처리법, 가축전 염병예방법, 동 물보호법, 오수 ·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한국 마사회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 면의 장이 관장하도록 함.</p> <p>② 가축이 출생, 폐사하거나 행방불명 되었을 때,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변경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는 20일 이내 그 축적을 관장하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p> <p>③ 가축을 개량증식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은 종축을 설정하거나 일정 지역을 종축보호지구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p> <p>④ 주무부장관은 보호지구내의 종축에 대하여 매매교환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종축에 필요한 시설을 할 것을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음.</p> <p>⑤ 가축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경우에도 도지사등의 허가를 받도록 함.</p> <p>⑥ 법률 제37호 축우도살제한법을 폐지함.</p> <p>개정 '63. 6. 26 법 1363호</p> <p>(폐지제정) 축산법</p> <p>① 현행 가축보호법으로 8·15 해방직후의 혼란과 6·25사변으로 인하여 격감되었던 가축중 특히 축우의 피해를 조속히 회복시키는데 중점이 있었던 것으로서 현실성에 비추어 미비한 점이 허다하므로 동법을 폐지하고 축산법을 제정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및 사양을 장려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p> <p>② 법률 제306호로 가축보호법을 폐지함.</p> <p>개정 '68. 5. 21 법 2008호</p> <p>지방장관의 권한에 속하던 가축인공수정소의 개발등록,</p>	

건 명	내 용	비 고
	<p>동취소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시장·군수에 위임함.</p> <p>개정 '76. 12. 12 법 2910호</p> <p>축산물의 획기적인 증산을 기하기 위하여 가축의 개량과 증식에 관한 규제법적성격을 가진 현행규정을 개정보완하여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p> <p>개정 '77. 12. 19 법 3024호</p> <p>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급증에 대처하여 획기적인 축산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진흥회를 설립하여 축산진흥기금의 운용관리·축산물 및 사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등 축산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 <p>개정 '81. 3. 7 법 3382호</p> <p>축산협동조합법의 제정(1980. 12. 15 법률 제3276호)으로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되어 종래의 축산진흥회가 동중앙회에 흡수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p> <p>개정 '82. 12. 31 법 3603호</p> <p>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축산진흥기금중 일부를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p> <p>개정 '84. 8. 2 법 3788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축산물의 가격등락 현상을 극소화하고 대규모 기업축산의 규제와 계열화 생산을 통하여 부업축산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력증진을 유도하며 가축개량부문을 확대·강화하고자 관계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p> <p>개정 '84. 12. 31 법 3763호</p> <p>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제명이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93. 6. 11 법 4557호</p> <p>축산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함이 목적임.</p> <p>개정 '94. 12. 31 법 4843호</p> <p>①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축산물 등의 수입추천과 수입축산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정비함.</p> <p>②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나 수입된 당해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축산물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수입축산물의 용도 제한, 수입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명할 수 있음.</p> <p>③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수입이 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조문 정비함.</p> <p>전문개정 '94. 12. 31 법 4843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① 가축의 인공수정시에 지켜야 될 규제등 정비함.</p> <p>② 축산물 등의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등의 정비</p> <p>③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비육송아지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비육송아지의 생산안정조치에 관한 관련조문 정비함.</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동법시행령 제정 '85. 4. 24 령 11689호 개정 '86. 4. 26 령 11890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전문개정 '93. 12. 14 령 14026호</p> <p>개정 '94. 12. 23 령 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정비)</p> <p>'94. 12. 23 령 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4. 12. 23 령 14450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4. 12. 23 령 14455호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5. 2. 8 령 14522호 '96. 8. 8 령 15135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사료관리법 법 1393호 (1963. 8. 14)</p>	<p>(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97. 12. 31 령 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시행규칙 제정 '78. 8. 17 부령 735호 개정 '79. 7. 4 부령 768호 '80. 10. 14 부령 801호 '82. 1. 9 부령 851호 '84. 11. 5 부령 917호 '84. 12. 7 부령 923호 '85. 4. 27 부령 930호 '86. 9. 27 부령 961호 '94. 6. 29 부령 1146호(전문개정) '95. 1. 23 부령 1168호 '95. 7. 28 부령 1203호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97. 12. 4 부령 1266호 '98. 7. 3 부령 1287호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사료의 수급조절, 가격의 안정 및 품질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임. ① 농림부장관은 수급조절용으로 사료를 매입 또는 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절용사료를 양축용 이외로 매도하지 못하게 함.</p>	<p>• 관계법령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국세징수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②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절용사료등의 매도방법을 정하거나 매도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p> <p>③ 사료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배합사료공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도록 함.</p> <p>④ 농림부장관은 배합사료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종류별로 사료성분량의 최소와 최대의 한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사료 제조업자는 그 종류별 사료성분량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게 함.</p> <p>⑤ 사료의 제조업자는 제조된 배합사료에 등록된 성분량 보증표를 붙이도록 하고 그 성분량보증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p> <p>⑥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p> <p>개정 '74. 12. 26 법 2740호</p> <p>사료관리법은 1963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료수급조절이나 사료공장에 대한 규제 및 품질의 유지·관리면에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허다하여 이를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p> <p>전문개정 '81. 3. 24 법 3396호</p> <p>국민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축산물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됨에 따라 사료의 유통량도 크게 증가되고 있어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료원료의 원활한 공급과 양산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사료의 유통체제 개선과 안정성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양축농가를 보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하려는 것임.</p> <p>개정 '84. 12. 31 법 3761호</p> <p>수입되는 사료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제조되는 사료와 같이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게 하고 사료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의 품질을 검사하도록 하여 사료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하며, 사료제조업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행하도록 하고 사료제조업의 양도 또는 임대할 하는 경우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간소화하려는 것임.</p> <p>개정 '94. 12. 31 법 4849호</p> <p>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보조 사료 등의 수입추천 등에 관한 관련조문 정비함.</p> <p>②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와 같은 청문에 관련된 사항 정비함.</p> <p>전문개정 '94. 12. 31 법 4849호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관련 조문 정비함.</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동법시행령 전문개정 '81. 9. 3 령 10454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낙농진흥법 법 1873호 (1967. 1. 16)</p>	<p>개정 '85. 6. 28 령 11711호 '87. 4. 10 령 12139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관 련 조항 정비) '95. 12. 29 령 14845호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 항 정비) '97. 12. 31 령 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시행규칙 전문개정 '81. 12. 31 부령 850호 개정 '83. 2. 16 부령 884호 '85. 7. 20 부령 942호 '93. 2. 23 부령 1114호 '95. 2. 27 부령 1175호 '95. 12. 30 부령 1218호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 비)</p> <p>(신규제정) 1. 이 법은 낙농진흥에 필요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농촌 경제의 향상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2. 농림부장관은 축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유유의 특 수공제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p> <p>개정 '93. 6. 11 법 4557호</p>	<p>• 관계법령 : 축산법, 초지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한국진도견보호 육성법 법 1875호 (1967. 1. 16)</p>	<p>축산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4. 12. 22 법 4791호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동법시행령 제정 '70. 7. 9 령 5183호 개정 '72. 6. 3 령 6192호 '94. 12. 23 령 14438호 (개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94. 12. 23 령 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94. 12. 23 령 14455호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시행규칙 제정 '69. 8. 19 부령 392호 개정 '96. 12. 23 부령 1244호</p> <p>(신규제정) 이 법은 진돗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돗개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69. 1. 28 법 2097호</p> <p>① 진도견등록을 한국진도견보육 협동조합에 하게 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초지법 법 2081호 (1969. 1. 17)</p>	<p>② 보호지구 내의 개의 반입제한과 개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p> <p>전문개정 1997. 8. 22 법 5347호</p> <p>① 이 법에서 "진도개"라 함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돗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라는 정의 규정함.</p> <p>② 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과 반출입 제한에 관한 조문 정비함.</p> <p>동법시행규칙 제정 '69. 6. 11 부령 332호 개정 '80. 9. 19 부령 791호</p> <p>(신규제정) 축산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초지의 조성·개발·개량·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지조성에 장애되는 요인을 제거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p> <p>① 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지대를 조사·선정하도록 함. ② 초지조성은 초지조성자와 조성초지의 면적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③ 초지조성지대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임야의 소유자가 초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허가하여 주도록 함. ④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에 있어서는 일정한 순위를 정함. ⑤ 초지조성을 위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절차와 당해 임차권의 전대 등의 금지 및 대부취소사유를 정함.</p>	<p>• 관계법령 : 축산법,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⑥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초지조성지대내의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초지조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 업목 축업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하여 초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가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함.</p> <p>⑦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농경지조성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초지조성의 허가가 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법 제9조 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등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도록 함.</p> <p>개정 '73. 3. 5 법 2576호</p> <p>부실초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사후관리의무를 부과하여 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임목을 벌채하거나 산림을 개간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써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p> <p>전문개정 '80. 1. 4 법 3238호</p> <p>현행 초지법하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승인, 신고등의 절차를 거친 후 초지조성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잡한 절차를 없애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된 초지조성적지에 대하여는 초지법에 의한 허가만으로 족하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게 함.</p> <p>① 농수산부와 도·시·군에 각각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p> <p>② 농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초지조성적지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적지라고 판단될 때에는 초지조성대상지로 선정하도록 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③ 국·공유지, 보안림, 보안림 예정지 등에 초지조성 적지가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도록 함.</p> <p>개정 '81. 12. 31 법 3539호</p> <p>초지조성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초지조성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사항이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성장발전저해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p> <p>①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초지조성대상지 선정신청후에 따로 허가신청을 하던 것을 초지조성허가신청만을 하도록 함.</p> <p>②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청은 미리 이를 초지조성자에게 통지하여 청문을 행하도록 함.</p> <p>③ 개발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에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초지조성허가를 한때에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확대함.</p> <p>개정 '82. 12. 31 법 3642호</p> <p>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용도별 행위제한에 의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는 개발계획을 수립한 당해 법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을 인용할 필요가 없어 인용조문을 삭제함.</p> <p>개정 '86. 12. 31 법 3886호</p> <p>초지를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단위당 생산성을</p>	

건 명	내 용	비 고
	<p>높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초지조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초지조성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p> <p>① 농림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직할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등 초지조성의 허가청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지조성의 적지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p> <p>② 일반사유미간지를 대차하여 초지를 조성할 경우 임대차당사자간에 임대차기간·임대료등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지조성지구의 대리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초지조성을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함.</p> <p>③ 허가청으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 등의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동의 또는 협의(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p> <p>④ 농림수산부장관의 초지전용허가권을 초지가 2개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경우와 도가 직접 초지를 조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초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신고로만 가능하도록 함.</p> <p>개정 '90. 1. 13 법 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0. 1. 13 법 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전문개정 '91. 5. 31 법 4378호</p> <p>① 초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당해 초지를 성실하게 관리·이용함에 관련된 조항 정비함.</p> <p>②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등에 관련된 규정 정비함.</p> <p>③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규정과 조치에 대한 사항 정비함.</p> <p>④ 초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의 철거와 소유에 관한 사항 정비함.</p> <p>개정 '93. 6. 11 법 4557호 (축산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4. 3. 24 법 4748호 (사방사업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4. 12. 22 법 4817호 (농지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5. 12. 29 법 5111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개정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초지의 승계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함.</p> <p>②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한 관련조문 정비함.</p> <p>③ 토지가격은 토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개별 공사</p>	

건 명	내 용	비 고
	<p>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함.</p> <p>④ 제8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p> <p>개정 '97. 12. 13 법 5454호 행정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동법시행령 전문개정 '80. 4. 8 령 9841호 개정 '82. 5. 20 령 10825호 '87. 4. 10 령 12139호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87. 7. 1 령 12204호 '89. 8. 18 령 12781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90. 1. 3 령 12899호 (환경처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92. 1. 30 령 13575호 '92. 12. 31 령 13811호 (청소년기본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94. 6. 17 령 14284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94. 12. 23 령 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p>국립종축장설치법 법 2131호 (1969. 8. 4)</p>	<p>'94. 12. 23 령 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4. 12. 23 령 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4. 12. 23 령 14450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6. 12. 31 령 15226호</p> <p>'98. 4. 11 령 15773호</p> <p>동법 시행규칙</p> <p>전문개정 '82. 6. 5 부령 865호</p> <p>'87. 9. 10 부령 987호</p> <p>'92. 2. 7 부령 1092호</p> <p>'92. 10. 1 부령 1105호</p> <p>'94. 12. 26 부령 1164호</p> <p>'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8. 4. 24 부령 1283호</p> <p>정부의 주요사업으로 추진중인 축산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량우량종축을 생산·보급할 수 있는 국립종축장을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려는 것임.</p> <p>① 시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p>	<p>· 정부조직법 (법률제3688호, 1983.12.30)의 부칙에 의해 폐지됨.</p>

건 명	내 용	비 고
가금등의퇴검사 규칙 부령 398호 (1969. 8.28)	② 종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 규칙은 식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되는 닭, 오리, 거위, 칠면조와 개 및 토끼의 의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폐 지
개정 '71. 5. 6 부령 452호 '82. 8. 14 부령 874호		
국가검정동물약품 검정규칙 부령 399호 (1969. 8.28)	이 령은 약사법 제45조제2항 및 법률 제1694호 약사법중 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검정동물약품의 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폐 지
개정 '69. 9. 6 부령 403호 '74. 6. 3 부령 569호 '81. 12. 12 부령 847호 '83. 12. 31 부령 903호 '87. 5. 28 부령 973호		
수출가금및동가공 품의퇴검사규칙 부령 402호 (1969. 8. 28)	이 령은 가금 및 동가공품을 수출(군납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행한 위생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폐 지
국립종축장관리특 별회계법 법 2178호 (1970. 1. 1)	이 법은 국립종축장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종축장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함.	· 국립종축장 관리특별회계 법폐지법률(19 76.12.22)의해 폐지됨.

건 명	내 용	비 고
<p>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령 5168호 (1970. 7. 9)</p>	<p>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가축방역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위해 농림부에 가축방역대책위원회를 둠.</p>	
<p>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시설기준령 13709호 (1970. 7. 9)</p>	<p>이 영은 약사법 제7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6조 제3항·제26조제2항·제34조제2항·제37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중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그 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76. 2. 20 령 7998호 전문개정 '92. 8. 17 령 13709호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정비)</p>	
<p>축산사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령 5179호 (1970. 7. 9)</p>	<p>농림부장관은 축산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내용임.</p>	폐 지
<p>국립종축원직제령 5784 호 (1975. 4. 1)</p>	<p>개정 '72. 3. 30 대통령령 6123호 '77. 6. 3 대통령령 8592호 '78. 8. 18 대통령령 9140호 '79. 12. 5 대통령령 9688호 '80. 2. 1 대통령령 9748호 (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의한 관련조항 정비) '80. 4. 1 대통령령 9837호 '81. 2. 26 대통령령 10205호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의한 관련조항 정비) '81. 11. 2 대통령령 10542호</p>	폐 지

건 명	내 용	비 고
<p>국립종축장종축배부규칙령 743호 (1978. 11. 16)</p>	<p>'83. 10. 7 대통령령 11238호 (경제기획원직제등 일부 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84. 1. 31 대통령령 11346호</p> <p>이 규칙은 가축의 개량, 증식을 위하여 국립종축장에서 사육중인 종축의 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82. 4. 7 농수산부령 861호 '83. 10. 29 농수산부령 898호</p>	<p>폐 지</p>
<p>축산업협동조합법 3276호 (1980. 12. 15)</p>	<p>이 법은 축산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육성하여 축산업의 진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p> <p>① 축산업협동조합의 단위조직으로서 지역별조합과 업종별조합을, 그 연합조직임과 동시에 중앙조직인 축협중앙회를 두어 2단계조직으로 하였음.</p> <p>② 조합원자격은 지역내의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둔 양축가로 하였으며 단위농협등 농업단체를 준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아닌 영세양축가도 출자없이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p> <p>③ 조합원의 권리로서 선거권·의결권·피선거권·총회소집요구권 및 부당의결 및 선임에 대한 취소청구권을 규정하였으며, 조합원의 의무로서 1구좌이상의 출자의무 및 경비부담의무를 규정하였음.</p> <p>④ 조합 및 중앙회의 중요사업으로서는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가축의 개량·증식 및 방역·진료사업, 조합원을 위한 구매·판매·이용·보관·운송 등의 경제사업과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은 상호금융·중앙회는 은행업무, 공제사업(조합원대상), 가축시장의</p>	<p>· 관계법령:은행법, 민법, 상법, 한국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비송사건절차법, 보험업법, 화물유통촉진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대외무역법, 석유사업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운영관리, 축산물의 가공 및 제조사업, 축산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축산물과 사료의 수급조절등의 사업을 두었으며 기타 정부위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p> <p>⑤ 조합원의 조합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리·동단위에 조합원의 자생조직인 축산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세양축농민의 조합이용 편의를 위하여 준계원제도를 두었음.</p> <p>전문개정 '88. 12. 31 법 4082호</p> <p>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련된 조문 정비함.  ②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문 정비함.  ③ 임원 선출에 있어서의 자격과 임기에 관련된 조문 정비함.</p> <p>개정 '89. 3. 29 법 4097호  개정 '91. 12. 14 법 4423호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정비)  '91. 12. 14 법 4433호  (화물유통촉진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정비)  '93. 6. 11 법 4557호  (축산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정비)</p> <p>개정 '94. 12. 22 법 4821호</p> <p>① 조합과 중앙회의 정치의 관여금지에 관한 규정  ② 조합과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다른 조합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 정비함.  ③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사항 규정함.  ④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 정비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⑤ 업종축산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과 역할, 회원의 자격에 관한 조문 정비함.</p> <p>⑥ 법인의 업종조합연합회 설립절차와 지원등 규정함.</p> <p>⑦ 집행간부의 구성 및 임기 규정</p> <p>전문개정 '94. 12. 22 법 4821호</p> <p>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할 수 없음.</p> <p>②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조문 정비</p> <p>③ 정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p> <p>④ 등기절차등에 관한 사항 정비</p> <p>⑤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부회장 소속직원은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임면함.</p> <p>⑥ 상임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 목적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96. 12. 30 법 5211호 대외무역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전문개정 '97. 12. 13 법 5453호 주무부장관의 처분과 청문관한 관련 조문 정비함.</p> <p>개정 '97. 8. 30 법 5408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정비)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97. 12. 13 법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8. 1. 13 법 5505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령</p> <p>제정 '81. 6. 5 령 10332호</p> <p>개정 '82. 9. 7 령 10906호</p> <p>'87. 4. 1 령 12126호</p> <p>'89. 6. 15 령 12727호</p> <p>'94. 12. 23 령 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5. 6. 22 령 14677호</p> <p>'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7. 11. 29 령 15516호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폐지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7. 12. 31 령 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98. 4. 1 령 15761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p>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3277호 (1980. 12. 15)</p> <p>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부령 820호 (1981. 3. 7)</p>	<p>동법 시행규칙</p> <p>제정 '81. 7. 25 농수산부령 833호</p> <p>개정 '83. 11. 21 농수산부령 900호</p> <p>'89. 6. 27 부령 1032호</p> <p>'95. 6. 23 부령 1191호</p> <p>'96. 12. 28 부령 1246호</p> <p>(농지법시행령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p> <p>축산업협동조합장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에서 야기되는 각종 폐단을 감안하여 조합장 선출여건성숙시기까지 잠정적으로 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중앙회장이 조합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축산업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p> <p>① 임원의 선출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회장이 조합장을 임명하도록 함.</p> <p>②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p> <p>이 규칙은 약사법 제45조 및 동법 제72조의6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 의약품·동물용 의약부외품·동물용 의료용구·동물용 위생용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81. 8. 21 부령 837호</p> <p>'84. 11. 5 부령 918호</p> <p>전문개정 '97. 5. 6 부령 1255호</p>	<p>· 축산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 (1988.12.31)에 의해 폐지됨.</p>

건 명	내 용	비 고
<p>축산경영기술에 관한교육훈련규칙 부령 945호 (1985. 11. 29)</p> <p>동물보호법 법 4379호 (1991. 5. 31)</p>	<p>개정 '98. 8. 1 부령 1288호</p> <p>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① 농림부장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정 시험기관에 적정성 여부 검토 할 수 있음.</p> <p>②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 제조업소와 동물용의약품제조업소간에 서면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생산하여야 함.</p> <p>③ 자가백신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주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간에 서면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생산하여야 함.</p> <p>④ 수출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품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서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p> <p>⑤ 농림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동물용 의약품의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동물용 의약품의 국가검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외의 시험기관 중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p> <p>이 규칙은 국립종축원직제 제1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경영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p> <p>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정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p>	<p>폐 지</p> <p>•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처리법,유실물법,민법,조수보호 및수렵에 관한 법률</p>

건 명	내 용	비 고
<p>도축업시설기준에 대한특례규칙 부령 1292호 (1998. 8. 19)</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임.</p> <p>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 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기타 농림 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함.</p> <p>2. "관리자"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 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p> <p>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p> <p>①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장려 할 수 있음.</p> <p>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 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p> <p>개정 '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전문개정 '97. 5. 6 부령 1255호</p> <p>이 규칙은 농가에서 직접 소비하는 소를 도살·처리하는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소고기의 소비를 늘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산 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함.</p> <p>① 농가에서 직접 소비하기 위한 소만을 도살·처리하는 도축업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관련 조문</p>	

건 명	내 용	비 고
	<p>②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도축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그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음.</p> <p>③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도축업의 작업장은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에 부설되어 있는 창고나 농기구보관창고·농산물저장창고로서 도축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그 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곳에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p> <p>(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함.  (유효기간) 이 규칙은 199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짐.</p>	

10) 무역 · 검역

건 명	내 용	비 고
수출식물검역규칙 부령 374호 (1969. 8. 4)	개정 '69. 12. 4 부령 412호 '76. 12. 20 부령 657호 '82. 6. 29 부령 870호	폐 지
수입식물검역규칙 부령 375호 (1969. 8. 4)	개정 '79. 3. 26 부령 753호 '82. 6. 29 부령 869호	폐 지
국립동물검역소직 제 령 4461호 (1969.12. 18)	개정 '70. 4. 8 대통령령 4887호 '72. 12. 28 대통령령 6427호 '74. 5. 16 대통령령 7155호 '76. 12. 31 대통령령 8386호 '78. 8. 16 대통령령 9137호 '79. 7. 10 대통령령 9613호 '80. 2. 1 대통령령 9748호 (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의한 관련조항 정비) '80. 11. 26 대통령령 10087호 '81. 2. 26 대통령령 10205호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의한 관련조항 정비) '81. 7. 23 대통령령 10422호 (농수산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의한관련조항정비) '81. 11. 2 대통령령 10539호 '87. 8. 14 대통령령 12234호	
농수산물수출진흥 법 법 2289호 (1971. 1. 19)	이 법은 농수산물의 생산·수집·가공 및 수출체제를 계 열화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 출진흥과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①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음.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수산물수출진흥 법제2조제2호의규 정에의한품목지정 령 부령 459호 (1971. 8. 16)</p>	<p>② 농림부장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생산자·지 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의 지정을 취소하 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p> <p>개정 '90. 1. 13 법 4206호 (산림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93. 3. 6 법 4541호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93. 6. 11 법 4556호 (임업협동조합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95. 12. 6 법 4980호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97. 12. 13 법 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97. 12. 13 법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 한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 시행령 제정 '71. 6. 7 령 563호 개정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물부외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 항 정비)</p> <p>농수산물 수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은 다음과 같음. 1. 생사류(생사, 옥사) 2. 양송이 통조림 3. 갈포벽지 4. 굴 가공품</p>	<p>• 관계법령 : 대외무역법, 도 시계획법, 잠업 법, 농산물검사 법, 수산물검사 법, 민법, 농업 협동조합법, 임 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 합법 • 1971. 1. 19 일 법 제정 시 잠사가격안정 기금법을 부칙 으로 폐지</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국립식물검역소직 제 령 8930호 (1978. 4. 12)</p>	<p>개정 '78. 12. 30 령 9271호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79. 2. 23 령 9345호 (농수산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79. 9. 10 령 9614호 '80. 11. 26 령 10091호 (농수산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1. 7. 23 령 10422호 (농수산부직제등일부개정령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81. 11. 2 령 10545호 '85. 12. 31 령 11836호</p>	<p>폐 지</p>
<p>동물검역및식물검 역공무원복제 부령 905호 (1984. 1. 11)</p>	<p>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동물검역 및 식 물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검역관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p> <p>개정 '98. 8. 1 부령 1288호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에 의한 관 련 조항 정비)</p>	



### 11) 농 촌 진 흥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사교도법 법 435호 (1957. 2. 12)</p>	<p>1. 본법은 농사의 개량발전을 위한 필요한 연구시험을 위하여 농사 및 생활개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농민에게 교도함으로써 농산물을 증산하고 그의 생산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61.10. 2 농사연구교도법으로제명변경</p>	<p>· 농 촌 진 흥 법 제 정 과 동 시 에 부 칙 에 의 해 폐 지 됨.</p>
<p>농촌진흥법 법 1039호 (1962. 3.21)</p>	<p>'57. 2. 12 법 435호 농사교도법</p> <p>'61. 10. 2 법 742호 일부개정</p> <p>'62. 3. 21 법 1039호</p> <p>개정 '62. 4. 1 법 1039호 농사연구교도법 폐지</p> <p>개정 '63. 12. 16 법 1588호</p> <p>헌법개정에 따른 권력구조변경에 수반하여 개정함.</p> <p>개정 '66. 12. 27 법 1859호</p> <p>정부기구개편에 따른 산림청 신설에 수반하여 개정함.</p> <p>개정 '69. 8. 4 법 2133호</p> <p>국립종축장설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종축생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것임.</p> <p>개정 '71. 1. 14 법 2383호</p> <p>① 농촌진흥청이 지휘감독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함.</p> <p>② 농촌진흥원장과 농촌지도소장의 직급을 직제에서 정하게 하기 위하여 삭제함.</p> <p>③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임용절차를 정함.</p>	<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④ 사업시행에 관한 농촌진흥청장의 지휘감독권과 4급이하의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권을 서울특별시·부산시장·도지사 또는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함.</p> <p>개정 '78. 12. 5 법 3119호</p> <p>전문개정 '95. 12. 6 법 5020호</p> <p>이 법은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거나 농림부장관에게 지원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음.</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농림부장관에게 지원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음.</p> <p>③ 지원시책 등에 대한 건의를 받은 농림부장관은 이에 대한 지원시책 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p> <p>개정 '96. 8. 8 법 5153호</p> <p>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함.</p> <p>동법 시행령</p> <p>제정 '96. 3. 20 령 14952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촌진흥사업보조 금교부규정 령 5177호 (1970. 7. 9)</p>	<p>'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함.</p> <p>동법 시행규칙 제정 '96. 3. 20 부령 1226호</p> <p>이 령은 농촌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조성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함.</p>	<p>폐 지</p>
<p>농업산·학협동심 의회규정 령 5889호 (1971. 12. 28)</p>	<p>이 령은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 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에 농업산·학·관·연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 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91. 2. 1 령 1328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4. 5. 16 령 14260호</p> <p>전문개정 '95. 9. 28 령 14773호</p>	
	<p>① 농업단체의 범위와 관련된 조문 정비함. ② 도심의회의 기능 관련 조문 정비 ③ 시·군심의회의 구성과 그 기능에 관한 조문 정비함.</p> <p>개정 '96. 3. 20 령 14952호 농촌진흥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지방농촌진흥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 령 6808호 (1973. 8. 16)	이 령은 농림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 기 위한 지방농림진흥기구의 설치에 관한 대망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농촌진흥사업수행을 기함을 목적으 로 함.  개정 '76. 12. 31 령 8388호 '86. 6. 14 령 11925호 (도와 직할시의 수행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	폐 지
영농기술훈련규정 령 7266호 (1974. 9. 28)	이 령은 농촌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교육과 농 촌자원지도자의 수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농민으로 하 여금 농업 및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 게 함으로써 농민의 기술자화 및 영농의 과학화를 촉진함 을 목적으로 함.  동법시행규칙('74. 12. 24 부령 583호)	폐 지
농촌진흥청소속시 험장직제 령 8390호 (1976. 12. 31)	개정 '77. 5. 6 령 8563호 '78. 5. 25 령 8966호 '78. 9. 23 령 9166호 (법무부직제등 일부 개정령에의한관련조항정비) '79. 12. 5 령 9683호 '80. 2. 1 령 9748호 (체신부직제등 일부 개정령에의한관련조항정비) '80. 6. 18 령 9916호 '81. 2. 26 령 10205호 (내무부직제등 일부 개정령에의한관련조항정비) '81. 11. 2 령 10548호 '83. 10. 8 령 11244호	폐 지

건 명	내 용	비 고
농촌진흥청소속연 구조직제 령 8391호 (1976. 12. 31)	개정 '77. 5. 6 령 8564호 '78. 4. 24 령 8965호 '78. 9. 23 령 9166호 (법무부직제등 일부 개정령에의한관련조항정비) '79. 12. 5 령 9682호 '80. 2. 1 령 9748호 (체신부직제등 일부 개정령에의한관련조항정비) '80. 6. 18 령 9915호 '81. 2. 26 령 10205호 (내무부직제등 일부 개정령에의한관련조항정비) '81. 11. 2 령 10547호 '83. 10. 7 령 11238호 (경제기획원직제등 일부 개정령에의한 관련 조항정비) '83. 10. 8 령 11245호 '86. 6. 14 령 11932호	폐 지
농촌진흥청과그소 속기관직제 령 8964호 (1978. 4.24)	이 령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개정 '78. 9. 23 령 9166호 (법무부직제등 일부개정령에의한관련조항정비) '79. 12. 5 령 9681호 '80. 2. 1 령 9748호 (체신부직제등 일부 개정령에의한관련조항정비) '80. 6. 18 령 9914호 '81. 2. 26 령 10205호 (내무부직제등 일부 개정령에의한관련조항정비) '81. 11. 2 령 10548호 '83. 10. 7 령 11238호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의한관련조항정비)	

건 명	내 용	비 고
<p data-bbox="217 1263 432 1470">농촌진흥청시험장 의출장소설치에관 한규칙 부령 720호 (1978. 5. 10)</p> <p data-bbox="217 1528 432 1688">농촌진흥청명예직 연구관규정 령 9349호 (1979. 2. 24)</p>	<p data-bbox="459 301 1100 1161"> '83. 1. 8 령 11243호   전문개정 '98. 2. 28 령 15726호   개정 '98. 8. 1 령 15854호   ① 농촌진흥청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  진흥청장 소속 하에 농업과학기술원·연구소·시험  장·종자관리소 및 한국농업전문학교를 둠.  ②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종자관리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③ 농촌진흥청에 총무과·연구관리국 및 기술보급국을 두  고,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농업경영관·감사담당관  및 기술공보담당관 각 1인을 둠.   동법 시행규칙  제정 '98. 2. 28 부령 1281호  개정 '98. 8. 1 부령 1290호 </p> <p data-bbox="459 1263 1100 1383">이 규칙은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직제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농촌진흥청시험장소속하에 두는 출장소의 설치의 명  칭, 위치 및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 data-bbox="459 1528 1100 1647">이 령은 농촌진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직  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수당위촉방법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 data-bbox="1176 1263 1248 1290">폐 지</p> <p data-bbox="1176 1528 1248 1555">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p>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부령 909호 (1984. 4.25)</p>	<p>이 규칙은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과학기술원·연구소 및 시험장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전문개정 '97. 3. 18 부령 1254호</p> <p>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p> <p>①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과학기술원·연구소 및 시험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p> <p>다만,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을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의뢰인이 국내외에서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p> <p>③ 연구소장등은 시험등을 마친 때에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또는 검정이 끝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함.</p> <p>개정 '98. 12. 4 부령 1297호</p>	
<p>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령 14742호 (1995. 7. 27)</p>	<p>이 령은 교육법 제149조 및 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① 전문 농·림·어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아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서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를 두</p>	

건 명	내 용	비 고
	<p>고,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한국 임업전문학교는 산림청장에게, 한국수산전문학교에 관 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위탁함.</p> <p>② 조직 및 정원은 각각 농촌진흥청과 그소속기관직제·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및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 제에서 정함.</p> <p>③ 한국농업전문학교 등의 학칙은 교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 등의 승인을 얻어 정함.</p> <p>④ 한국농업전문학교등에 입학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농촌지도소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임.</p> <p>⑤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 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교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 는 농촌진흥청장 등의 승인을 얻어 정함.</p> <p>⑥ 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상환에 관한 규정</p> <p>개정 '95. 7. 27 령 14742호 '95. 12. 29 령 14842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정 비)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 항 정비) '97. 5. 24 령 15379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 항 정비)</p>	



## 12) 산 립

건 명	내 용	비 고
<p>영림관서설치법 법 91호 (1950. 2. 9)</p>	<p>임야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장관소속에 영림서를 두고 영림서소속하에 관리소와 작업소를 둠. 그리고 영림서관리소와 작업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p>	<p>· 1973. 1.15 법률 제2437호정부조직법의 부칙에의해 폐지됨.</p>
<p>산림보호임시조치법 법 218호 (1951. 9. 21)</p>	<p>본법은 당면한 임상파괴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로 산림법이 제정될 때 까지 산림보호 또는 조림에 관하여 임시 긴급히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함.</p>	<p>· 1961.12.27법률제881호산림법의부칙에 의해 폐지됨.</p>
<p>임산물단속에 관한 법 법 635호 (1961. 6. 27)</p>	<p>이 법은 산림피해와 부정임산물의 운반 및 거래를 단속함으로써 산림보호를 기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63. 2. 9 법 1270호 '66. 3. 29 법 1771호 '70. 8. 12 법 2238호</p>	<p>· 1980. 1. 4 법률제 3232호로 개정된 산림법 부칙에 의하여 폐지됨.</p>
<p>산림법 법 881호 (1961. 12. 27)</p>	<p>1. 이 법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61. 12. 27 법률제정시에 산림령, 조선국유산림미간지 및산림산물특별처분령, 국유임야법을조선에서행하는데 관한건, 조선특별연고산림양여령, 조선임야부분령령, 국유토석채취규칙,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사유임야사업제한규칙, 송충구제예방규칙 등을 폐지함.</p> <p>개정 '63. 2. 9 법 1268호</p>	<p>· 관계법령 :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부동산등기법,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소방법, 국토이용관리법등 50개 법률</p>

건 명	내 용	비 고
	<p>① 산림계가 시업의 대집행을 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각령의 정하는 기간내에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게 함.</p> <p>② 산림계가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조림 또는 관리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조림 또는 관리한 것으로 봄.</p> <p>③ 벌칙을 강화함.</p> <p>개정 '70. 1. 1 법 2197호</p> <p>① 산림기본계획의 작성·변경은 산림소유자가 하되, 산림소유자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림조합이 하도록 함.</p> <p>② 종래 벌채·허가제도를 지양하고, 산림기본계획에 따른 벌채는 신고제로 하고, 벌채지는 조림하도록 함.</p> <p>③ 임산물을 재료로 하는 기업자는 반드시 산업비림으로 산림을 소유하도록 함.</p> <p>④ 국유림과 송유림의 교환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p> <p>⑤ 산림조합 및 동 연합회를 보장함.</p> <p>개정 '73. 2. 6 법 2525호</p> <p>① 낙엽채취를 규제함.</p> <p>② 천연림과 노거수를 지정하여 특별히 보호하게 함.</p> <p>③ 조림을 위하여 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함.</p> <p>④ 산림조합장등을 임명제로 함.</p> <p>⑤ 산림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p> <p>전문개정 '80. 1. 4 법 3232호</p> <p>「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개발법」을 폐지하여 산림법에 통합규정하고 종래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던 계·조</p>	

건 명	내 용	비 고
	<p>합·연합회의 관계규정은 산림조합법에 흡수시켰음.</p> <p>개정 '86. 12. 20 법 3854호</p> <p>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86. 12. 31 법 3910호</p> <p>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전문개정 '88. 12. 26 법 4031호</p> <p>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90. 1. 13 법 4206호</p> <p>① 산림청장은 필요시 산림소유자에게 임도 시설 설치를 허용함.</p> <p>② 산림청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단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수개발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음.</p> <p>③ 산림청장은 필요시 자연휴양림을 지정 및 조성할 수 있으며,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p> <p>④ 영림계획인가의 취소, 전용허가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p> <p>⑤ 산림청장은 필요시 국유림의 대부할 수 있음.</p> <p>⑥ 채석 허가 및 채석장 관리 규정 신설</p> <p>전문개정 '90. 1. 13 법 4212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90. 12. 31 법 4305호</p> <p>①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신설  ②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 금지</p> <p>개정 '91. 11. 22 법 4401호</p> <p>① 산림전용시 대체조립비, 전용부담금 납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사업 및 농어가주택건축 등의 경우 대체조립비 및 전용부담금 감면</p> <p>개정 '91. 12. 14 법 4419호</p> <p>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93. 6. 11 법 4556호</p> <p>임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전문개정 '94. 12. 22 법 4816호</p> <p>① 산림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 지정함.  ② 산림이용구분을 위해 10년마다 산림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③ 유희토지의 산림전환 조치 유도 및 경비지원</p>	

건 명	내 용	비 고
	<p>④ 대체조립비, 전용부담금의 수납업무의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p> <p>⑤ 산림청장은 필요시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p> <p>개정 '95. 12. 29 법 5108호</p> <p>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96. 8. 8 법 5153호</p> <p>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97. 4. 10 법 5323호</p> <p>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이용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목구조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음.</p> <p>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보안림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p> <p>③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필요시 산지정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p> <p>④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보전, 산림의 경영관리 및 이용과 임업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술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 지급 및 연구개발성과의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음.</p> <p>전문개정 '97. 4. 10 법 5325호</p> <p>임업진흥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동법시행령 전문개정 '80. 7. 19 령 9968호</p> <p>개정 '81. 12. 31 령 10684호</p> <p>'84. 7. 28 령 11478호</p> <p>'85. 12. 31 령 11810호</p> <p>'86. 4. 26 령 11890호</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한 관련조항 정비)</p> <p>'90. 7. 14 령 13052호</p> <p>'90. 12. 31 령 13215호</p> <p>'91. 12. 31 령 13811호</p> <p>(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에 의한 관련조항 정 비)</p> <p>'92. 2. 22 령 13598호</p> <p>'92. 12. 31 령 13811호</p> <p>(청소년기본법시행령개정에 의한 관련조항 정비)</p> <p>'94. 3. 2 령 14184호</p> <p>'94. 12. 23 령 14438호</p> <p>(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의한 관련조 항 정비)</p> <p>'94. 12. 23 령 14450호</p> <p>(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따른관련조항정비)</p> <p>'95. 6. 23 령 14680호</p> <p>'95. 12. 29 령 14842호</p> <p>(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의한관련조항정 비)</p> <p>'96. 6. 29 령 15098호</p> <p>(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 의한 관 련조항 정비)</p> <p>'96. 8. 8 령 15135호</p> <p>(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관련조항 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p>'96. 12. 31 령 15228호</p> <p>'97. 11. 29 령 15517호</p> <p>'97. 12. 31 령 15598호</p> <p>(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에의한 관련조항정비)</p> <p>동법 시행규칙</p> <p>전문개정 '80. 8. 29 내무부령 328호</p> <p>개정 '88. 12. 27 부령 1011호</p> <p>(서식중본죽란삭제를위한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등의일부개정령에의한관련조항정비)</p> <p>'89. 6. 19 부령 1029호</p> <p>'89. 9. 22 건설부령 453호</p> <p>(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 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0. 7. 14 부령 1046호</p> <p>'91. 2. 23 부령 1068호</p> <p>'92. 2. 22 부령 1097호</p> <p>'94. 4. 18 부령 1134호</p> <p>'95. 1. 25 부령 1169호</p> <p>'95. 7. 5 부령 1199호</p> <p>'95. 7. 6 총리령 511호</p> <p>(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 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5. 8. 30 부령 1212호</p> <p>'95. 12. 29 부령 1216호</p> <p>(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사업소 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개정에 따른 관 련조항 정비)</p> <p>'96. 12. 28 부령 1246호</p> <p>(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의한관련조항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p>사방사업법 법 977호 (1962. 1. 15)</p>	<p>'96. 12. 31 부령 1248호 '98. 2. 13 부령 1276호</p> <p>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63. 2. 9 법 1269호</p> <p>① 사인이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아니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신고만을 하도록 함.</p> <p>② 사방지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시행공작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p> <p>개정 '68. 5. 21 법 2006호</p> <p>① 사방사업을 산지사방·해안사방·야계사방으로 구분함.</p> <p>② 사방지 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나 수렵의 채취·개간·방목을 금함.</p> <p>③ 사방사업이 목적달성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은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 함.</p> <p>④ 사방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게 함.</p> <p>⑤ 사방사업의 대상지역에 따른 개념을 구분함.</p> <p>개정 '94. 12. 22 법 4816호 (산림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 관계법령 : 산림법, 하천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95. 12. 29 법 5079호 (산림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7. 12. 13 법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동법시행령</p> <p>제정 '70. 3. 19 령 4756호</p> <p>개정 '82. 3. 23 령 10771호</p> <p>전문개정 '94. 11. 3 령 14409호</p> <p>개정 '95. 12. 29 령 14842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동법시행규칙</p> <p>제정 '69. 8. 4 부령 372호</p> <p>개정 '70. 6. 11 부령 402호</p> <p>'72. 10. 21 부령 509호</p> <p>'80. 8. 8 부령 327호</p> <p>'82. 6. 7 부령 375호</p> <p>'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정비)</p> <p>전문개정 '94. 12. 6 부령 1160호</p> <p>'95. 8. 30 부령 1212호 (산림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p>국토녹화촉진에 관한입시조치법 법 1266호 (1963. 2. 9)</p>	<p>'95. 12. 29 부령 1216호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사업소의 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 의한 관련조항 정비)</p> <p>본 법은 국토녹화사업을 조속히 완수함을 목적으로 함.</p> <p>① 부역명령대상자들은 산림계원, 1930년 1월 1일부터 1934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현역에 투입되지 아니한 자와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 공무원 및 학생, 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 각종기업체에 종사하는 자, 각급재건위원회 회원등임.</p> <p>② 이 법은 1963년 2월 1일부터 적용하여 1964년 12월말일까지 그 효력을 가짐.</p>	<p>폐 지</p>
<p>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관한법 법 1267호 (1963. 2. 9)</p>	<p>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방해방지와 보호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63. 12. 16 법 1541호</p> <p>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른 직급명의 변경에 수반하여 개정함.</p> <p>개정 '69. 5. 21 법 2110호</p> <p>① 경비의 1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함.</p> <p>② 산림청장의 권한의 1부를 도지사나 영림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함.</p>	<p>• 관계법령: 산림법</p>

건 명	내 용	비 고
	<p>전문개정 '94. 3. 24 법 4750호</p> <p>① 산림보호직원의배치의 조건에 관한 사항 규정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관리산림청장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p> <p>개정 '95. 12. 29 법 5079호            (산림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6. 8. 8 법 5153호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7. 12. 13 법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동법 시행령</p> <p>개정 '93. 2. 5 령 13835호            '94. 7. 26 령 14344호            '95. 12. 29 령 14842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p> <p>개정 '94. 8. 4 부령 1150호            '95. 12. 29 부령 1216호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영림서소관국유임 야관리특별회계법 법 1718호 (1965. 12. 16)	<p style="text-align: center;">'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의한 관련조항 정비)</p> <p>개정 '66. 12. 27 법 1861호</p> <p>① 제명을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으로 개칭함. ② 정부기구개편에 따른 산림청의 신설에 수반하여 개정함. ③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도 할 수 있게 함.</p> <p>개정 '70. 1. 1 법 2198호</p> <p>① 이 회계 소속재산으로 도가 분장하는 산림청소관국유임야를 추가함. ② 국유임야의 매각·양여·교환 및 대부규정 신설함. ③ 국유임야를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면적에 상당한 임야를 매수하도록 함.</p> <p>동법시행령 제정 '70. 4. 23 령 4967호</p>	페 지
화전정리에관한법 법 1778호 (1966. 4. 23)	<p>1. 이 법은 이 법 시행이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에 불을 놓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 또는 사용하였던 토지를 정리하여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 산림자원을 조성, 화전경작자의 생활을 안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p> <p>2. 1979년도에 화전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현재 화전농지로 매각한 토지대의상환금이 완료되는2001년이후 법률폐지에정</p> <p>개정 '68. 5. 21 법 2007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① 농경지로 조성된 토지중 국유지는 국세청장이 매도하기로 함.</p> <p>②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동권한중 일부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함.</p> <p>개정 '90. 1. 13 법 4206호 (산림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4. 12. 22 법 4816호 (산림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5. 12. 29 법 5079호 (산림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7. 12. 13 법 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동법시행령</p> <p>제정 '70. 3. 19 령 4757호</p> <p>개정 '78. 11. 27 령 9209호</p> <p>'91. 2. 1 령 1328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3. 1. 30 령 13833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4. 12. 23 령 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4. 12. 23 령 14442호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건 명	내 용	비 고
<p>조류보호및수렵에 관한법 법 1931호 (1967. 3. 30)</p>	<p>'94. 12. 23 령 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4. 12. 23 령 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p> <p>제정 '71. 4. 22 부령 490호</p> <p>개정 '72. 8. 4 부령 493호</p> <p>'76. 11. 4 내무부령 219호</p> <p>'95. 12. 29 부령 1216호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1.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미리 방지함이 목적임.</p> <p>2. 1967. 3. 30 법 제정시 1961. 12. 31 법 949호 수렵법 폐지</p> <p>① 보호조수와 보호조수의 알, 새끼 등은 이를 수렵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도록 함.</p> <p>② 수렵면허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면허상을 교부받도록 하고 면허받은 자가 아니면 수렵조수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함.</p>	<p>• 관계법령 : 산림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환경보전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멸종위기어류양서류포획·채취제한야생동물·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p>

건 명	내 용	비 고
	<p>③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구역을 정하여 보호구 또는 금엽구를 설정하도록 함.</p> <p>④ 수렵기간은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하되, 특별면허상소지자의 수렵기간은 따로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함.</p> <p>⑤ 면허취소와 면허의 효력상실 규정을 둠.</p> <p>⑥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조수를 사양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야생조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함.</p> <p>개정 '67. 3. 30 법 1931호</p> <p>(폐지제정)</p> <p>야생조수는 그 서식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증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다만 수렵을 규제하기 위한 단속법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조수의 적극적인 보호증식을 위주로 한 법을 제정하여 빈약한 조수의 서식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서 생활환경의 미화를 기하려는 것임.</p> <p>① 수렵할 수 있는 조수의 종류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p> <p>②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조수보호구, 특별보호지구 및 수렵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내에 수렵조수의 포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p> <p>④ 산림청,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에 조수보호위원회를 설치함.</p> <p>⑤ 수렵면허상은 도지사가 발급하게 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⑥ 폭발물·극약등 위험한 방법에 의한 수렵을 금지함.</p> <p>개정 '81. 4. 13 법 3441호</p> <p>1. 인·허가 등의 정비를 위한 행정서사법등의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관련 조합을 정비함.</p> <p>2.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인·허가 등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처리권한을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함으로써 국민부담의 경감 및 행정간소화를 통하여 봉사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p> <p>① 유해조수의 구제를 위한 경우 도지사의 조수포획허가를 받게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함.</p> <p>② 조수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한 조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학술연구 또는 인공사양을 위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포획한 조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양도 또는 양수할 수 있게 하고, 유해조수의 구제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한 조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양도·양수할 수 있게 함.</p> <p>③ 야생조수(인공사양한 것은 포함하되, 좁도요·흰물떼새·갈가마귀·민물도요 및 청서는 제외함) 및 그 알·새끼와 고기·그 박제품과 모피류는 산림청장의 허가없이 수출입할 수 없게 하던 것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할 수 있게 함.</p> <p>개정 '82. 12. 31 법 3644호</p> <p>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정비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전문개정 '83. 12. 30 법 3673호</p> <p>야생조수를 보호·번식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수보호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방자치단체가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li> <li>②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li> <li>③ 공기총에 의한 수렵도 면허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함.</li> <li>④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안에서 수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렵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li> <li>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li> <li>⑥ 조수보호를 강화하고 수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렵금지구역울 확대함.</li> <li>⑦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조수를 인공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li> <li>⑧ 조수의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함.</li> <li>⑨ 조수를 불법으로 포획한 자를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li> <li>⑩ 벌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조정하고, 가벼운 범법 행위에 대하여는 형벌대신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li> </ol> <p>전문개정 '86. 12. 20 법 3854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함.</p> <p>개정 '86. 12. 31 법 3910호</p> <p>관광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89. 12. 30 법 4183호</p> <p>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90. 1. 13 법 4206호</p> <p>산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94. 3. 24 법 4749호</p> <p>① 독극물사용 등 조수학대행위 금지  ②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수출·입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p> <p>개정 '95. 12. 29 법 5079호</p> <p>산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96. 8. 8 법 5153호</p> <p>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97. 4. 10 법 5325호</p> <p>임업진흥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전문개정 '97. 8. 22 법 5348호</p> <p>① 정부는 수렵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의 국제협력 을 통해 조수의 보호·번식과 서식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p> <p>② 조수보호구에 들어갈 경우 시장·군수, 국유림관리소 장에게 신고해야 함.</p> <p>③ 조수보호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 규정 신설</p> <p>④ 수렵면허증의 교부, 개신, 면허시험 규정 신설</p> <p>전문개정 '97. 12. 13 법 5453호</p> <p>①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 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 비함.</p> <p>② 포획허가의 취소 등의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p> <p>동법 시행령</p> <p>전문개정 '84. 6. 25 령 11442호</p> <p>개정 '90. 1. 3 령 12895호 (문화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0. 1. 3 령 12899호 (환경처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93. 3. 6 령 13869호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p> <p>'93. 3. 6 령 13870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임야소유권이전등 기에 관한 특별조치 법 법 2111호 (1969. 5. 21)</p>	<p>(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 항 정비) '94. 9. 24 령 14386호 '94. 12. 23 령 14450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 비) '95. 12. 29 령 14842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 비) '96. 8. 8 령 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 항 정비) '97. 12. 31 령 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에 의한 관련조항 정비) '98. 2. 24 령 15669호</p> <p>동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84. 6. 30 내무부령 416호 개정 '91. 4. 29 부령 1074호 '92. 2. 24 부령 1094호 '94. 12. 15 부령 1161호 '96. 12. 28 부령 1246호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에의한관련조항 정비) '98. 5. 7 부령 1284호</p> <p>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할 임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하였거나 보 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야를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 기하지 못한 취득자에게 등기하게 함으로써 임야행정의 효 율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p>	<p>폐 지</p>

건 명	내 용	비 고
영림서관리소의명 칭, 위치및관할구 역에관한규칙 부령 409호 (1969. 9. 24)	개정 '70. 6. 18 법 2204호 개정 '72. 9. 20 농림부령 501호 '87. 9. 3 내무부령 420호	폐 지
산림사업용종묘가 격심의원회규정 령 4764호 (1970. 3. 19)	산림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정부산림사업용종묘의 가격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산림사업용종묘가격심의 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임.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함. ②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산림청 자원조성 국장·산림경영국장·임업연구원장·임업육종연구소 장·산림조합중앙회장·한국양묘협회장과 산림사업용 종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림청 장이 위촉한 자가 됨.  개정 '87. 12. 5 령 12291호 (임업연구원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93. 1. 30 령 13833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 비)	
임목육종연구소직 제 령 4863호 (1970. 4. 7)	개정 '70. 7. 15 령 5199호 '72. 2. 15 령 6038호 '72. 6. 9 령 6229호 '74. 12. 31 령 7507호 '79. 8. 29 령 9587호 (임업시험장직제등 일부개정따른 관련조항 정비) '80. 2. 1 령 9748호 (체신부직제등 일부개정따른 관련조항 정비) '80. 7. 9 령 9958호 '81. 2. 26 령 10205호	폐 지



건 명	내 용	비 고
<p>산림자원조사연구 소직제 령 6936호 (1973. 11. 20)</p>	<p>개정 '96. 11. 23 법 5168호</p> <p>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함.</p> <p>개정 '96. 11. 23 법 5168호</p> <p>동법 시행령 제정 '73. 12. 8 령 6948호 개정 '83. 12. 8 령 11268호 '95. 7. 15 령 14737호</p> <p>산야의 효율적이용과 생산력의 개발을 위하여 임야의 실 태 산림자원의 이용구분과 산림사양에 대한 조사연구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소속하에 산림자원조사연 구소를 둠.</p>	<p>폐 지</p>
<p>국유림산물매각규 칙 내무부령 207호 (1975. 5. 7)</p>	<p>개정 '74. 11. 6 령 7371호 '80. 2. 1 령 9748호</p> <p>이 규칙은 예산회계법 제76조와 산림법 제72조제1항제82 조,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산물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77. 8. 22 내무부령 237호 '78. 8. 1 내무부령 266호 '80. 8. 29 내무부령 329호 '82. 5. 15 내무부령 373호</p>	

건 명	내 용	비 고
	<p>'83. 10. 8 내무부령 402호 '86. 6. 7 내무부령 444호</p> <p>개정 '91. 6. 4</p> <p>산물매각기관은 매 분기 1회 이상 매각한 산물의 가공실적을 확인하여야 함.</p> <p>개정 '95. 12. 29 부령 1216호</p> <p>지방산림관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 위치 및 관할구역에관한규칙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함.</p> <p>전문개정 '98. 10. 8 부령 1294호</p> <p>① 입목의 일반매각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자격에 관련된 조문 정비함.</p> <p>② 소관 관서의 장은 입찰에 의하여 산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 입찰참가신청에 관련된 조문 정비함.</p> <p>③ 연평균매각물량의 100분의 60 이상을 특수가공설비의 주된 설비를 이용하여 가공처리 할 수 있을 것</p> <p>④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반환사항 규정</p> <p>⑤ 산물의 매수자는 계약한 날 또는 매각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함.</p> <p>⑥ 소관 관서의 장은 산물의 매수자가 벌채구역 안에서 그가 매수한 입목 외의 입목을 벌채한 때에는 도벌로 처리하여야 함. 다만, 단순한 과실로 매수한 입목외의 입목을 잘못 베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산물이 벌채구역안에 있고 벌채적지검사전에 매수자가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잘못 베기로 처리할 수 있음.</p>	



건 명	내 용	비 고
임업시험장지장및 임산물검사주재원 사무실의위치와관 할구역에관한규칙 내무부령 176호 (1975. 8. 21)	이 규칙은 임업시험장직제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시험장의 각지장과 임산물검사 주재원사무실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개정 '82. 2. 13 내무부령 366호 '84. 7. 24 내무부령 417호	
임업연수원직제 령 8695호 (1977. 9. 20)	개정 '78. 12. 30 령 9281호 (내무부직제등에 관한 일부개정령에의한 관련조항 정비) '79. 8. 29 령 9587호 (임업시험장직제등 일부개정령에의한 관련조항 정비) '81. 1. 2 령 10508호	
임업협동조합법 법 3231호 (1980. 1. 4)	1. 1980. 1. 4. 법 3231호로 산림계·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기능을 산림경영의 민간추진체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기반의 강화, 업무범위의 확대, 감독체제의 합리화등 제도와 운영의 발전을 기하고자 산림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계·조합·연합회의 관계규정을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단독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임(산림조합법).  2. 1993. 6. 11 임업협동조합법으로 법 명칭이 변경되면서,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법 목적으로 함.  ① 조합과 중앙회의 최대봉사의 원칙과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정치관여금지에 관하여 규정함.	•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대외무역법, 화물유통촉진법, 건설업법, 민법,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보험업법, 지방세법, 은행법, 단기금융업법, 신탁업법, 체신예금·보험에 관한법률, 증권거래법

건 명	내 용	비 고
	<p>② 정부는 계·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그 관리·운영하는 사업과 시설·정비 등의 이용에 있어서 타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p> <p>③ 계·조합·중앙회의 조직을 기능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p> <p>④ 계·조합 및 중앙회의 업무범위를 확대함.</p> <p>⑤ 중앙회장은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총회·총대회 및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특례에 규정함.</p> <p>⑥ 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감사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p> <p>개정 '86. 12. 20 법 3854</p> <p>산림청이 내무부령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p> <p>개정 '89. 4. 1 법 4113호</p> <p>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임원의 결격 사유 신설</p> <p>② 선거권의 행사는 대신할 수 없음.</p> <p>③ 선거운동의 제한, 당선무효규정 신설</p> <p>개정 '90. 1. 13 법 4206호</p> <p>산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91. 12. 14 법 4423호</p> <p>비송사건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91. 12. 14 법 4433호</p> <p>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전문개정 '93. 6. 11 법 4556호</p> <p>① 임업협동조합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          ② 임업협동조합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으로 함.          ③ 조합은 지역임업협동조합과 전문임업협동조합으로 함.          ④ 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예를 정할 수 있음.          ⑤ 조합원의 이용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비조합원도 사업이용이 가능함.          ⑥ 조합은 필요시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다른 기업에 대출할 수 있음.</p> <p>전문개정 '94. 12. 22 법 4822호</p> <p>① 조합과 중앙회는 조합간 협동을 하여야 함.          ②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함.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④ 조합은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 등 사업손실보전자금과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음.          ⑤ 전문임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음.</p>	

건 명	내 용	비 고
	<p>개정 '96. 12. 30 법 5211호</p> <p>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96. 12. 30 법 5230호</p> <p>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97. 4. 10 법 5325호</p> <p>임업진흥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97. 8. 30 법 5408호</p> <p>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97. 12. 13 법 5454호</p> <p>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p>개정 '98. 1. 13 법 5505호</p> <p>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함.</p>	

건 명	내 용	비 고
<p>입업시험위탁등에 관한규칙 내무부령 342호 (1981. 2.14)</p>	<p>②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 함.</p> <p>동법 시행령 전문개정 '80. 7. 19 령 9969호</p> <p>개정 '82. 4. 6 령 10785호 '89. 4. 6 령 12758호 '93. 12. 11 령 14020호 '94. 12. 23 령 14438호 (개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95. 6. 22 령 14675호 '97. 12. 31 령 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에 의한 관련조항 정비) '98. 4. 1 령 15761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 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p> <p>이 규칙은 입업시험장이 수탁하는 입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과 임목증자저장위탁, 시험설비의 사용 및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① 시험장에 위탁할 수 있는 시험의 구분과 내용은 산림청장이 정하고, 시험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시험위탁신청서에 공시품을 첨부하여 입업시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p> <p>② 시험성적서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p>	

건 명	내 용	비 고
<p>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령 10506호 (1981. 11. 2)</p>	<p>③ 수수료 납부 및 면제에 관한사항 규정          ④ 이 규칙 시행당시 임목종자저장위탁규칙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임목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봄.</p> <p>개정 '81. 12. 24 내무부령 358호          '84. 10. 22 내무부령 422호</p> <p>이 령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개정 '83. 10. 7 령 11238호</p> <p>경제기획원직제등 일부 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함.</p> <p>개정 '83. 12. 14 령 11275호</p> <p>전문개정 '98. 2. 28 령 15727호</p> <p>①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 장소속하에 임업연구원·임업연수원 및 산림항공관리소를 둠.          ② 산림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 장소속하에 지방산림관리청을 둠.</p> <p>개정 '98. 8. 1 령 15855호</p> <p>동법 시행규칙          제정 '98. 2. 28 부령 1279호          개정 '98. 8. 1 부령 1289호          '98. 9. 2 부령 1293호</p>	

건 명	내 용	비 고
임업시험장직제 령 10507호 (1981. 11. 2)	개정 '83. 10. 7 령 11238호 전문개정 '83. 12. 14 령 11276호 '84. 12. 31 령 11596호 '87. 4. 3 령 12131호	
산림보호직원복제 규정 내무부령 445호 (1986. 6. 11)	이 규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산림보호직원복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항과 그 제식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임업시험장수목원 관람규칙 부령 969호 (1987. 4. 10)	이 규칙은 산림에 대한 자연학습과 애림사상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시험장수목원의 각종수목과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하게 함에 앞서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임업진흥촉진법 법 5325호 (1997. 4. 10)	이 법은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업인의 경영능력과 권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임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국토의 보전과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임업”, “임업인”, “임산물”이란 용어를 정의 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업인등이 합리적인 임업경영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함.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을 위한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④ 산림청장은 임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의	• 관계법령 : 산림법, 임업협동조합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건 명	내 용	비 고
	<p>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지역을 지정함.</p> <p>⑤ 임업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함.</p> <p>동법 시행령  제정 '97. 11. 29 령 15518호  개정 '97. 12. 31 령 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에 의한 관련조항 정비)</p> <p>동법 시행규칙  제정 '98. 3. 3 부령 1282호</p>	



〈부 록〉

## 국민의 정부 4대개혁 법률

# 농업·농촌기본법

[법률 제5758호, 1999.2.25]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이념)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 4 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 장 농업·농촌시책의 기본방향

제 5 조(시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6 조(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적절한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 유지하며 적절한 식량재고 양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통일대비 농업정책)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 농지 및 농산물유통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간의 농산물거래는 민족내부거래임을 인식하고 남북한간 농업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3 장 농업구조개선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정부는 가족로동력을 주축으로 한 가족농의 생산성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전문화·협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하여 영농조합법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⑥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에 출자할 수 있다.

③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농업회사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자문,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업경영체에게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농업관련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등 농업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제20조(농지의 소유와 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농지의 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농업기계화 등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농업자재·농업시설의 연구·개발·보급과 그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농업과학기술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첨단농업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농업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경영기법의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보급하며,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

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농업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27조(지적재산권 등의 보호) ①정부는 농업유전자원, 영농기술, 상표 등 有·무형의 농업 관련분야의 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실용농업기술, 농업기관생산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농업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농업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농업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 4 장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제30조(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정부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관측, 생산조정, 수매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농산물의 유통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농산물의 생산지와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등 다양한 유통시설의 확충과 그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포장·규격화 등 물류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및 유통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농산물의 품질관리 등) ①정부는 농산물의 상품성제고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원산지표시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과 동식물에 대한 검역 및 위생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조화로운 발전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의 연구개발,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 5 장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

제34조(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농업통상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업분야의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농업정책에 관한 정보 및 농업인력·기술의 교류, 농업기관국제기구활동에의 참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업투자환경조사 등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농산물의 수출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출진흥과 우리 식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농산물의 수입관리) 정부는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 6 장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

제37조(농촌지역개발시책의 수립)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도·농간의 교류확대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1. 영세농 등을 위한 지원
2.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6.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제40조(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한해·수해·풍해·냉해 등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응급대책·복구와 농업재해보험, 공제제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1조(농지전용부담금) ① 농림부장관은 농촌 등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수준, 전용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 등을 참작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농지전용의 許可·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 장관은 농지전용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⑥ 농림부장관은 농지법 제53조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과오납금의 반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 7 장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추진

- 제42조(농업·농촌발전계획) ①농림부장관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농정심의회) ①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기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농정심의회를, 시·도에 시·도농정심의회를,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농정심의회를 각각 둔다.
- ②각 농정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농업·농촌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 ①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농림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정부는 매년 농업·농촌동향과 농정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농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당해 지역의 농업·농촌동향과 농정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농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각종 농업시책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 8 장 보 칙

제46조(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촌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과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제4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기본법
2. 농산물가격유지법
3.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 3 조(농업인후계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후계자 또는 임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전업농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본다.

제 6 조(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제 7 조(농지전용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본다.

제 8 조(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 9 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표의 농림지역란의 제1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란의 제5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각각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하고, “동법 제44조”를 “동법 제34조”로 한다.

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한다.

④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인 등”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업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의 경영규모와 기술수준, 투입로동시간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전업어업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업에 관한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어업인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어업인으로 육성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어업인후계자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인후계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제6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7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로 한다.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발전기본방침”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8조 및 제4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48조 내지 제52조)을 삭제한다.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10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⑥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의 개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어업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들”을 “후계농·어업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인”으로 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중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식물방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임업인 및 농·임산물의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267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제5759호(99.2.5), 1999. 2. 25]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라 함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부지및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전업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임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농지와 농업로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
7.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이라 함은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거나 당해 시설에 의하여 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8. “장기채”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에서 교부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 기금을 포함한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

## 제 2 장 농업기반공사

제 3 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 4 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 5 조(사무소등)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공사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공사는 분사무소에 지역농업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대의원회를 두며, 주사무소에 운영대의원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둔다. 운영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 6 조(자본금 및 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국가가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 7 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변경 등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 9 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농업기반정비사업지구안에서의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사업, 영농규모적정화를 위한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에 관한 사업 및 농지 등의 재개발사업
  5. 농어촌의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6.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하수도시설 및 오수·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한 시험·연구·조사·측량·환지·설계·공사감리 및 시설물안전진단사업
  8.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1.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공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



에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관리) ①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이상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①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편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공사는 공사관리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공사는 당해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이 그 요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공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 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농업용수이용자) ①공사관리지역안에서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자(이하 “농업용수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공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이용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①공사는농업용수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이용자로부터 농업용수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농업용수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언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이용료의 체납처분) ①공사는 이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①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의 설정·편입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용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용수이용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농림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그 사실을 공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농업용수이용자의 자율관리) ①공사는 공사관리지역중에서 농업용수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농업용수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 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공사는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공사는 그 소유농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거나 그 영농을 위탁할 수 있다.

④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요율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등의 매입·매도사업) ①공사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경작농업인의 당해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농지매입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매매협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군수의 매매협의를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전업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전업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당해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전업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지원 등 영농복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복귀희망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농지의 교환·분합 등) ①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등) ①농림부장관은 제18조·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공사가 조성한 농지와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농지의 임대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아 제18조·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①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공사는 취득·소유하는 재산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농어촌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지 초지 및 주택 등 농어촌취락용지
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용지
3. 도 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 농어촌휴양지
5.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③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자금조달) 공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절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운용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26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7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이상을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한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공사의 회계특례)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 3 장 농지관리기금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7. 기금운용수익금

제33조(자금의 차입) 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분합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의 용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투자
  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용자 및 투자
  6.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및 투자
  7.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환급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8.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기타 기금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재정융자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
2. 국·공채의 매입
3. 금융기관에의 예치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용자한다.

③제3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각 계정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기금운용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림부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위원에는 농업인·농업인단체의 대표와 각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중에서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출납담당임원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 또는 기금출납담당임원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제38조(융자금의 회수) 농림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결산) 농림부장관은 매 회계년도에 당해연도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 장 보 칙

제40조(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1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제9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수리) 시·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원으로 하는 수리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수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 수리 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수리 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이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45조(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농림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공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에 비치하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46조(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성질)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타 농업인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관계서류의 열람 등)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농지관리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의 조회·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감독) 농림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50조(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협조의 요청) ①공사는 농지의 매매 및 임대차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거래가격의 조사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를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액 또는 지급받은 임차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6018호, 1999 9. 7]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이라 함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 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 3 조(명칭) ①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4 조(법인격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 5 조(최대봉사의 원칙) ①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중앙회의 책무) ①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①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부과금의 면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 9 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다.

③중앙회의 회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등) ①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제8조 내지 제12조, 제15조 내지 제 18조, 제22조 내지 제 26조,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2항,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5조 내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9호·제11호·제14호 내지 제16호 및 이와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기본자본은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한다), 자본준비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에서 자기자본 조정항목중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이용대상은 중앙회의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에 의한 신용 공여에 한한다.

④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중앙회의 신용사업회계에 속하는 업무용부 동산에 한한다.

⑤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 제4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에 관한 원칙과 중앙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되, 농림부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⑥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 내지 제1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양곡관리법 제

19조,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7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 및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 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 이라 한다)은 조합원의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①지역농협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안에서는 2 이상의 지역농협을 설립할 수 없다.

②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5조(설립인가 등) ①지역농협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20인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 원수·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발기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신청을 함에 있어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 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때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때
3. 기타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된 때

제16조(정관기재사항) 지역농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한도 및 납입방법과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경비부과와 과태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회계년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6. 설립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때에는 그 출자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 출자자의 성명·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조건
17. 설립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주소

제1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발기인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이 그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하여야 한다.

③현물출자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출자목적의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①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지역농협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2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③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두고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준조합원) ①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출자) ①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조합원은 출자의 납입에 있어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회전출자) 지역농협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①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의한다.

③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제24조(조합원의 책임) ①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제25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 ①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가입) ①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새로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③지역농협은 조합원수를 제한할 수 없다.

④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탈퇴) ①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의 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2. 사망한 때

3. 파산한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③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제명) ①지역농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제1항의 경우에 지역농협은 총회개회 10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탈퇴조합원은 탈퇴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지역농협은 탈퇴조합원이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32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역농협이 그 재산으로 지역농협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결취소의 청구 등) ①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총회) ①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규약의 제정 및 개폐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8.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9.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0.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정관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 ①조합원은 조합원 5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감사가 제3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7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개회 7일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총회에서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써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농협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1조(총회의결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투표로써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합병·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제4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선출
3.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제42조(대의원회) ①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②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 ③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년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 ④조합장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이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43조(이사회) ①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락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사항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 ④이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①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 15인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지역농협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개선사항을 조합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지역농협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중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중 2인 이내, 감사중 1인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③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3. 이사회가 이사중에서 선출

④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리사는 조합업 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6조(임원의 직무) ①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②조합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궐위·구금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제4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감사의 대표권) ①지역농협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임원의 임기) 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연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연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연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또는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9. 제17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의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농협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설립 또는 합병후 2년(상임인 조합장을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농협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농협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

②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②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1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지역농협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원을 제외한다)과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 할 수 없다.

②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지역농협의 임직원의 겸업금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당해 지역농협과 정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에 의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농협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제54조(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조합원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에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에 해임요구와 총회에 해임의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해임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5조(민법·상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 내지 제4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 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본다.

제56조(직원의 임면) ①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리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리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지역농협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중앙회의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③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사업) ①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 1. 교육·지원사업

가.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농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라.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마. 신제품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바.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등의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로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4. 공제사업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 할 수 없다.

⑥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 할 수 있다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 제1항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동) 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은 다음각호의 사업에운동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사업
5. 기타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관련 사업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조합원에 대한 교육) ①지역농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역농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로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61조(공제규정) 지역농협이 제57조제1항제4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2조(회계년도) 지역농협의 회계년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①지역농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지역농협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

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심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5조(운영의 공개) ①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농협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①지역농협의 업무상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를 함에 있어서 그 하한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④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임의적립금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지역농협은 매회계년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한다.

②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못한다.

③잉여금은 정관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납입출자액에 따라 배당하고 또 잉여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한다.

제69조(이익금의 적립) 지역농협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합병차익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때
2.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승인) ①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 ①지역농협은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최고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3조(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①채권자가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의결에 대하여 이익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익을 진술한 때에는 지역농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4조(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75조(합병) ①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합병으로 인하여 지역농협을 설립하는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의 정수는 2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각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동수를 선임한다.

⑤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한 자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이있어야한다.

⑦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조합의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합병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지역농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분할) ①지역농협이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 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조직변경) ①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협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조직변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신용사업을 행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당시 행하고 있는 신용사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지역농협의 합병후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는 존속되거나 설립된 합병지역농협의 명의로 본다.

제80조(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은 지역농협의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 지역농협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제82조(해산사유) 지역농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제83조(파산선고) 지역농협이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제84조(청산인) ①지역농협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산인은 직무의 범위안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③농림부장관은 지역농협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제85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6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지역농협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87조(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제88조(결산보고서)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민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 내지 제93조제1항·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설립등기) ①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5호 내지 제17호에 규정한 사항
2. 출자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년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지사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이내에, 지사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지역농협이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93조(변경등기) ①제9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당해 지사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년도 종료후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①행정구역의 지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당해 지역농협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역농협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95조(합병등기 등) ①지역농협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6조(조직변경등기)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의 규정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97조(해산등기) ①지역농협이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98조(청산인등기) ①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9조(청산종결등기) ①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인가·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01조(등기부) 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 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제103조(목적)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축협 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4조(구역) 지역축협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안에서는 2 이상의 지역축협을 설립할 수 없다.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①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2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 1. 교육·지원사업

가. 축산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축산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라.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마. 축산관련 자조조직의 육성 및 지원

바. 신제품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사.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사업

아.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자.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 다.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
- 바. 위탁양축사업
- 사. 축산업로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아. 보관사업

## 3. 신용사업

-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
- 라. 어음할인
-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 4. 공제사업

- 5.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 8.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10.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107조(준용규정) 제14조제2항,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0조 내지 제56조, 제57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5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지역 축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4항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57조제3항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8조제1항 단서중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 제5호(다목을 제외한다),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61조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06조제4호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 제 4 장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제108조(목적) 품목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정관이 정하는 한우 사육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 및 정보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9조(구역) 품목조합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0조(조합원의 자격등)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조합원은 동일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2 이상의 품목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연작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품목조합의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 1. 교육·지원사업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

라. 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축산업의 품목 조합에 한한다)

마.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위탁영농 또는 위탁양축사업

바.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사. 보관사업

### 3. 공제사업

4.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 다른 법령이 품목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112조(준용규정) 제14조제2항,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0조 내지 제56조, 제57조제2항 내지 제6항, 제58조 내지 제77조, 제79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품목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중 조합원수를 조합원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고로, 제28조제4항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57조제3항중 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을 제78조제4항(제10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으로, 제58조제1항 단서중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 제5호(다목을 제외한다),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마목·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 한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61조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11조제3호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본다.

## 제 5 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1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제115조(회원) ①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중앙회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제116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 또는 농촌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17조(출자)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8조(당연탈퇴) 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제119조(회원의 책임) 중앙회의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20조(정관기재사항) ①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과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경비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11.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중앙회의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1조(설립·해산) ①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2조(총회) 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12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및 임명동의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4조(대의원회) ①중앙회에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3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 및 상임감사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의원의 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5조(이사회) ①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④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비율 또는 금액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기타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이사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⑥감사와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이사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6조(임원) ①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사업전담대표이사 3인을 포함한 이사 21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 1인, 사업전담대표이사 3인 및 감사 1인은 상임으로 한다.

제127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1. 제134조제1항제1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업무와 관련한 사업전담대표이사간의 이견조정
5. 기타 제1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처리

③회장이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8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①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로 한다.

②농업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의 사업과 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농업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③축산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3호의 사업과 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축산경제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④신용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업과 제9호 내지 제14호의 사업중 신용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⑤사업전담대표이사가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직무를 대행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소관별로 조합장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

관으로 정한다.

제1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제1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비상임감사는 회원조합장이어야 한다.

⑤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4연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연으로 한다.

⑥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회장이 사업전담대표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중앙회에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직무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간부중에는 인삼관련사업을 전담하는 집행간부를 두되,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인삼관련 업무를 그 집행간부에게 위임·전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집행간부의 임기는 2연으로 한다.

④집행간부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의 집행간부는 소관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⑤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

⑥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①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하며,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대금의 관리 또한 같다. 다만, 신용사업관련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중앙회의 잉여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

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각각승계한 직원간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등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한다.

④중앙회는 축산경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수립 등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3조(다른 직업증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34조(사업) ①중앙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바. 농업·축산업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 및 출자회사의 경제사업의 조성·지도 및 조정

다. 인삼의 경작지도·인삼류 제조사업 및 검사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 및 출자회사의 경제사업의 조성·지도 및 조정

다.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4.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농어촌자금의 대출



- 라.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그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업무
  - 아. 기타 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업무
5.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6. 공제사업
  7.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운용·관리
  8. 의료지원사업
  9.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1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11.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업무와 관련되는 대외무역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4.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②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공공단체·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 할 수 있다.
- ③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 ④중앙회는 제1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담대표이사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신용사업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신용대표이사 소관 독립회계내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중앙회와 별도의 독립된 기금으로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 ⑤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 제135조(비회원의 사업이용) ①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 제4호라목 내지 아목, 제6호, 제8호, 제

10호, 제11호 및 제14 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회원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동) ①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사업에 운동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사업
5. 기타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관련 사업

③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7조(사업의 공동운영 등) ①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이익금중 일부를 공동출자를 한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①품목조합은 그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5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라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3분의 2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을 위한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개척
2.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3. 제품홍보, 기술보급 및 회원간의 정보교환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

5. 기타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명칭,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가입 및 탈퇴
3.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와 선임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④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연합회는 그 명칭중에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가 아니면 품목 또는업종명을 붙인 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9조(장기대출) 중앙회는 자기자본,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공공단체·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1년 이상의 차입금, 1년 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을 할 수 있다.

제140조(여신자금의 관리) ①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이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41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운영) 중앙회는 회원(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회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조합원(제58조, 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조합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이 납입한 출연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3항 각호의 기금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위원회를 둔다. 회원이 예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회원에 갈음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수없다.

⑧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하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감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위원장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임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연으로 한다.

제145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책임의 관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연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수있다.

③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당해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회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재요구하고, 동기간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7조(우선출자) ①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 1좌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회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율은 정관이 정하는 최저배당율과 최고배당율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우선 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①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 증권 발행전

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우선출자를 양도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①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기타 사항)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①중앙회는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농업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농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농업금융채권을 그 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때에는 발행후 1월 이내에 상환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⑤농업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⑥중앙회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요건) 기명식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55조(채권의 질권설정)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56조(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농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증

할 수 있다.

제157조(소멸시효)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제158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기타 사항)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농업금융채권의 발행·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9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앙회는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개시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0조(결산) ①중앙회는 매회계년도 경과후 2월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매회계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1조(준용규정)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4항·제5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제1항,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제4항·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6항, 제46조제5항 내지 제7항, 제47조, 제49조 내지 제53조, 제54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1조 내지 제63조

(제2항 및 제5항을 제외한다), 제65조, 제67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68조 내지 제74조, 제90조 내지 제94조, 제100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37조제2항중 7일전 은 10일전 으로, 제38조 단서중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는 제123조제1호 및 제2호 로, 제47조제1항 및 제2 항중 조합장 은 각각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 로, 제54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3항중 임원 은 임원(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다) 으로, 제57조제 4항중 제1항제7호 는 제1항제10호 로, 제61조중 제57조제1항제4호 는 제134조제1항제6호 로, 제67조제3항중 제57조제1항 제1호 는 제134조제1항제1호 로, 제90조제2항제1호중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제4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 6 장 감 독

제162조(감독) ①농림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농림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농림부장관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농림부장관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65조(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건전성기준 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조직운용의 변경 등 중앙회의 설립목적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의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성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중앙회의 재무상태가 건전성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단기간내에 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66조(경영지도) ①농림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조합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행한다.

1. 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42조제2항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의 회장이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경영지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부실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 및 여·수신에 관한 업무
3. 기타 조합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가 개시된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중앙회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산실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가압류신청 등 손실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농림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농림부장관은 재산실사의 결과 당해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⑦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농림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앙회의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수있다.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도 설립동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2회 이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한 때
5. 조합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 또는 제16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8조(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①농림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이상이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중앙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69조(청문) 농림부장관은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 7 장 별 칙 등

제170조(벌칙) ①조합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목적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거나 이 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71조(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연합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회장, 간부직원, 사업전담대표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5. 제66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67조제1항·제3항, 제68조 내지 제70조 또는 제71조제1항·제3항(제107조, 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72조제1항(제80조, 제107조, 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85조, 제87조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제107조, 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172조(벌칙) ①제7조제2항 또는 제50조제1항 각호의 1(제107조, 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로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연으로 한다.

제173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7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174조(과태료) ①제3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사업전담대표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1조(동조제1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제4항·제5항, 제67조, 제68조, 제137조제3항, 제162조제4항·제5항, 제165조(제63조제4항·제5항,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를 포함한다) 및 부칙 제3조,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로, 조합 을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및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으로 각각 본다.

제 2 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2. 축산업협동조합법
3. 인삼협동조합법

제 3 조(설립위원회의 설치) ①중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라 한다), 중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한다) 및 중전의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인삼협동조합중앙회 라 한다)의 해산과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1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60일전까지 중앙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중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농림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정관을 인가함에 있어서 정관사항중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의 설립동기를 하여야 한다.

제 4 조(업무인계) ①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동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의 회장에 그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 5 조(설립비용의 부담 등)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비용 및 중앙회의 설립비용은 중앙회가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부실채권 정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6 조(해산의 특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앙회의 설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합병으로 본다.

제 7 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법률 제670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재산을 포함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동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를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③중앙회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 8 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임원 등의 임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 및 대의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중앙회 임원 등의 선출·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 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위원회가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에 의하여 중앙회의 최초의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 또는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 10 조(중앙회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은 각각 중앙회의 직원으로 본다.

②중앙회 합병에 따라 잉여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각각 시행한 자체인역감축 실적과 승계한 직원의 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1 조(조합 및 중앙회의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은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으로 본다.

1.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1. 지역농업협동조합
2.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3.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전문농업협동조합,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3.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②이 법 시행당시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은 중앙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12조(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13조(조합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제11호(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11조제1항의 표의 원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은 각각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요일까지로 한다.

**제14조(품목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 4819호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 종전의 법률 제4821호 축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증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추진) ①농림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이 법 공포와 동시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제17조(회원의 사업참여 등) 중앙회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 앙회 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 을 농업협동조합법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제1호·제5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 및 제3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로 한다. 법률 제5720호 축산법개정법을 부칙 제3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로 한다.

②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 을 농업협동조합법 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 라 한다) 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 라 한다) 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축협중앙회 를 중앙회 로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⑤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3호를 삭제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⑥ 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사목을 삭제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 본문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78조 및 제83조를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 제5호,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9조(예금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예금보험의 보험료는 중앙회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예금자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예금자안전기금은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본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를 인용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법률 제5667호, 1999. 1.21]

[개정 법률제4817호, 94.12.22]

(농지법)

[개정 법률제4818호, 94.12.2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제5091호, 95.12.29]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 법률제5299호, 97. 3. 7]

[개정 법률제5442호, 97.12.13]

(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법률제5453호, 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 법률제5454호, 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 법률제5667호, 99. 1.21]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표준규격”이라 함은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4. “물류표준화”라 함은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원산지”라 함은 농수산물이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지역 또는 해역을 말한다.
7.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품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3.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4.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7.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8.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
9. 기타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2 장 농수산물의 규격·품질인증 등

제 4 조(표준규격화)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상품성의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정절차·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5 조(품질인증)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이 스스로 농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체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품질인증을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제 8 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지리적특산물”이라 한다)에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기준·대상품목·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

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품질인증품이 아닌 농수산물에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표시를 한 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시를 한 품질인증품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특산품에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1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표시품의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의 요건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표시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의 시험의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표시변경 등의 처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그 제품이 표시한 규격에 미달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재등과 농수산물에 대하여 잔류된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패류독소·식중독균 및 항생물질 기타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잔

류허용기준 등(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지를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토양·용수·어장·자재 등
2. 생산·저장(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단계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수산물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대상품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료수거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생산장소 또는 저장장소에 있는 농수산물이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해 농수산물을 생산·저장 또는 운반하는 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농수산물이나 자재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는 토양·용수·어장·자재 등과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사실
2. 당해 토양·용수·어장·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
3. 당해 농수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 처리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된 내용에 따라 당해 토양·용수·어장·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 농수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단계 또는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농수산물을 저장 또는 운반하는 자 등에게 그 초과사실과 함께 당해 농수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고지된 내용에 따라 당해 농수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3 장 원산지 등의 표시

제15조(원산지의 표시)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18조(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을 수거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농수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 4 장 농산물의 검사 등

제19조(농산물의 검사) ①농림부장관은 공정한 유통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구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검사항목·검사기준·방법 및 검사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검사원의 자격) ①농림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검사원" 이라 한다)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검사원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 날짜, 등급 등의 검사결과를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등)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 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원이 소속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검사판정의 실효)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1.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표시가 멸실 또는 불명확하게 된 때

제24조(검사판정의 취소) 농림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때

제25조(보고 및 점검 등) ①농림부장관은 정부가 구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나 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창고·가공공장·점포 등의 장소에 보관중인 농산물또는 그 포장재의 점검과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판매하는 자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관련법인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검사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제27조(농수산물의 검정) ①농수산물의 생산자,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등은 농수산물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품위·성분·잔류농약 등에 대한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하여 줄 것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부정행위금지 등) 누구든지 제19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또는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4.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는 행위
5.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 제 5 장 보 칙

제29조(농수산물의 명예감시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농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포상금)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품질향상·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포장자재·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2. 생산자단체
3.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통관련사업자 및 단체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32조(수수료)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지리적 표시의 등록, 농산물의 검사 및 농수산물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등에 대하여는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정의 취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농림수산관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 6 장 별 칙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규격표시·품질인증표시 또는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특산품에 표준규격품 등이 아닌 농수산물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5.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결과표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변경처분·표시정지처분 또는 판매금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된 처리방법에 따라 토양 등의 개량 등이나 당해 농수산물의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조

- 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 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 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4. 제28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준출하규격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품목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품목으로 본다.

제 4 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은 이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받은 검사결과 또는 교부받은 검사증명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받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 5 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및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 6 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및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 7 조(다른 법률의개정) ①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 1 조중 “농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를 “농수산물의”로 한다.

제 2 조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중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로 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 4 조의제목“(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각 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정,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을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으로 하며, 동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농수산식품”을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한다.

제 5 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제4항·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농수산물”을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5항 단서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농림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6항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중 “규격품”을 “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으로 하고, 동조중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표준출하규격이 표시된 농수산물 또는 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을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으로 한다.

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3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기술등의 보급과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 또는 표준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를 “농수산물가공기술 등의 보급과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22조·제23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중 “제22조 및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③ 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 8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한국농정50년사 자료집 제3집  
농 립 법 령 (제 I 권)

---

인쇄일	1999 년 12 월 23 일
발행일	1999 년 12 월 29 일
발 행	농 립 부
편 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록 1979년 5월 25일 제5-10호 전화 (02)3299-4000 팩스 (02)965-6950
인 쇄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전화 (02)737-2101~5

---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